



서울대학교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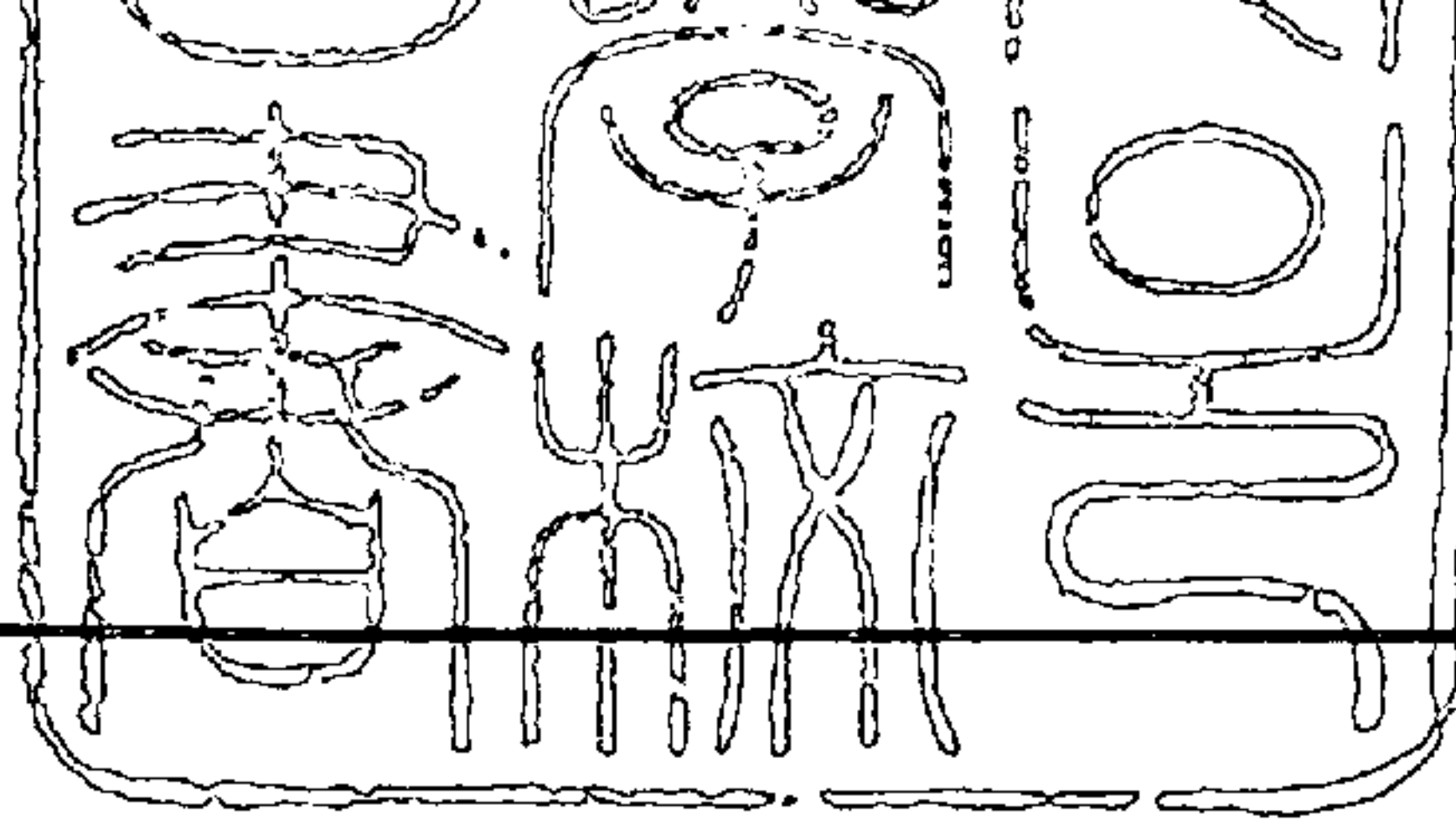


1976~1977

서울대학교 요람



1976—1977



서울대학교 總長에게 보내는 親書

나는 오늘 名山 冠岳의 기슭에 서울대학교 萬年雄飛에의 터전을 닦기로 作定하였습니다.

漢江을 굽어보는 언덕에 文化의 遺産을 이어 받을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에게 眞理探究의 殿堂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祖上의 얼을 되살리며, 榮光된 祖國의 앞날을 가늠하고 슬기를 모아 人類共榮에 이바지할 英才를 길러내게 하고자 합니다.

한 世代의 生存은 有限하나 祖國과 民族의 生命은 永遠한 것, 오늘 우리 世代가 땀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 고자 함이 아니요, 이를 내일의 世代 앞에 물려주어 길이 겨레의 永遠한 生命을 生動케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기에, 教育은 모든 것의 始原이 되며, 이는 『大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大學은 또한 正義와 眞理와 學問을 지녀야 하고, 英才가 培養되어야 하며, 代를 이어 『偉大한 相續者』가 排出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通하여 우리의 높은 理想을 펴 나가게 될 것이니, 이제 冠岳의 기슭, 名門을 通하여 바람직한 『相續者』들이 連綿히 排出되기를 眞心으로 祝願하는 것입니다.

보람있는 創業——他日 祖國의 進運을 가늠하며, 人類文化의 發展에 貢獻할 世界의 大學으로 指向하여 서울대학교는 오늘 새터전에서 새로이 出發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새 터전을 찾아 이미 뜻깊은 머릿돌이 앞을 現地를 夜陰에도 돌아보고 해를 넘기며 熟考한 끝에 決定지은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綜合建設計劃의 燦然한 課業이 뜻있는 이들의 精誠과 努力으로 빛나게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1970년 3월 16일

大統領 朴 正 熙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1976학년도 학사력

월 일(요일)	학 사 일 정
76. 3. 2(화)	입학식
3. 2(화)— 4(목)	재학생 등록
3. 3(수)— 6(토)	수강신청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3. 8(월)	대학(원) 개강
4. 2(금)	수업일수의 1/4선
4. 26(월)— 5. 1(토)	춘계체육대회(대학별)
5. 24(월)— 6. 5(토)	중간고사
6. 14(월)	수업일수의 3/4선
7. 3(토)	대학원 종강
7. 5(월)—10(토)	기초과정 기말고사
7. 12(월)—16(금)	전공과정 기말고사
7. 12(월)—16(금)	학과배정 안내(인문, 사회)
7. 16(금)	대학종강
8. 16(월)—25(수)	기초과정(인문, 사회) 학과배정
8. 26(목)—28(토)	2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8. 30(월)	대학개강
9. 6(월)	대학원 개강
9. 24(금)	수업일수의 1/4선
10. 11(월)—15(금)	제2회 대학축전
10. 15(금)	개교기념일, 동창의날
10. 25(월)—11. 6(토)	중간고사
11. 24(수)	수업일수의 3/4선
12. 4(토)	대학원 종강
12. 6(월)—11(토)	기초과정 기말고사
12. 13(월)—23(목)	전공과정 기말고사
12. 13(월)—23(목)	기초과정 학과배정 안내
77. 2. 18(금)—26(토)	기초과정 학과배정
2. 21(월)—22(화)	신입생 등록
2. 26(토)	졸업식

차 례

I. 연 혁

- 1. 연 혁13
- 2. 역대총장23

II. 기 구

- 1. 기 구 표27
- 2. 기 구37

가. 대학교 본부37

(1) 위치37

(2) 조직37

(3) 교직원 명단37

(4) 기능39

(5) 심의 및 자문 기관39

(가) 평의원회39

(나) 학 장 회39

(다) 인사위원회40

(라) 기획위원회40

나. 대학과 대학원40

(1) 대학원41

(2) 대 학45

(3) 명예교수 명단86

다. 부설기관89

(1) 연구기관95

(가) 직할기관	95
생약연구소. 어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재외 국민교육연구소.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나) 대학 부설기관	100
① 법정기관.....	100
신문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의학교육연수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	
② 비법정기관.....	107
동아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연구소. 인구 및 발 전문제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한국경영연구 소. 농업개발연구소. 교육연구소. 결핵연구소. 인구의학연구소. 암연구소. 풍토병연구소. 국 민체력과학연구소. 국민보건연구소. 행정조사 연구소.	
(2) 지원기관	114
(가) 직할기관.....	114
도서관. 박물관. 보건진료소. 전자계산소. 교육 매체제작소. 실험동물사육장. 학생기숙사.	
(나) 기타기관.....	127
대학신문사. 학술연구재단. 출판부. 직원의료보 험. 학생의료보험.	
(3) 부설대학 및 부속학교	135

III. 설치령 및 학칙

1. 서울대학교 설치령	141
2. 서울대학교 학칙	150

IV. 학 위

1.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191
2. 명예박사 학위수여자 명단.....200

V. 교과과정

1. 교과과정(별책)
2. 계열별 입학자의 학과배정.....207
3. 학생 군사교육208

VI. 연 구

1. 학술연구.....215
2. 연구위원회.....216
3. 연구비.....217
4. 해외연수.....218

VII. 학생지도 및 생활

1. 학생지도.....221
2. 학도호국단.....223
3. 학생상담.....224
4. 학생포상.....225
5. 학생병사.....226
6. 체육활동.....226

VIII. 학생장학 및 후생

1. 장학제도.....229
2. 학생보건.....230
3. 기숙사.....232
4. 소비조합.....232

IX. 종합화 건설(관악캠퍼스) 상황	235
X. 총 동창회	245
XI. 주요통계	249
1. 기구.....	251
2. 교직원.....	251
3. 학생.....	251
4. 기본재산.....	252
5. 학생 정원(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252
6. 입학 상황(대학, 대학원).....	254
7. 재학생통계(대학, 대학원).....	255
8. 학위수여자통계(학사, 석사, 박사, 명예박사).....	257
9. 장학금 급여상황	265
※ 교가.....	269
※ 캠퍼스 배치도	271



총 장

여 백

1911

I. 연

여 백

1. 연 혁

1. 1945년 8·15해방의 역사적 전환기를 계기로하여 새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민주주의적 제반개혁과 아울러 기존 교육시설의 개편 및 그 확충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최고학부인 대학교육의 제도 및 그 운영에 있어서도 질적향상과 양적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대적 일대 종합대학을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하에 1946년 8월 22일자로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되고 이에 의하여 본교는 대학원 외에 다음과 같은 9개 단과대학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문리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문과계통과 동 이공학부 이과계통의 통합 개편

법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과계통과 경성법학전문학교의 통합개편

공과대학 경성대학 이공학부 공과계통과 경성공업전문학교(경성고등공업학교) 및 경성광산전문학교의 통합개편

의과대학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개편

농과대학 수원농림전문학교(수원고등농림학교)의 개편

상과대학 경성경제전문학교(경성고등상업학교)의 개편

치과대학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개편

사범대학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통합개편

예술대학 (미술부·음악부) 신설.

2.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본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국립종합대학교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3. 1949년 12월 31일 우리나라 민주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법이 공포되자 본교는 서울대학교로 개칭되었다.

4. 1950년 6월 25일 제 1학기 등록기간중 6.25사변 발발로 인하여 전 교직원과 학생은 분산 피난하게 되고 대학의 운영은 일시 중단되었다.

5. 1950년 9월 28일 수도탈환이후 정부환도에 따라 본교는 복구사업에 진

력하게 되었다.

6. 1950년 9월 30일 현안 중이던 사립서울약학대학의 편입이 실현되어 본교는 도합 10개 단과대학을 가지게 되었다.
7. 1950년 11월 문교부 방침에 의하여 서울시내 타대학과 공동으로 문학부, 이학부, 공학부, 법정경상학부, 의학부, 약학부등 6학부의 연합강의가 실시되었다.
8.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본교는 정부와 함께 부산시에 남하하게 되었다.
9. 1951년 2월 19일 부산에서 본교는 긴급조치로 연합강의의 형식을 취하여 수업을 계속하였다.
10. 동년 5월 4일자 문교부령 제 19호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본교에서도 전시연합대학 체제로 운영하게 되고 각지에 산재한 본교 재학생은 대구, 전주, 광주, 대전 등 각 지방 전시연합대학 혹은 타대학에서 각각 등록 수강하게 되었다.
11. 1951년 9월 제 2 학기를 계기로 농과대학만은 수원 본교로 복귀 개강하게 하는 한편 복귀가 불가능한 잔여 각 대학을 위하여 부산지구에 임시교사를 신축하고 수업을 실시하였다.
12. 1952년 3월 25일 전시연합대학이 해체되자 지방에서 수강하던 본교생은 전부 부산 본교로 복귀시켰다.
13. 1952년 4월 23일 대통령령 제623호로 교육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교는 교과를 개편하는 동시에 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내용의 혁신을 기하였다.
14. 1952년 6월 27일 전화로 인하여 파손된 본교의 재건과 발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재건 후원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이사회를 조직하여 본교 재건부흥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5. 1953년 4월 18일 교육공무원법이 법률 제285호로서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교 전 교직원의 자격, 임명, 복무등에 관한 기준이 확립되었다.
16. 1953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 780호로 공포된 국립학교설치령이 시행

- 됨에 따라 농과대학 수의학부는 수의과대학으로, 예술대학의 미술부와 음악부는 각각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으로 승격개편되어 본교는 대학원외에 12개 단과대학을 가지게 되었다.
17. 1953년 8월 7일 정부가 환도함에 따라 본교도 복귀업무를 개시하여 10월 17일 이를 완료하였다.
 18. 1953년 9월 15일 본교건물을 사용하고 있던 미 제 8군사령부로부터 본부와 부속도서관, 박물관, 문리과대학, 법과대학등 건물을 인수하였다.
 19. 1954년 2월 10일 수의과대학 부속가축병원을 동 대학내에 설치개원하였다.
 20. 1954년 9월 5일 F.O.A. 대학원조자금에 의하여 본교 공과대학, 농과대학, 의과대학의 연구시설 복구와 기술계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미국미네소타대학교와 본교간에 기술원조협정이 체결되었다.
 21. 1955년 4월 4일 교육법 제 117조에 의하여 본교에 평의원회가 설치되었다.
 22. 1956년 12월 10일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역사를 교수하여 국제적 이해와 우의를 돈독케 하기 위하여 본교에 한국어강좌를 개설하였다.
 23. 1957년 5월 1일 학생의 건강관리와 질병진료를 위하여 본교에 보건진료소를 개설하였다.
 24. 1959년 1월 13일 대통령령 제 1430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교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이 신설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의과대학 부속간호기술학교는 1961년 3월 31일자로 폐교되었다.
 25. 1959년 8월 17일 중구 을지로 6가 소재 약학대학 교사와 종로구 연건동소재 음악대학 교사를 상호교환하여 각각 이전하였다.
 26. 1960년 3월 5일 문교부의 인가를 얻어 동년 4월 1일부터 대학원 외 교학과를 신설하였다.
 27. 1960년 10월 10일 서울대학교학칙이 개정되어 미술대학 미학과가 문리과대학 문학부로 이관되었다.

28. 1961년 2월 27일 국무원령 제 211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과대학에 한국경제연구소와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을 두고 문리과 대학에 고고인류학과와 미술대학에 예술학과를 각각 신설하여 1961년 4월 1일 부터 개강하였다.
29. 1961년 4월 6일부터 대학원 생물학과를 식물학과와 동물학과로 각각 독립된 학과로 분리시키고 통신공학과를 전자공학과로 개칭하였다.
30. 1961년 5월 5일 국무원령 제 254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되어 부속도서관에 서무과, 사서과 및 열람과가 설치되었다.
31. 1961년 9월 1일 법률 제 708호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 3조 및 1961년 12월 9일 각령 제 283호로 공포된 학교정비기준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과 또는 신설되었다.
- 가. 사범대학의 교육심리학과와 교육행정학과, 국어과, 외국어과, 일반사회과, 역사과, 지리과, 수학과, 물리과, 화학과, 생물과 및 지학과의 12과와 미술대학의 예술학과가 폐지되고 사범대학에 과학과와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여 1962학년도부터 개강하였다.
 - 나. 수의과대학이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병합되었다.
 - 다. 상과대학에 경영학과를 신설하여 1962학년도부터 개강하였다.
32. 1962년 2월 17일 각령 제 455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 가. 사범대학원이 신설되어 1962년 4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 나. 학생지도연구소가 설치되어 1962년 3월 12일 개강하였으며
 - 다. 교육대학이 병설되어 1962년 4월 1일부터 개강함과 동시에 동대학에 부속국민학교가 설치되었다.
33. 교육연수원이 본교에 병설되어 1962년 3월 12일부터 개학하였다.
34. 1962년 12월 31일 각령 제 1133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기관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학과를 증설하였다.
- 가. 어학연구소와신문연구소를 신설하여 어학연구소는 63년 1월 1일부터 신문연구소는 63년 3월 25일부터 각각 발족하였다.
 - 나. 본교에 병설되었던 교육대학과 교육연수원이 63년 3월 1일로 각각

폐지되었다.

다. 공과대학에 공업교육학과, 농과대학에 농업교육학과, 사범대학에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외국어교육과가 증설되어 63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35. 1963년 4월 12일 각령 제 1268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어 동일자로 개학하였다.

36. 1963년 7월 1일 다음과 같은 연구소가 교내기구로 부설되었다.

공과대학 전력연구소

문리과대학 해양생물연구소, 동아문화연구소

법과대학 한국법학연구소

의과대학 결핵연구소, 암연구소, 풍토병연구소

보건대학원 보건통계연구소

37. 1963년 12월 16일 각령 제 1739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에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가 증설되어 1964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38. 1964년 3월 13일 대통령령 제 1719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의 응용화학과를 화학응용과로 개칭하여 1964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39. 1965년 2월 1일 서울대학교 종합계획 건설위원회가 총장 자문을 위한 교내기구로서 발족하였다.

40. 1965년 3월 1일 다음과 같은 연구소가 교내기구로서 부설되었다.

의과대학 국민체력과학연구소

상과대학 한국경영연구소

41. 1965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 2059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의 화학응용과를 응용화학과로 개칭하여 1965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42. 1965년 7월 1일 공과대학 부설 전력연구소를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여 응용과학연구소를 부설하였다.

43. 1965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 2171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 가. 보건진료소를 법정기구화하였고
 - 나. 사무국에 계획조사과와 관리과를 증설하여 1965년 12월 15일부터 직무하였다.
 - 다. 동일 또는 유사한 단과대학과 그 부속학교 및 부속시설의 과를 각각 통합할 수 있게하고 기타의 대학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게 하였다.
 - 라. 부속도서관에 조사과를 증설하여 1965년 9월 1일부터 직무하고 필요에 따라 분관을 둘 수 있게 하여 1966년 2월 18일에 공학, 농학, 문리, 미술, 법률, 교육, 상경, 약학, 음악, 의학, 치의학, 행정도서관 및 1968년 4월 1일 교양, 신문도서관의 발족을 보았다.
44. 1965년 8월 31일 문리과대학에 인구문제연구소가 교내기구로 부설되었다.
45. 1965년 11월 24일 대통령령 제 2310호로 국립학교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영대학원이 신설되어 1966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다.
46. 1965년 12월 17일 대학원학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석사과정에 천문·기상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응용미술학과, 박사과정에 지질학과, 광산학과,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공학과, 핵공학과, 축산학과, 농경제학과, 임학과가 증설되었다.
47. 1966년 2월 25일 기획처가 본교 종합계획의 연구 발전 추진과 운영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교내기구로서 발족하였다.
48. 1967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 330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되어 신문대학원과 교양과정부가 신설되어 1968년 3월 1일부터 개강하였고 신문연구소가 신문대학원 부속연구소로 되었다.
49. 1968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종합10개년계획을 대통령이 재가하여 동 7월 19일자 법률제 2034호로 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었다.

50. 1968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 3535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사무국에 종합시설과가 증설되었다.
51. 1968년 10월 17일 대통령령 제 361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가 신설되어 1969년 3월 1일부터 개교 하였다.
52. 1968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 3681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 가. 가정대학이 신설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가 설치되었고
 - 나. 공과대학에 생산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가 증설되었고
 - 다. 문리과대학 사학과가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국사학과로 되었고
 - 라. 사범대학에 수학교육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가 증설되는 한편 가정과가 폐지되었고.
 - 마. 상과대학 상학과가 폐지되었다.
53. 1969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 4473호로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 가. 학생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나. 공과대학 광산학과를 자원공학과로 변경하였고
 - 다. 농과대학에 임산가공학과를 증설하였고
 - 라. 문리과대학 미학과, 종교학과를 철학과로 통합하였으며 미생물학과를 증설하였다.
54. 1970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 4870호로 서울대학교설치령이 제정공포되어 본교 종합 10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로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부총장산하에 사무국, 교무처, 학생처. 사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예산담당관, 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학생처에 장학과, 지도과, 건설본부장산하에 관리국, 건설국. 관리국에 기획과, 관리과, 건설국에 행정과, 시설과, 총장자문기관으로 기획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법과대학 한국법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개칭되었다.

55. 1970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 5116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외국민교육연구소가 신설되었다.
56. 1970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5429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 생산기계공학과가 산업공학과로 변경되었다.
57. 1971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 5696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 가. 관리국 기획과와 건설국 행정과가 관리국 기획행정과로 통합
 - 나. 건설국 시설과가 건축과, 토목과, 설비과로 개편
 - 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관리과와 진료각과가 신설
 - 라. 농과대학에 수목원이 신설
 - 마. 사범대학원이 폐지되었다.
58. 1972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 6106호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이 제정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서울대학교에 부설토록 하였다.
- 행정기구—교학과, 방송교육과, 학사관리과
 - 학 과—가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
59. 1972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 6298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본부에 설계통제실이 신설되었다.
60. 1972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 6405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과대학에 조정학과가 증설되었다.
61. 1973년 1월 25일 대통령령 제 6476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대학원이 설치되었고 동년 3월 1일부터 개학하였다.
62. 1973년 4월 11일 대통령령 제 6226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과대학에 기계설계학과가 신설되었다.
63. 1973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 6880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범대학에 과학교육연구소가 신설되었다.
64. 1974년 1월 14일 대통령령 제 7006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의과대학(농과대학 수의학과 흡수)과 문리과대학에 수의예과가

신설되었다.

65. 1974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 7214호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 대학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통신대학장이 각각 겸직하도록 되었다.

66. 1975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 7565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가. 교육기구의 개편

(1)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신문대학원, 문리과대학, 상과대학, 교양과정부 폐지

(2)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설

(3) 법과대학 행정학과, 공과대학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과 폐과

공과대학 재료공학과를 요업공학과로, 원자력공학과를 원자핵공학과로 개편. 문리과대학 천문기상학과, 고고인류학과를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기상학과. 인문대학 고고학과.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로 분리 개편.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신설.

(4) 부속기관 개편.

전자계산소, 교육매체제작소, 경제연구소, 실험동물사육장 신설.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학생지도연구소를 도서관, 박물관, 학생생활연구소로 개칭.

공과대학의 생산기술연구소,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신설.

상과대학의 한국경제연구소 폐지.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을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으로 개편.

나. 관리기구의 개편

(1) 사무국에 조달과를 신설하고 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하였다.

- (2) 교무처에 수업과를 신설하였다.
- (3) 학생처의 지도과와 장학과를 학생과, 후생과 및 상담지도관으로 분리개편 하였다.
- (4) 건설본부장 소속의 관리국을 부총장소속으로 이관하여 시설관리국으로 개편하고, 그 밑에 관리과를 두며, 운영과를 신설하였다.
- (5) 건설본부장 소속의 설계통제실을 건설통제실로, 관리국의 기획행정과를 건설국의 건설행정과로 명칭 변경 하였다.
- (6) 각 대학(원)의 서무과, 교무과, 학생과를 폐지(다만 농과대학과 치과대학에는 서무과를 둠)하고 대학에는 학장보를 신설하였다.
- (7) 도서관의 서무과, 사서과, 조사과를 수서과, 정리과, 참고서지과로 각각 개편하고 규장각도서관리실을 신설하였다.

67. 1975년 3월 1일 제 1 단계이전에 따라 다음 기관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대학교본부, 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가정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도서관, 박물관, 보건진료소, 전자계산소, 교육매체제작소, 어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실험동물사육장; 학생기숙사)

68. 1975년 8월 30일 약학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69. 1975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 7810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병동신축 및 설비를 전담하기 위하여 관리과를 건축사무소로 개편하고, 동사무소에 기획과와 설비과를 신설하였다.

70. 197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7931호로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수의예과가 폐지되고, 수의예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1976년 3월 1일부터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에 편입된다.

2. 역 대 총 장

본교는 개교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총장과 3명의 총장직무대리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으뜸인 오늘의 서울대학교를 건설한 것은 오직 역대총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라 하겠다.

제 1 대	해리 B. 앤스텐	박사	(1946. 8. 22. ~ 1947. 10. 25.)
제 2 대	李 春 昊	선생	(1947. 10. 25. ~ 1948. 5. 12.)
제 3 대	張 利 郁	박사	(1948. 5. 12. ~ 1949. 1. 4.)
제 4 대	崔 奎 東	선생	(1949. 1. 4. ~ 1950. 10. 6.)
임시관리 책임자	金 斗 憲	박사	(1950. 10. 6. ~ 1951. 9. 3.)
제 5 대	崔 奎 南	박사	(1951. 9. 3. ~ 1956. 6. 8.)
제 6 대	尹 日 善	박사	(1956. 7. 19. ~ 1961. 9. 30.)
직무대리	柳 洪 烈	박사	(1961. 9. 30. ~ 1961. 12. 7.)
제 7 대	權 重 輝	박사	(1961. 12. 7. ~ 1964. 6. 9.)
직무대리	徐 明 源	박사	(1964. 6. 9. ~ 1964. 6. 23.)
제 8 대	申 泰 煥	박사	(1964. 6. 23. ~ 1965. 8. 27.)
제 9 대	劉 基 天	박사	(1965. 8. 27. ~ 1966. 11. 11.)
제 10 대	崔 文 煥	박사	(1966. 11. 11. ~ 1970. 11. 11.)
제 11 대	韓 沁 錫	박사	(1970. 11. 11. ~ 1974. 11. 11.)
제 12 대	韓 沁 錫	박사	(1974. 11. 11. ~ 1975. 5. 27.)
제 13 대	尹 天 柱	박사	(1975. 5. 27. ~ 현 재)

여 백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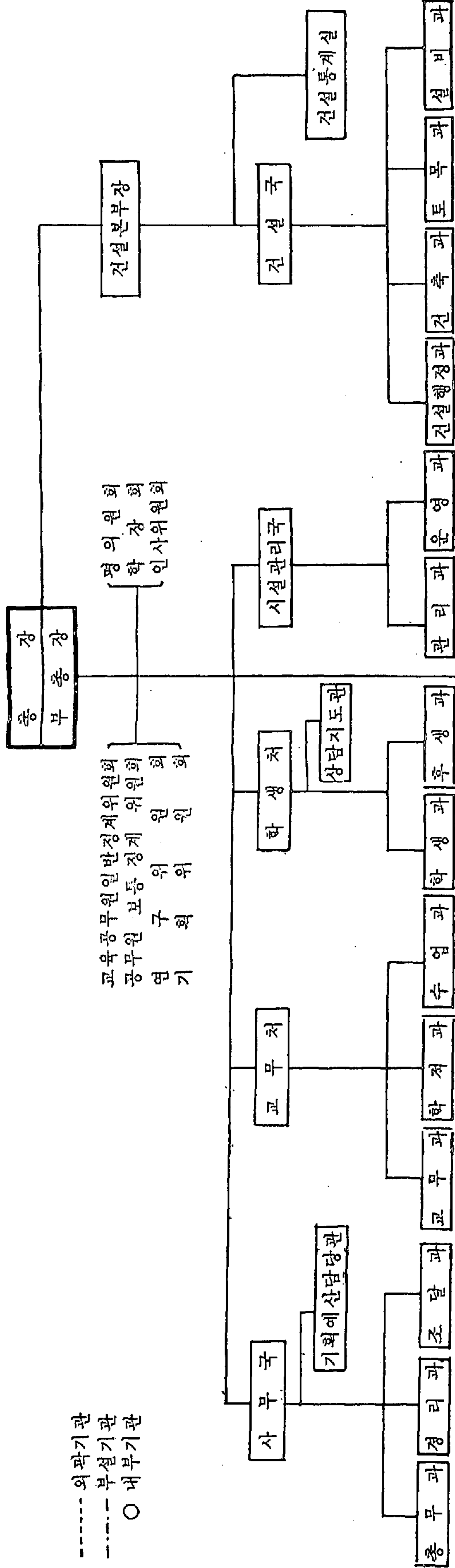
여 백

II. 기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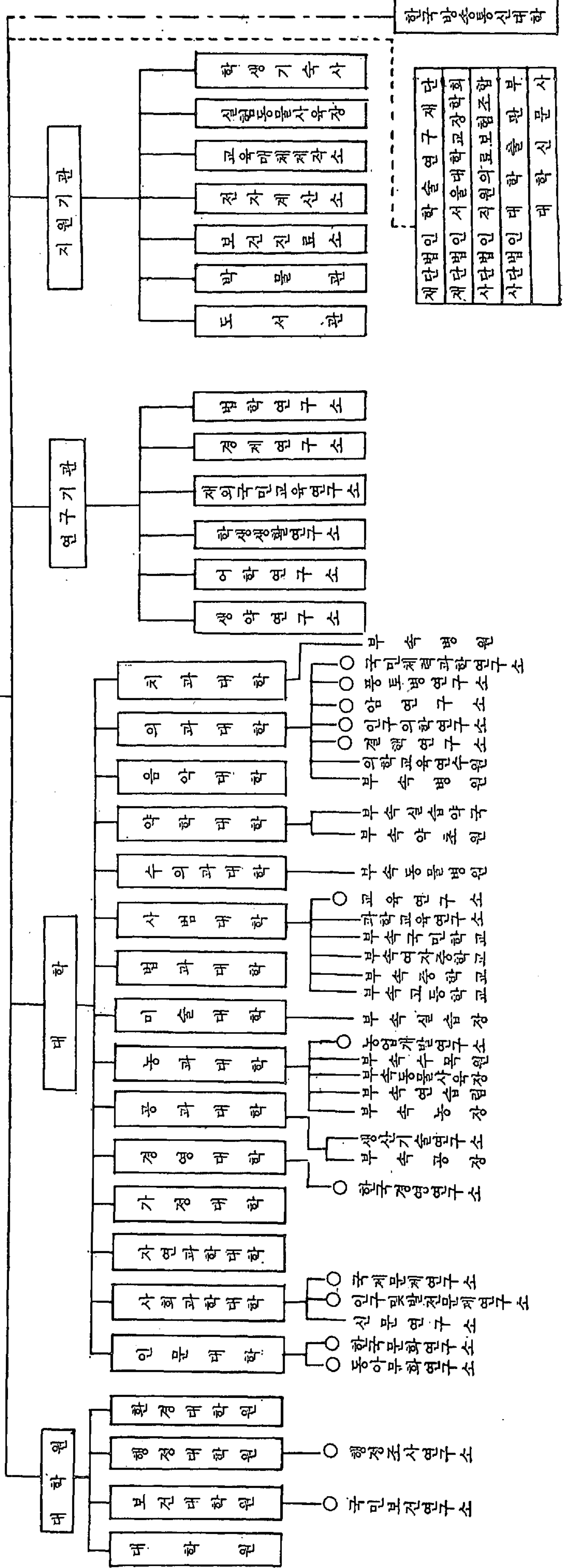
여 백

I. 기 구 표

기	관	명	기
합	계	72	수
본	부	1	
대	원	4	
대	학	15	
연	구	6	
지	원	7	
부	속	4	
부	속	13	
대	학	14	
부	속	2	
한	국	1	
법	인	5	



----- 의과기관
 - - - - - 부설기관
 ○ 내부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
 재단법인 학술연구재단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장학회
 사단법인 직원의료보조조합
 사단법인 대학출판부
 대학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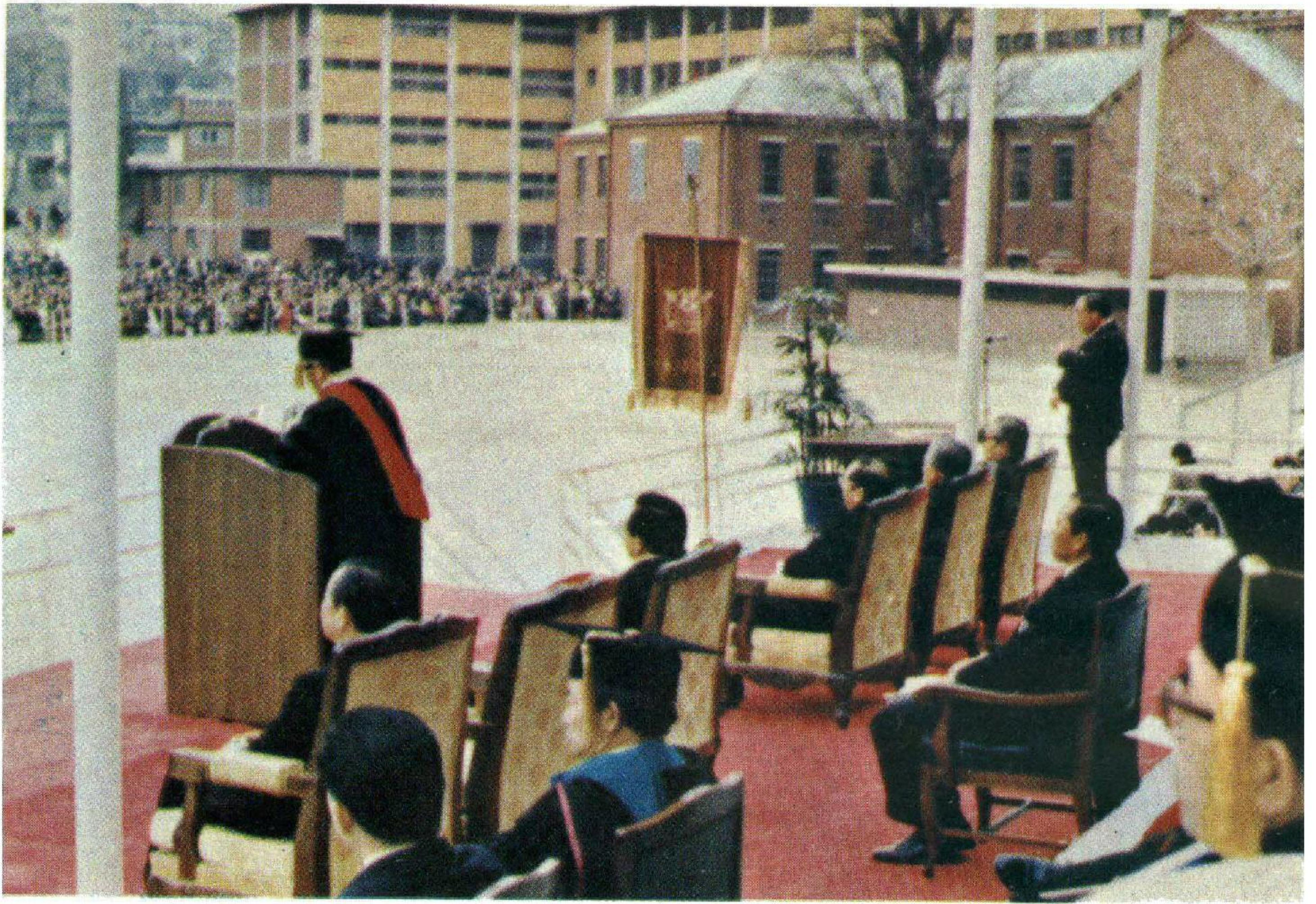
여 백



관악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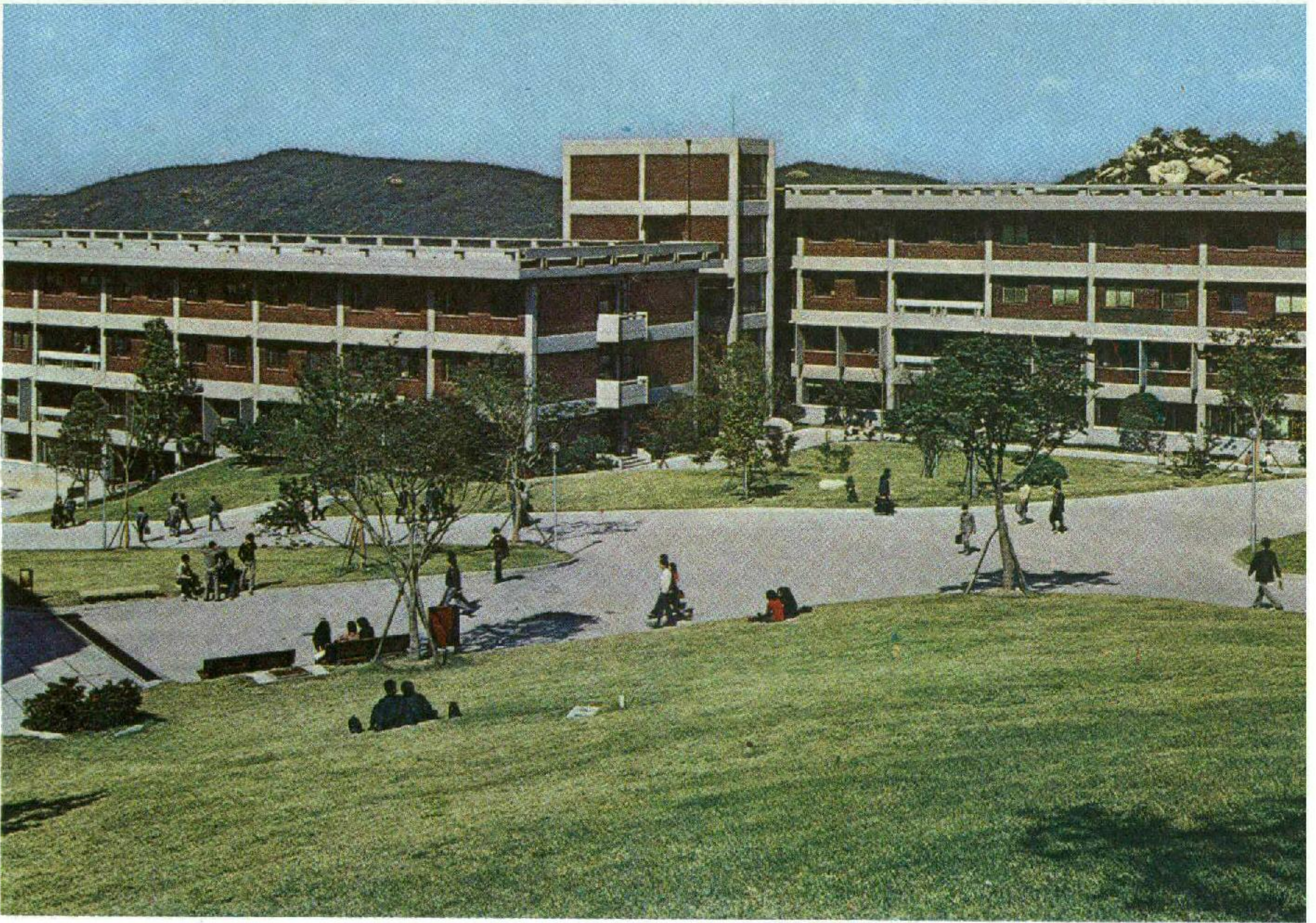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본부



졸업식광경





인문사회관 (관악캠퍼스)



자연관 (관악캠퍼스)



공과대학본관



농과대학본관



의과대학본관



치과대학

여 백

2. 기 구

가. 대학교본부

(1)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2동 산 56의 1번지
(관악캠퍼스 제60동)

(2) 조직 :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건설국장
그 밑에 14과 2담당관 1실이 있다.

(3) 교직원명단

총 장		尹 天 柱	정 치 학 법 학 박사
부 총 장		徐 明 源	교 육 학 교육학박사
건설본부장		李 勳 燮	
교 무 처 장	교 수	金 正 洙	수 학 이 학 박사
교 무 부 처 장	조 교 수	鄭 昌 炫	해 공 학 공 학 박사
학 생 처 장	교 수	丁 炳 炆	이론경제학 경제학박사
학 생 부 처 장	부 교 수	李 洸 鎬	해 부 학 의 학 박사
사 무 국 장	이 사 관	金 道 淵	
시 설 관 리 국 장	부 이 사 관	張 基 玉	
건 설 국 장	〃	金 洺 執	
총 무 과 장	서 기 관	金 英 洙	
	행정사무관	金 容 斗	
	〃	睦 世 均	
경 리 과 장	서 기 관	姜 永 善	
	행정사무관	韓 相 錫	
	〃	金 永 俊	
조 달 과 장	서 기 관	金 益 泰	
	행정사무관	白 南 東	
기 획 예 산	서 기 관	李 浦 榮	
담 당 관	행정사무관	崔 全 一	

교무과장	서기관	金碩基	碩基	基熙
	행정사무관	鄭冲	冲	熙復
	행정사무관	金弘	弘	復澤
학적과장	서기관	朴在	在炳	澤崇
	행정사무관	李炳	炳澈	崇河
수업과장	서기관	李權	權甲	河周
	행정사무관	尹均	均基	周鎬
	〃	姜基	基振	鎬洪
학생과장	서기관	郭庸	庸康	洪熙
	행정사무관	陳李	李相	熙喆
후생과장	서기관	李相	相榕	喆熙
	행정사무관	李金	金具	熙榮
상담지도관	교육연구관	李金	金具	榮熙
	〃	朴成	成鍾	熙寬
	〃	朴成	成鍾	寬喆
	행정사무관	朴林	林崔	喆大
관리과장	서기관	崔白	白龍	大和
	행정사무관	曹圭	圭哲	和基
	〃	李東	東海	基洪
운영과장	서기관	李東	東海	洪夏
	건축기과	李辛	辛宗	夏普
	기계기과	李海	海宗	普明
건설행정과장	서기관	李宗	宗國	明泰
	행정사무관	辛國	國永	泰範
건축과장	건축기정	金錫	錫相	範錫
	건축기과	金相	相南	錫湜
	〃	尹南	南洪	湜夏
토목과장	토목기정	李洪	洪南	夏南
설바과장	기계기정			

	전기기좌	金俊一
	기계기좌	韓燦洙
건설통제실장		李萬浩
	행정사무관	鄭順權
	건축기좌	李揚憲
	토목기좌	李桓默

(4) 기능 : 본교의 교육계획을 발전, 조정하고 교무를 통할하며 산하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5) 심의 및 자문기관

㉠ 평위원회

교육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위원회를 둔다. 평의위원회는 교육계의 저명인사와 대학(원)장 및 교수중에서 총장이 위촉한자로 구성하게 되며, 심의사항으로서는 대학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사항, 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연구비, 장학금, 기타 제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정원은 27명 이내로 한다.

평위원회에는 본교 직원중에서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둔다.

㉡ 학장회

학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의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회를 둔다.

학장회는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대학원장, 각 학장, 각 전문대학원장, 도서관장으로 조직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심의사항은 대학, 전문대학원, 학과전공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칙 기타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

한 사항,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고사 및 시험에 관한사항, 학생지도와 장학 및 후생에 관한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㉔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각 대학(원)장,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대학원장, 학장의 임용 제청의 동의에 관한사항, 조교수 이상 교직원의 임명 또는 전보제청의 동의에 관한사항, 전임강사, 조교의 임명 및 전보의 동의에 관한사항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㉕ 기획위원회

본교 설치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 종합화 계획의 시행에 관한 총장자문 기관으로 기획위원회를 둔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처장, 실장, 국장과 각 대학(원)장, 교수,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약간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기획위원회는 본교의 중·장기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본교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중·장기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나. 대학과 대학원

대학과 대학원에는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학장과 대학원장을 두고 있다.

대학에는 교무담당 학장보와 학생담당 학장보를 두어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 유고시 학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는 행정실을 두고, 농과대학과 치과대학에는 사무과를 두어 일반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에는 학과장 및 주임 교수를 배치하고 대학과 대학원 학과장은 겸임한다. 부속기관에는 장을 두어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학(원)장, 학과장, 과주임 교수 및 부속기관의 장은 각각 그 소속 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겸보한다.

교수회

각 대학과 각 대학원에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조직되는 교수회를 두고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입학, 수료 및 졸업, 시험, 학생의 상벌, 장학금의 급여, 기타 교육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가) 위치 : 관악캠퍼스 제60동(본부건물 5층)

(나)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공	학 위	겸무기관및 겸직사항
원 장	교 수	韓 洵 勳	국사학	문학박사	인문대학 국사학과

(다) 기능

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층 심오 정치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석사과정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박사과정을 두고 있으며 각 과정별 입학정원은 석사과정이 83학과에 1,030명, 박사과정이 49학과에 178명으로 되어 있다.

대학원 교육은 대학원장이 각 대학장에게 위탁하여 학사과정과 중적으로 연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학원의 실제적인 강의와 모든 연구는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학과별로 각 대학 강의실 및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들은 본교내의 모든 연구 실험 실습 시설을 활용하여 그들의 면학과 연구에 임하게 되어 있다.

(라) 심의 및 자문 기관

① 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원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사항을 심의 보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약간명을 두고 있다.

본 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본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대학원 과정의 교육에 관하여 특별한 식견을 갖고 학문의 각 분야별로 총장이 임명한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사,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사항.
2. 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사항.
3.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 제도에 관한사항.
4. 박사학위와 명예박사 학위에 관한 의결.
5.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와 심사위원회 선정제도에 관한사항.
6. 대학원 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 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대학원 학사위원회

학칙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예비로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대학별)로 “대학원 학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대학원 학생의 실제적인 강의와 연구는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각 대학별로 대학원 학사위원

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학장, 학장보와 위원장이 위촉한 조교수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장이 되며 다음 사항을 대학원 위원회의에 앞서 예비 심의하여 학생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교과과정의 운영 및 개폐에 관한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신설 및 개폐에 관한사항.
3. 입학 및 수료에 관한사항.
4.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사항.
5. 학생지도에 관한사항.
6. 기타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사항.

보건대학원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2. 학과 : 1개 학과.
3. 교직원명단

원	장	교	수	朴	亨	鍾	보건교육학	의	학	박	사		
학	과	장	부	교	수	許	程	보건행정학	의	학	박	사	
						金	正	보건통계학	보	건	학	박	사
						金	貞	역	학				
						金	盧						
						李	璟	보	건	간	호	학	
						鄭	文	환	경	위	생	학	
						李	善	보	건	간	호	학	
						李	弘	환	경	위	생	학	
						任	在	보	건	교	육	학	
						鄭	慶	보	건	교	육	학	
						韓	達	보	건	행	정	학	

전 임 강 사	金 花 中	보건간호학
"	文 玉 綸	보건행정학
"	李 英 煥	보건통계학
"	李 容 旭	환경위생학
"	洪 在 雄	모자보건학
행 정 실		
행정사무관	張 基 宣	

행정대학원

1. 위치 :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관 (9동)
2. 학과 : 1개 학과.
3. 교직원명단

원	장	교	수	朴 東 緒	행 정 학	정치학박사
		행 정 학 과				
학	과	장	교	수	趙 錫 俊	정치학박사
			"	金 雲 泰	"	문 학 박 사
			"	金 海 東	"	법 학 박 사
			"	安 海 均	"	"
			"	俞 焄 起	"	정 치 학 박 사
			"	崔 鍾 起	"	법 학 박 사
		부	교	수	姜 信 澤	정 치 학 박 사
			"	吳 錫 泓	"	행 정 학 박 사
			"	李 雄 根	"	경 제 학 박 사
			"	黃 仁 政	"	행 정 학 박 사
		조	교	수	金 光 雄	정 치 학 박 사

환경대학원

1. 위치 :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관 (13동)

2. 학과 : 2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원	장	교	수	盧	隆	熙	도시계획학	법학박사
							환경계획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權	泰	峻
						金	安	濟
						金	炯	國
학	과	장	조	교	수	崔	相	哲

(2) 대 학

인문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관 (1-4동)

2. 학과 : 11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박	사	학	위
학		장	교	수	宋	穢	영	문	학	문	학
학	장	보(교무)		李	基	文	국	어	학		〃
	(학생)	부	교	수	李	桓	불	문	학		〃

국어국문학과

학	과	장	교	수	鄭	炳	昱	고	전	문	학	문	학	박	사
					李	基	文	국	어	학					〃
					張	德	順	고	전	문	학				〃
					全	光	鏞	현	대	문	학				〃
					鄭	漢	模	현	대	문	학				〃
					崔	鶴	根	국	어	학					
					高	永	根								〃
								어	학	연	구	소	겸	무	
					金	完	鎭	국	어	학	문	학	박	사	

부	교	수	金	容	稷	현	대	문	학
	"		金	允	植	현	대	문	학
	"		沈	在	箕	국	어	학	
	"		安	秉	禧				"
조	교	수	丘	仁	煥	현	대	문	학
						사범	대	학	국어
						교육	과		겸
			金	炳	國	고	전	문	학
						재	외	국	민
						교육	연	구	소
									겸
			金	昔	妍	국	어	학	
			金	鎭	世	고	전	문	학
			閔	丙	秀				"
			朴	甲	洙	국	어	학	
						사범	대	학	국어
						교육	과		겸
			朴	東	奎	현	대	문	학
			李	秉	根	국	어	학	
			李	翊	變				"
			李	鍾	徹				"
			韓	啓	傳	현	대	문	학

중어중문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金	學	主	중	국	문	학	문	학	박	사
			교		수	張	基	槿	중	국	어	학				"
						車	柱	環	중	문	학	비	평			"
			부	교	수	李	炳	漢	중	국	문	학				"
			조	교	수	金	時	俊	중	국	어	현	대	학		
						崔	完	植	중	국	고	대	문			

영어영문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文	祐	相	영	문	학					
			교		수	高	錫	龜								"
						朴	時	仁	영	문	학	문	학	박	사	

교	수	宋 穰	영문학	문학박사
	"	張 旺 祿	영문학	"
	"	사범대학외국어교육과 겸무		
	"	全 濟 玉	영문학	
	"	趙 聖 祉	영어학	
	"	黃 燦 鎬	영문학	
	"	어학연구소 겸무		
부	교수	姜 大 虔	영문학	
	"	鞠 正 孝	"	
	"	金 光 浩	"	
	"	金 鍾 云	"	문학박사
	"	金 韓 坤	영어학	"
	"	文 祥 得	영문학	
	"	李 京 植	영어영문학	
	"	趙 炳 泰	영어학	문학박사
조	교수	金 石 山	영어학	언어학박사
	"	金 寅 淑	영어학	
	"	朴 南 植	영어학	
	"	宋 洛 憲	영문학	
	"	梁 東 暉	영어학	언어학박사
	"	사범대학외국어교육과 겸무		
	"	李 秉 建	영어학	문학박사
	"	李 相 沃	영문학	"
	"	趙 俊 學	영어학	
	"	黃 東 奎	영문학	
전	임강사	朴 熙 鎭	영어영문학	
	"	사범대학외국어교육과 겸무		
	"	石 璟 澄	영어영문학	
	"	千 勝 傑	영문학	

학	과	장	교	수	金 鵬 九	현대불문학	문학박사
				"	吳 鉉 堦	19세기불소설	
				"	李 彙 榮	불 문학	
				"	鄭 明 煥	현대불문학	문학박사
		부	교	수	元 潤 洙	19세기불문학	"
				"	李 桓	고전불문학	"
					사범대학외국어교육과 겸무		
				"	洪 承 五	현대불문학	"
		조	교	수	金 光 南	현대불문학	"
				"	鄭 智 榮	불어학	문학박사
		전	임	강	俞 平 根	19세기불문학	
				사	사범대학외국어교육과 겸무		

독어독문학과

학	과	장	교	수	姜 斗 植	현대독어 독 문학	문학박사
				"	李 炳 璨	독 어 학	
				"	池 明 烈	독 문학사	문학박사
				"	許 亨 根	고전독문학	
		부	교	수	金 哲 子	현대독산문	문학박사
					사범대학외국어교육과 겸무		
				"	朴 煥 德	독어독문학 (현대)	
				"	李 甲 圭	독어독문학 (18C)	
		조	교	수	高 昌 範	독어독문학 (고전)	
				"	金 錫 道	(")	
				"	宋 東 準	독 회 곡	
				"	申 泰 浩	독 문 학 (19C)	
				"	李 命 宰	독어독문학 (18C)	
				"	許 昌 雲	독어독문학 (중세)	문학박사
					사범대학외국어교육과 겸무		

	전임강사	千 冀 泰	독문학 (고전)	
언어학과				
학과장	교수	金 芳 漢	언어학	문학박사
	//	愼 翼 晟	언어학	
	//	許 雄	음성학	문학박사
	부교수	李 炫 馥	언어학	철학박사
	//	張 奭 鎭	언어학	언어학박사
		어학연구소 겸무		
	조교수	朴 亨 達	언어학	
	//	李 廷 玟	언어학	언어학박사
		어학연구소 겸무		
국사학과				
학과장	교수	金 鎔 竣	한국고대사	문학박사
	//	邊 太 燮	한국중세사	//
		사범대학사회교육과 겸무		
	//	韓 洵 勗	한국최근세사	//
	조교수	韓 永 愚	한국근세사	
동양사학과				
학과장	교수	高 柄 翊	동양중세사	문학박사
	부교수	閔 斗 基	동양현대사	문학박사
	전임강사	吳 金 成	동양근세사	
		사범대학사회교육과 겸무		
서양사학과				
학과장	교수	羅 鍾 一	서양중세사	문학박사
	//	閔 錫 泓	서양근세사	//
	//	梁 秉 祐	서양고대사	//
	조교수	吳 麟 錫	서양현대사	
철학과				
학과장	교수	金 俊 燮	과학철학	철학박사

교수	金泰吉	윤리학 철학박사
"	朴相鉉	실존철학
"	朴洪奎	서양고대철학
"	申四勳	신학, 종교학 철학박사
"	張秉吉	종교학
"	崔載喜	역사철학 철학박사
부교수	白琪洙	미학
"	安相鎭	실존철학
"	尹明老	서양현대철학 철학박사
"	鄭鎭	인식론
"	韓荃淑	인식론 철학박사
조교수	蘇光熙	존재론
"	吳昞南	현대철학
전임강사	李楠永	동양철학

고고학과

학과장	교수	金元龍	고고학 철학박사
	전임강사	任孝宰	고고인류학

사회과학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관 (5-8동)
2. 학과 : 10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학장	교수	趙淳	경제학 경제학박사
학장보(교무)	부교수	金彩潤	사회학 문학박사
" (학생)	"	曹大京	심리학 철학박사

정치학과

학과장	교수	金榮國	정치사상사 정치학박사
	"	閔丙台	정치사상사 문학박사

	부	교	수	具 永 祿	국제정치	정치학박사	
		"		具 裴 東	정 당 론	"	
		"		李 洪 九	정치사상사	"	
	조	교	수	崔 明	비교정치학	"	
		"		崔 昌 圭	한국정치사상사	"	
	전	임	강	金 學 俊	비교정치학	정치학박사	
외교학과							
학	과	장	교	수	孫 製 錫	국제기구론 국제정치론	정치학박사
		"			董 德 模	국제정치론 한국정치론	정치학박사
		"			朴 奉 植	국제정치사	"
		"			朴 俊 圭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
	부	교	수	呂 井 東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	
	조	교	수	盧 在 鳳	정치사상 국제정치론	정치학박사	
		"		金 容 九	국제정치론 (국제법)	"	
경제학과							
학	과	장	교	수	金 宗 炫	경 제 사	경제학박사
		"		姜 命 圭	경제학설사 경제연구소 연구부장 겸무	경제학박사	
		"		金 斗 熙	재 정 학	"	
		"		林 元 澤	경 제 이 론	경제학박사	
		"		裴 福 石	재 정 학	"	
		"		邊 衡 尹	계 량 경 제 학 한국무역연구소장 겸무	"	
		"		李 賢 宰	재 정 학 경제연구소장 겸직	"	
		"		丁 炳 然	경 제 이 론	경제학박사	
		"		趙 淳	화폐금융론 경 제 학	경제학박사	
	조	교	수	安 秉 直	한국경제사	"	
		"		鄭 英 一	농업경제학	"	

	조 교 수	崔 凡 鍾	계 량 경제 학	경 제 학 박사
	전 임 강 사	裴 茂 基	노 동 경제 학	경 제 학 박사
무역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林 鍾 哲	국 제 경 제 학	
	교 수	吳 萬 植	보 험 론	경 제 학 박사
	"	車 軒 權	재 정 학	"
	부 교 수	朴 宇 熙	국 제 경 제 학	"
	조 교 수	金 世 源	"	"
	"	金 信 行	"	"
	"	鄭 基 俊	수 리 경 제 학	
	"	韓 昇 洙	국 제 경 제 학	경 제 학 박사
	전 임 강 사	朴 在 潤	화 폐 금 용 론	"
사회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金 一 鐵	지 역 사 회 연 구	철 학 박 사
	교 수	高 永 復	사 회 심 리 학	문 학 박 사
	"	李 萬 甲	농 촌 사 회 학	"
	"	李 海 英	도 시 사 회 학	
	"	崔 弘 基	가 족 사 회 학	문 학 박 사
	부 교 수	金 彩 潤	사 회 계 층 론	문 학 박 사
	"	韓 完 相	정 치 사 회 학	사 회 학 박 사
		사범대학사회교육과 겸무		
	조 교 수	金 晋 均	산 업 사 회 학	
	"	愼 鏞 厦	한 국 사 회 사	문 학 박 사
	전 임 강 사	權 泰 煥	인 구 학	인 구 학 박 사
인류학과				
학 과 장	조 교 수	韓 相 福	인 류 학	인 류 학 박 사
	부 교 수	李 光 奎	"	철 학 박 사
심리학과				
학 과 장	교 수	鄭 良 殷	사 회 심 리 학	철 학 박 사

교수	李 義 喆	이론심리학 심리학사	철학박사
	학생생활연구소장 겸직		
부교수	張 秉 琳	범죄심리학	명예철학박사
	李 寬 鎔	학습심리학	
	鄭 漢 澤	산업심리학	
	曹 大 京	성격심리학 이상심리학	철학박사
조교수	徐 鳳 延	발달심리학	"
	李 將 鎬	상담심리학 임상심리학	"
	학생생활연구소 겸무		
	張 鉉 甲	생리심리학 동물심리학	
	趙 明 翰	언어심리학	철학박사
	車 載 浩	사회심리학 실험설계	철학박사

지리학과

학과장	교수	金 庚 星	인문지리학
		金 相 昊	지형학 문화지리학
		李 燦	문화지리학
	조교수	朴 英 漢	도시지리학
	전임강사	金 仁	"
		朴 東 源	수리지리학

사회사업학과

학과장	교수	河 相 洛	지역사회개발론
	부교수	南 世 鎭	집단지도론 사회복지조사
		張 仁 協	개발지도론 사회복지행정

신문학과

학과장	부교수	林 根 洙	컴퓨터 미디어
	교수	金 圭 煥	메스컴이론
	부교수	朴 有 鳳	신문학

부 교 수 李 相 禧 컴뮈니케이션이론
 전 입 강 사 車 培 根 컴뮈니케이션이론 철 학 박 사

자연과학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자연관(20. 22—27동)

2. 학과 : 13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학	장	교	수	趙 完 圭	동물발생학	이 학 박 사	
학장보(교무)	부	교	수	宋 熙 星	물 리 학	〃	
〃 (학생)	〃	〃	〃	尹 在 漢	수 학	〃	
수 학 과							
학	과	장	교	수	朴 乙 龍	수 학 이 학 박 사	
					〃	〃	
					〃	〃	
		부	교	수	李 日 濟	수 학	
					응 용 수 학	공 학 박 사	
					함 수	이 학 박 사	
					수 학	〃	
					수 학	〃	
		조	교	수	李 高 英	〃	
					〃	〃	
					〃	이 학 박 사	
					수 학	〃	
치	의	예	학	과	장	尹 玉 鏡	이 학 박 사
						〃	〃
						〃	〃
						〃	〃

계산통계학과

학 과 장 교 수 崔 至 薰 통 계 학 이 학 박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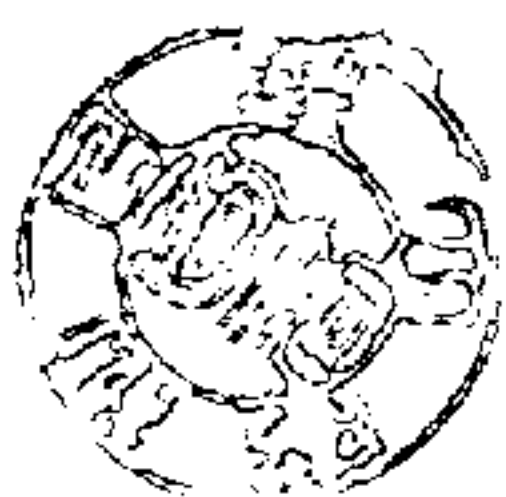
교수	朴 弘 來	통 계 학	통계학박사
		농과대학농경제학과 겸무	
부교수	鄭 漢 永	통 계 학	
조교수	金 榮 澤	계 산 과 학	공 학 박 사
		전자계산소부소장 겸직	
"	金 載 周	통 계 학	공 학 박 사
		공과대학산업공학과 겸무	

물리학과

학 과 장 교수	高 允 錫	원자핵물리학	이학박사
"	金 哲 洙	유 체 및 프 라 즈 마	"
"	朴 鳳 烈	소입자물리학	"
"	成 百 能	원자핵물리학	"
"	池 彰 烈	원자로물리학	"
"	洪 淳 復	응용물리학	
부교수	權 肅 一	분자및고체	이 학 박 사
"	南 天 祐	원자핵물리학	"
"	宋 熙 星	소입자물리학	"
"	李 龜 澈	통계물리학	"
"	李 洙 灝	소립자물리학	"
		사범대학과학교육과 겸무	
"	張 會 翼	고체물리학	"
조교수	金 濟 琬	"	"
"	禹 鍾 天	고체물리학	"
"	李 敏 浩	소입자물리학	
"	張 浚 成	광 학	공 학 박 사
"	崔 柄 斗	고체물리학	"

천문학과

학 과 장 교수	玄 正 峻	천 문 학	
조교수	尹 鴻 植	천체물리학	이 학 박 사
		사범대학과학교육과 겸무	



화 학 과

학 과 장	교 수	具 廷 會	결 정 화 학	이 학 박사
	"	張 世 憲	물 리 화 학	"
	"	張 世 憲	유 기 화 학	"
	"	崔 圭 源	물 리 화 학	"
부 교 수	교 수	金 鎬 激	이 론 화 학	"
	"	朴 仁 源	생 물 화 학	"
	"	朴 炯 錫	물 리 화 학	"
	"	李 禹 永	유 기 화 학	"
	"	李 潤 榮	유 기 화 학	이 학 박사
	"	河 英 龜	화 학	
조 교 수	교 수	李 照 雄	물 리 화 학	이 학 박사
		사범대학교과학교육과 겸무		

식물학과

학 과 장	교 수	鄭 英 昊	식물분류학	이 학 박사
	교 수	李 敏 載	식물생리학	"
		사범대학교과학교육과 겸무		
부 교 수	교 수	金 俊 鎬	식물생태학	"
	"	李 仁 圭	식 물 화 학	이 학 박사
	조 교 수	李 權 寧	식물생리학	"
	전 임 강 사	李 光 雄	"	

동물학과

학 과 장	교 수	金 熏 洙	동물분류학	이 학 박사
	"	姜 永 善	세포유전학	"
	"	趙 完 圭	동물발생학	"
의예과학과장	부 교 수	姜 萬 植	방사선생물학	이 학 박사
	"	河 斗 鳳	동물생리학	"
	조 교 수	朴 相 大	세 포 학	"
	"	李 廷 洙	유 전 학	

미생물학과

학	과	장	교	수	洪 淳 佑 균	학 이 학 박사
					사범대학교과학교육과 겸무	
				//	李 周 植	식품미생물학 //
				부 교 수	河 永 七	생 리 학 //
				조 교 수	姜 炫 三	세 포 유 전 학 //

기상학과

학	과	장	교	수	鄭 昌 熙	기 상 학
					사범대학교과학교육과 겸무	
				//	金 聖 三	물 리 학

지질학과

학	과	장	교	수	金 鳳 均	고 생 물 학 이 학 박사
				//	孫 致 武	광 산 학 //
				//	李 商 萬	암 석 학 //
				//	鄭 鳳 日	지 구 물 리 학 //
				//	鄭 昌 熙	층 서 학 //
				부 교 수	朴 喜 寅	광 상 학 //
					사범대학교과학교육과 겸무	
				조 교 수	金 洙 鎭	광 물 학 //

해양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朴 龍 安	해 양 지 질 학 //	
					//	金 完 洙	해 양 생 물 학 농 학 박사	
				조	교	수	鄭 鍾 律	해 양 물 리 학

행정실

행정사무원	金 仁 浩
-------	-------

가정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관 (13동)

2. 학과 : 3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공과목	
학	장	교	수	玄	己	順	영양학 명예문학박사
학장보(교무)	부	교	수	李	惠	秀	식품화학
" (학생)	"	"		林	元	子	의상학

가정관리학과

학	과	장	교	수	張	明	郁	가정관리학
		조	교	수	李	基	春	가정경제학

식품영양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牟	壽	美	식품, 영양학 농학박사
			교	수	玄	己	順	영양학	명예문학박사
			부	교	수	李	惠	秀	식품, 영양학
			조	교	수	金	解	梨	생화학 이학박사
			"		安	承	堯	식품학	농학박사

의류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林	元	子	의복구성학
			교	수	金	聲	連	섬유과학	공학박사
			조	교	수	李	順	媛	의복구성학

경영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관 (9동)

2. 학과 : 1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학	장	교	수	吳	相	洛	마케팅	경제학박사
---	---	---	---	---	---	---	-----	-------

학장보(교무)	부 교 수	李 正 浩	회 계 학	
" (학생)	조 교 수	尹 錫 喆	생 산 관 리	경영학박사

경영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李 正 浩	회 계 학	
	교 수	蘇 眞 德	회 계 학	경제학박사
	"	沈 昞 求	재 무 관 리	경제학박사
	"	李 庸 俊	회 계 학	
	부 교 수	金 植 鉉	인 사 관 리	경제학박사
	"	金 元 銖	마 아 케 팅	경제학박사
	"	金 正 年	계 량 경 영 학	
	"	韓 羲 泳	마 아 케 팅	경제학박사
	조 교 수	郭 秀 壹	생 산 관 리	경영학박사
	"	愼 侑 根	인 사 관 리	
	"	尹 錫 喆	생 산 관 리	경영학박사
	전 임 강 사	南 相 午	회 계 학	
	"	尹 桂 燮	재 무 관 리	

공과대학

1.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능동 172번지.
2. 학과 17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학 과 장	교 수	李 載 聖	프로세스공학	공 학 박 사
학장보(교무)	"	金 東 勳	물리야금학	"
" (학생)	"	任 尙 鎭	선 체 구 조 해 석	"

건축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鄭 日 榮	콩크리트공학	
	교 수	金 亨 杰	구 조 역 학	공 학 박 사
	"	金 熙 春	서 양 건 축 사	

교수	尹 張 變	尹 李 魯	張 光 魯	鍾 元	건축학	공학박사
부교수	尹 尹 變	尹 李 變	定 鍾 元	鍵 元	건축의장학	"
조교수	李 朱 鍾	李 朱 鍾	鍾 元	元	도시계획	"
					건축설비	공학박사
					단지계획	"

공업교육과

학과장	부교수	朴 天 卿	朴 天 卿	金 鳳 柳	기계공학및 공작기계	공학박사
	교수	金 鳳 柳	金 鳳 柳	金 應 瑞	공업도학	
	부교수	金 元 鍾	金 元 鍾	金 應 洙	자동차공학	
		朴 鍾 鍾	朴 鍾 鍾	朴 鍾 鍾	전기공학	
		姜 春 植	姜 春 植	姜 春 植	용접공학	공학박사
조교수	교수	金 文 漢	金 文 漢	金 文 漢	금속공학	공학박사
		金 宗 相	金 宗 相	金 宗 相	건축구조	
		金 亨 榮	金 亨 榮	金 亨 榮	초음파공학	공학박사
		李 松 曄	李 松 曄	李 松 曄	주조공학	
		韓 松 性	韓 松 性	韓 松 性	기계공학법	
		洪 松 性	洪 松 性	洪 松 性	전력수송	
		黃 熙 隆	黃 熙 隆	黃 熙 隆	건축구조	
		李 相 培	李 相 培	李 相 培	자동제어	
	전임강사	李 相 培	李 相 培	李 相 培	회로시스템	공학박사

공업화학과

학과장	교수	沈 貞 變	沈 貞 變	沈 貞 變	고분자화학 유기합성	공학박사
		金 俊 容	金 俊 容	金 俊 容	공업전기화학	"
		朴 泰 源	朴 泰 源	朴 泰 源	생물화학공학	"
		申 允 卿	申 允 卿	申 允 卿	비료공학	"
		李 文 得	李 文 得	李 文 得	분석화학	"
	부교수	安 泰 玩	安 泰 玩	安 泰 玩	고분자화학	"

금속공학과

학 과 장	조 교 수	尹 惊 奎	금속재료공학	공 학 박 사
	교 수	金 東 勳	물리야금학	"
	"	朴 平 柱	비철야금학	"
	"	廉 熙 澤	금속표면학	"
	부 교 수	金 商 周	물리야금학	"
	"	金 淵 植	화학야금학	"
	"	韓 鳳 熙	재료과학	"
	조 교 수	李 東 寧	금속가공학	"

기계공학과

학 과 장	교 수	李 澤 植	기계공학	"
	"	金 孝 經	유체역학	"
	"	金 熙 喆	공기조화학	"
	"	金 盧 承 卓	내연기관	"
	조 교 수		열역학	"

기계설계학과

학 과 장	교 수	金 東 垣	기계공학	"
	"	廉 永 夏	"	"
	"	李 樑	고체역학	"
	"	鄭 善 謨	기계공학	"
	부 교 수	趙 宣 彙	농업기계학	"

산업공학과

학 과 장	조 교 수	朴 淳 達	경영공학	이 학 박 사
	"	李 冕 雨	산업공학	

섬유공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李 在 坤	섬유공학	공 학 박 사
	교 수	金 汶 尙	편조공학	"
	"	金 魯 洙	섬유공학	"
	"	禹 範 植	염가공학	"
	"		직물구조학	명예공학박사

	부	교	수	金	相	溶	섬유물리	공학박사
		"		河	完	植	섬유화학	"
	조	교	수	高	錫	元	섬유가공학	"
		"		洪	性	一	유기공업화학	"
요업공학과								
학	과	장	교	수	林	應	極	요업공학
					朴	順	子	"
	조	교	수					"
원자핵공학과								
학	과	장	조	교	수	金	昌	孝
						朴	惠	一
						鄭	基	亨
						鄭	昌	炫
							핵공학	이학박사
							자리핵학	공학박사
							물리핵학	"
							핵공학	"
자원공학과								
학	과	장	교	수	洪	準	箕	채광학
					金	載	極	광산공학
					田	溶	元	광산지질학
					玄	炳	九	지구물리학
	조	교	수	徐	廷	熙		지구물리학
				李	正	仁		암석역학
전기공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朴	永	文
						朴	旻	鎬
						梁	興	錫
						禹	亨	疇
						李	承	院
						丁	性	桂
						池	哲	根
	부	교	수	高	明	三		
							전기공학	"
							전기기기및응용학	"
							제어공학	"
							전기자기학	"
							전기공학	"
							고전압공학	"
							전기공학	"
							전기공학	"

	부	교	수	趙 哲	전기공학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학	과	장	조	교	수	李 忠 雄	전자공학	공학박사
						공업교육과 겸무		
			교		수	朴 麒 洙	초고주파	//
						李 晷 漢	고전전자공학	//
						李 鍾 珏	전자장치	공학박사
						崔 桂 根	전자회로	//
			조	교	수	安 秀 吉	전자공학	//
조선공학과								
학	과	장	교		수	黃 宗 屹	선박유체역학	공학박사
						金 極 天	선박동력	//
						金 在 瑾	선박설계	//
						任 尙 鍊	선체구조해석	//
			조	교	수	金 曉 哲	용접공학	
토목공학과								
학	과	장	교		수	鄭 寅 峻	토질역학	
						邊 普 燁	토질및 기초공학	농학박사
						申 永 琦	구조공학	공학박사
						安 守 漢	수공학	공학박사
						李 暎 衡	철근콘크리트 공학	
			부	교	수	朴 仲 鉉	위생공학	공학박사
						安 哲 浩	측량학	
			조	교	수	鮮 于 仲 皓	수문학	공학박사
항공공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趙 慶 國	원동기연소공학	//
			교		수	魏 祥 奎	항공우주공학	//
						李 樂 周	탄성학	//

부 교 수	李 海 京	항 공 공 학	공학박사
주 교 수	盧 五 鉉	유 체 역 학	〃

화학공학과

학 과 장	조 교 수	李 華 榮	석유화학공학	공학박사
	교 수	南 宮 寔	반 응 공 학	〃
	〃	李 載 聖	프로세스공학	〃
	〃	崔 雄	물 질 전 달	
	조 교 수	李 基 俊	유 변 학	공학박사
	〃	李 賢 九	반 응 공 학	〃

행 정 실

행정사무관 金 容 萬

농과대학

1.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103번지.
2. 학과 : 15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학 장 교 수	李 春 寧	생 화 학 이 학 박사
학장보(교무)	〃	李 殷 雄 작물재배학 〃
〃 (학생)	부 교 수	高 在 君 농업건축학 〃
서 무 과 장	서 기 관	金 淳 泰

농 학 과

학 과 장 교 수	許 文 會	작물육종학	농 학 박 사
	〃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연구관	겸무
	〃	李 殷 雄	작물재배학 〃
	부 교 수	李 弘 祐	전 작 물 학 〃
		경기도 농촌진흥원	농업연구관 겸무
전 임 강 사		權 容 雄	잡 초 학

원예학과

학	과	장	교	수	柳 達 永	화훼원예학	농학박사	
				//	表 鉉 九	채소원예학	//	
			부	교	수	高 光 出	과수학	//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농업연구관 겸무	
			조	교	수	李 炳 駟	채소학	//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농업연구관 겸무	
			전	임	강	廉 道 義	화훼학	//

임 학 과

학	과	장	교	수	任 慶 彬	조림학	//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임업연구관 겸무	
				//	金 甲 德	측수학	//	
						산림청 산림자원조사연구소	임업연구관 겸무	
				//	朴 泰 植	삼림경영학	//	
						경기도 농촌진흥원	농업연구관 겸무	
				//	李 昌 福	수목학	//	
				//	玄 信 圭	임목육종학	//	
			부	교	수	朴 明 圭	임업경영학	//
			조	교	수	金 泰 旭	환경임업	
					禹 保 命	사방공학		

임산가공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李 弼 宇	목재해부학	농학박사
			조	교	수	辛 東 韶	펄프및제지학	//
					//	安 元 榮	임산화학	
						산림청 임업시험장	임업연구관 겸무	
			전	임	강	鄭 希 錫	목재가공학	

농화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林 善 旭	토양비료학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연구관 겸무	
			교	수	李 春 寧	생화학	이학박사	
					//	申 載 斗	화학	농학박사

조 교 수 朴 昌 奎 유기화학 이학박사
 " 柳 順 昊 토양분석학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연구관 겸무

식품공학과

학 과 장 교 수 金 載 勗 식품공학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농공이용연구소 농업연구관 겸무
 부 교 수 李 啓 瑚 발효공학 "
 조 교 수 全 在 根 식품공학 "

농경제학과

학 과 장 교 수 金 文 植 농업경제학 경제학박사
 " 沈 永 根 농업경영학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겸무
 부 교 수 潘 性 純 농업경제학 농학박사
 王 仁 權 농촌사회학 "
 농촌진흥청 지도국 농촌지도관 겸무
 朱 奉 圭 토지경제학 "
 조 교 수 李 瓊 鉉 농업발전 "
 전 임 강 사 金 浩 卓 농산물시장론 "

축산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韓 仁 圭 사양학 영양학박사
 교 수 宋 啓 源 축산물학 농학박사
 " 吳 鳳 國 가금육종학 "
 " 陸 鍾 隆 낙농학 "
 " 李 榮 商 가축사양학 "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축산연구관 겸무
 " 李 用 斌 가축번식학 "
 부 교 수 朴 英 一 가축육종학 "
 조 교 수 金 東 岩 초지경영학 "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축산연구관 겸무
 " 金 顯 旭 축산가공학 "

잡사학과

학	과	장	교	수	崔炳熙	잡사화학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잠업연구관 겸무
				//	金文浹	재상학	//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잠업연구관 겸무
		부	교	수	朴光義	가잠육종학	//
		조	교	수	南重熙	제사학	//
				//	文在裕	육잠학	//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잠업연구관 겸무
		전	임	강	馬錫一	섬유화학	

농생물학과

학	과	장	부	교	수	沈載昱	유전학	농학박사
			교		수	姜壽遠	동물학	이학박사
					//	白雲夏	농업곤충학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연구관 겸무
					//	任綱彬	식물생리학	농학박사
					//	鄭厚燮	식물병리학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연구관 겸무
					//	玄在善	곤충생태학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연구관 겸무
		부	교	수	羅容俊	식물병리	//	
						산림청	임업시험장	임업연구관 겸무
					//	趙鏞涉	식물병리	//
					//	崔承允	농업해충학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연구관 겸무
		조	교	수	禹建錫	농업곤충학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연구관 겸무
					//	林雄圭	식물학	

농공학과

학	과	장	교	수	劉漢烈	농업토목학	농학박사
					농공이용연구소	농업연구관	겸무
				//	朴成宇	농업측량수리학	//

교수	朴永觀	지질학	
부교수	高在君	농업건축학	〃
〃	鄭昌柱	농업기계학	공학박사
〃	崔在甲	〃	
조교수	高學均	농업기계학	
〃	鄭夏禹	농업토목학	농학박사

농가정학과

학과장	교수	李良厚	부장학
		농촌진흥청 지도국	농림기감 겸무
	조교수	朴陽子	영양학
	〃	崔銀淑	가정관리학

농업교육과

학과장	부교수	宋海均	농업교육학	교육학박사
		농촌진흥청 지도국	농림부기감	겸무
	조교수	李茂根	교육과정	
	〃	鄭址雄	사회심리학	교육학박사
	〃	崔敏浩	농촌지도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지도국	농촌지도관	겸무

조경학과

학과장	부교수	安建鏞	조경학	농학박사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임업연구관	겸무
	현임강사	曹正松	조경미학	

수의학과

학과장	교수	林昌亨	수의병리학	수의학박사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관	겸무
	〃	吳壽珏	수의산과학	〃
	〃	玉鍾華	수의외과학	
	〃	尹錫鳳	수의해부학	수의학박사
	〃	李榮韶	수의생리학	〃

교수	李長洛	수의약리학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잠업연구관	겸무
"	李昌業	"	수의학박사
"	全允成	수미생물학	"
"	鄭昌國	수의외과학	"
"	韓壽南	의화학	의학박사
부교수	權宗國	수의생리학	수의학박사
"	徐鈇洙	수전염병학	수의학박사
"	成在基	수방사선학	"
"	張斗煥	수기생충학	수의학박사
"	鄭吉澤	수공중위생학	"
"	崔熙仁	소동물내과	"
조교수	李俊燮	수의조직학	
전임강사	韓弘栗	동물내과	

연구관교직원

소속	직명	겸무	성명
농촌진흥청 농공이용연구소	농업연구관	교수	韓成金
"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관	"	李昌九
국립경제연구소	농업연구관	"	金東熙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장	잠업연구관	조교수	宋基彦
" 작물 "	농업 "	"	孫世鎬
"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관	"	鄭雲翼
" 농업기술연구소	농업연구관	"	慎鏞華

미술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예능관
2. 학과 : 3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장	교	수	金	世	中	소
학장보(교무)	부	교	수	權	純	亨	예 미술
" (학생)	조	교	수	金		泰	서 양 화
회 학 과							
학	과	장	교	수	丁	昌	變
			"	文	學	晉	서 양 화
			"	朴	魯	壽	"
			"	朴	世	元	동 양 화
			"	徐	世	鈺	"
			"	柳	景	塚	서 양 화
		부	교	수	劉	權	俊
			"	林	英	芳	미 학
			"	金		泰	미 미술 학사 철학박사
		조	교	수	辛	永	서 양 화
			"	尹	明	老	동 양 화
		전	임	강	사		서 양 화
조 소 과							
학	과	장	부	교	수	崔	義
			교		수	金	世
			"			金	鍾
		부	교	수	崔	滿	麟
		조	교	수	崔	鍾	泰
응용미술과							
학	과	장	부	교	수	閔	哲
			"			權	純
			"			金	教
						泓	泓
						亨	산 업 미 술
						滿	공 예 미 술
							상 업 미 술

부 교 수	金 靜 子	서양화, 디자인
〃	趙 英 濟	상업미술
조 교 수	姜 燦 均	공예미술
전 임 강 사	梁 承 椿	상업미술

행 정 실

행정사무관 李 銓 鎭

법과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관 (10동)
2. 학과 : 1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학 장 교 수	金 曾 漢	민 법 법 학 박사
학장보(교무)	〃 金 哲 洙	법 〃
〃 (학생) 조 교 수	梁 承 圭	법 〃
법 학 과		
학 과 장 교 수	金 哲 洙	법 법 학 박사
〃	郭 潤 直	법 〃
〃	金 箕 斗	법 〃
〃	金 致 善	노 동 법 〃
〃	金 褰 載	국 제 법 〃
〃	徐 元 宇	행 정 법 〃
〃	李 漢 基	국 제 법 〃
〃	鄭 熙 喆	상 법 〃
부 교 수	朴 秉 濠	민 법 〃
〃	李 壽 成	법 〃
〃	李 泰 魯	법 〃
〃	李 好 珽	민 법 법 학 박사
〃	崔 基 元	상 법 〃

부	교	수	黃	迪	仁	민	법	법	학	박	사
조	교	수	金	東	熙	행	정	법			〃
		〃	金	碩	祚			〃			
		〃	金	裕	盛	사	회	법			
		〃	白	忠	鉉	국	제	법			
		〃	宋	相	現	상	민	사	소	송	법
		〃	梁	承	圭			〃			법
		〃	崔	松	和	행	정	법			법
		〃	崔	大	權	비	교	법			법
		전									임
		강									사

사범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인문사회관 (11동)

2. 학과 : 7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학	장	교	수	朴	漢	植	통	계	수	학	이	학	박	사
학	장	보(교	부	李	孟	成	언	어	학	언	어	학	박	사
		조	교	李	相	翊	국	문	학					
		〃 (학생)	수											
		교												
		육												
		학												
		과												
		과	수	鄭	元	植	교	육	심	리	학	철	학	박
		장	교	康	吉	秀	교	육	행	정	학	문	학	박
			〃	金	秉	和	교	육	학					
			〃	金	宗	西			〃		문	학	박	사
			〃	金	鍾	喆	교	육	행	정	학	철	학	박
			〃	李	榮	德			〃					
			〃	鄭	範	謨	교	육	심	리	학			
			〃	陳	元	重	교	육	학					
			〃	韓	基	彦	사	회	교	육	학	문	학	박
			〃	金	永	植	교	육	행	정	학	철	학	박
			부	金	豪	權	교	육	심	리	학			
			수	金	容	憲	사	회	심	리	학			
			〃	朴										
			〃											

부	교	수	李 星 珍	교육심리학	철학박사
조	교	수	金 泳 燦	교육학	
			李 敦 熙	교육철학	철학박사
			李 相 周	교육학	〃
			李 溶 傑	교육학	문학박사
			李 烘 雨	〃	교육학박사
			林 承 權	교육학	
			학생생활연구소	겸무	
			任 寅 宰	교육통계학	철학박사
			張 相 浩	교육심리학	〃

국어교육과

학	과	장	교	수	李 應 百	국어국문학	문학박사
					인문대국어국문학과	겸무	
					金 亨 奎	〃	〃
					인문대국어국문학과	겸무	
					李 杜 鉉	국문학	〃
					민속학		
					사회과학대인류학과	겸무	
			부	교	수	金 恩 典	국문학
					인문대국어국문학과	겸무	
					李 庸 周	국어국문학	문학박
					인문대국어국문학과	겸무	
			조	교	수	李 相 翊	국문학
					인문대국어국문학과	겸무	

외국어교육과(영어)

주	임	교	수	부	교	수	文 龍	영어학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겸무
							李 季 順	영어영문학
							李 孟 成	언어학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겸무
			조	교	수	沈 明 鎬	영어영문학	
						〃		
						田 相 範	영어학	
						〃	언어학박사	

조 교 수 黃 迪 倫 영 문 학 문 학 박 사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겸무

(독어)

주 임 교 수 교 수 金 最 鎭 독 문 학 문 학 박 사
인문대 독어독문학과 겸무

부 교 수 李 東 昇 " "

조 교 수 崔 淳 鳳 독어독문학 "

(불어)

주 임 교 수 부 교 수 朴 玉 茁 불어불문학
인문대 불어불문학과 겸무

조 교 수 郭 光 秀 불 문 학 불문학박사
"

사회교육과(일반사회)

주 임 교 수 부 교 수 李 相 喆 철 학
인문대학 철학과 겸무

교 수 李 榮 基 경 제 학 경제학박사
사회과학대 무역학과 겸무

전 임 강 사 尹 鎔 柝 정 치 학
사회과학대 정치학과 겸무

(역사)

주 임 교 수 부 교 수 李 元 淳 한 국 사
인문대학 국사학과 겸무

" 李 敏 鎬 서양문화사 문 학 박 사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겸무

(지리)

주 임 교 수 교 수 李 智 皓 취락지리학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겸무

조 교 수 黃 載 璣 경제지리학
"

전임강사

李炳高 자연지리학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겸무

수학교육과

학과장부교수

金年植 집합론 이학박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겸무

교수

金應泰 현대대수학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겸무

//

朴漢植 통계수학 이학박사
// 계산통계학과 겸무

//

李星憲 수학교재연구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겸무

과학교육과(물리)

주임교수교수

鄭然泰 물리교재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겸무

//

申熙明 물리학
//

조교수

朴承載 현대물리학
//

(화학)

주임교수교수

李泰寧 유기화학 이학박사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겸무

//

李根茂 물리화학 //

//

李元植 분석화학
//

(생물)

주임교수교수

金遵敏 생태학 이학박사
자연과학대학 식물학과 겸무

//

李雄植 방사선생물학 //

//

崔基哲 일반생물학 //
자연과학대학 동물학과 겸무

조 교 수 張 楠 基 생태학 농학박사
자연과학대학 식물학과 겸무

(지학)

주 임 교 수 교 수 俞 景 老 천 문 학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겸무

체육교육과

학 과 장	조 교 수	李 範 哲	체 육 측 정	
	교 수	羅 絢 成	한국체육사	문 학 박 사
	"	朴 吉 俊	코오치학	
	"	尹 仁 鎬	체육지도법	
	"	印 英 煥	체 육 사	
	부 교 수	金 鳳 梧	체 육 관 리	
	"	金 盧 熙 憲	서양체육사	
	"	李 絪 世	운 동 역 학	
	"	趙 珪 顯	체 육 학	
	조 교 수	權 潤 芳	현 대 무 용	
	"	金 義 洙	체 육 학	
	"	金 振 元	해 부 학	
	"	金 柳 正 茂	운 동 위 생 학	
	"	林 繁 藏	체 육 학	
	"	林 鄭 星 台	체 육 사 회 학	
	"	鄭 星 台	운 동 위 생 학	
	전 임 강 사	金 東 進	체 육 교 육 학	

약학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자연관 (21동)
2. 학과 : 2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위
학	장	교	수	禹	麟	根	식	물	화
							학	약	학
							박	사	

학장보(교무)	수	朴大成	환경위생화학 식품화학	약학박사
"(학생)	수	鄭源根	약품합성화학	"
약학과				
학과장	수	韓大錫	생약학	"
	"	金泳垠	생물화학	"
	"	朴大成	위생화학	"
	"	白南豪	약품분석화학	"
	"	沈吉淳	위생화학	"
	"	李善宙	생약학	"
	"	李相燮	생물화학	"
	"	李王圭	약품분석화학	"
	"	鄭源根	농약화학	"
	"	趙允成	약합성화학	"
	"	蔡東圭	약화학	"
	부교수	鄭普燮	약용식물화학	"
	조교수	金洛斗	약효학	"
	전임강사	金博光	약품분석화학	"
	"	金文奎	위생화학	이학박사
	"	朴萬基	약품분석화학	약학박사
제약학과				
학과장	부교수	趙潤相	약품제조화학	"
	교수	鞠塚豪	"	"
	"	金信根	약전개론 약제제조학	"
	"	金羅龍	약품제조화학	"
	"	禹鍾鶴	약제학	"
	부교수	金炳珪	미생물학	"
	"	金俞高	약품공업화학	"
	조교수	李民和	약제학	"

전임강사 金 良 培 약품물리화학 약학박사

음악대학

1. 위치 : 관악캠퍼스 예능관
2. 학과 : 4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위
학	장	교	수	全 鳳	楚 甲	첼	로		
학장보(교무)		"		鄭 回	甲 一	작	곡		
" (학생)	부	교	수	安 亨	一	성	악		
성악과									
학	과	장	부	교	수	李 貞	성	악	
			교	수	李 貞	玉	"		
			"	李 想	春	"			
		부	교	수	金 惠	炅	"		
			"	安 亨	一	"			
			"	李 慶	淑	"			
			"	李 仁	榮	"			
		조	교	수	李 魯	慶	"		
			"	朴 俞	泰	"			
		전	임	강	金 泰	烈	"		
			사	城 吉	吉	"			
작곡과									
학	과	장	부	교	수	金 容	작	곡	
			교	수	金 聖	泰	"	명예문학박사	
			"	李 誠	載	"			
			"	鄭 回	甲	"			
		부	교	수	李 南	洙	"		
		전	임	강	徐 友	錫	"		
			사	錫	錫	"			

기 악 과

학	과	장	교	수	朴	敏	鍾	바	이	올	린	
					金	淳	烈	피	아	노		
					白	樂	皓		〃			
					全	鳳	楚	첼		로		
					鄭	鎮	宇	피	아	노	의	학
			부	교	康	芸	京		〃		박	사
					金	興	教	콘	트	라	베	스
					梁	海	曄	바	이	올	린	
					吳	貞	珠	피	아	노		
					李	成	均		〃			
			조	교	金	正	圭		〃			
					徐	桂	淑		〃			
					申	秀	貞		〃			
					李	基	媛		〃			
					李	在	玉	비	올	라		
					李	玄	恩	바	이	올	린	
					李	明	學	피	아	노		

국 악 과

학	과	장	교	수	張	師	勛	국	악	문	학	박	사
			조	교	李	在	淑		〃				
					韓	萬	榮		〃				
					金	靜	子		〃				

행 정 실

행정사무관 李 昌 根

의과대학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2. 학과 : 2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위				
학	장	교	수	權	彝	赫	예	방	의	학	박	사	
학	장	보(교무)	부	張	友	鉉	미	생	물	학	〃		
〃	(학생)	조	교	韓	萬	靑	방	사	선	과	학	〃	
		교	수	康	晰	榮	내	과	학	〃			
			〃	姜	承	鎬	〃	〃	〃	〃			
			〃	高	光	昱	소	아	과	학	〃		
			〃	金	敬	植	내	과	학	〃			
			〃	金	道	鎭	〃	〃	〃	〃			
			〃	金	相	仁	임	상	병	리	학	〃	
			〃	金	洙	泰	일	반	의	과	학	〃	
			〃	金	英	均	비	뇨	기	과	학	〃	
			〃	金	應	振	내	과	학	〃			
			〃	金	仁	達	예	방	의	학	〃		
			〃	金	弘	基	이	비	인	후	과	〃	
			〃	金	洪	植	피	부	과	학	〃		
			〃	羅	建	榮	산	부	인	과	학	〃	
			〃	南	基	鏞	생	리	학	〃			
			〃	魯	炳	鎬	내	과	학	〃			
			〃	文	炯	魯	소	아	과	학	〃		
			〃	閔	獻	基	내	과	학	〃			
			〃	朴	吉	秀	일	반	의	과	학	〃	
			〃	白	萬	基	이	비	인	후	과	〃	
			〃	徐	丙	高	기	생	충	학	〃		
			〃	成	耆	駿	해	부	학	〃			
			〃	申	東	薰	생	리	학	의	학	박	사
			〃	申	冕	雨	산	부	인	과	학	〃	

교수	이름	학위	분야
	沈尹	신경외과학	의학박사
"	李源	안과학	"
"	李基	생화학	"
"	李明	해부학	"
"	李文	내과학	"
"	李尙	병리학	"
"	李聖	내과학	"
"	李承	미생물학	"
"	李寧	흉부외과학	"
"	李英	의사학	"
"	李定	정신과학	"
"	李濟	병리학	"
"	李熙	비뇨기과	"
"	任正	내과학	"
"	張信	해부학	"
"	朱權	비뇨기과학	"
"	朱東	방사선과학	"
"	崔漢	소아과학	"
"	韓文	정형외과학	"
"	許仁	내과학	"
"	洪思	약리학	"
"	洪彰	소아과학	"
부교수	高昌	내과학	"
"	郭一	마취과학	"
"	金相	소아과학	"
"	金勝	산부인과학	"
도서관장	金勇	병리학	"
"	金祐	생리학	"
"	金昇	생화학	"

부	교수	金	禮	欽	일반외과학	의학박사
	"	金	周	完	방사선과학	"
	"	金	鎮	福	일반외과학	"
	"	金	鎮	永	이비인후과	"
	"	盧	寬	澤	"	"
	"	明	好	鎮	신경과	"
	"	閔	丙	哲	일반외과학	"
	"	朴	在	一	산부인과학	"
	"	白	相	豪	해부학	"
	"	徐	景	弼	흉부외과학	"
	"	石	世	一	정형외과학	"
	"	吳	仁	赫	내과학	"
	"	元	明	洙	예방의학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겸무				
	"	尹	德	老	"	"
	"	尹	東	浩	안과학	"
	"	李	洸	鎬	해부학	"
	"	李	德	鏞	정형외과학	"
	"	李	惟	信	피부과학	"
	"	李	漢	九	정형외과학	"
	"	林	定	圭	약리학	"
	"	張	潤	錫	산부인과학	"
	"	蔡	範	錫	생화학	"
	"	韓	鏞	徹	내과학	"
	"	咸	毅	根	병리학	"
조	교수	金	光	宇	마취과학	"
	"	金	時	煌	비뇨기과학	"
	"	金	丁	龍	내과학	"
	"	金	晋	煥	성형외과학	"
	"	金	鍾	煥	흉부외과학	"

조 교 수	朴 贊 雄	약 리 학	의 학 박사
"	尹 鍾 求	소 아 과 학	"
"	李 符 永	정 신 과 학	"
"	李 尙 馥	신 경 과 학	"
"	李 迎 雨	내 과 학	"
"	李 栽 興	안 과 학	"
"	張 家 鏞	해 부 학	"
"	張 鳳 麟	안 과 학	"
"	趙 斗 英	정 신 과	
"	崔 圭 完	내 과 학	의 학 박사
"	崔 吉 洙	신 경 외 과 학	"
"	崔 成 培	미 생 물 학	"
전 임 강 사	金 基 煥	생 리 학	"
"	金 潞 經	내 과 학	"
"	金 明 石	약 리 학	
"	金 永 珉	정 형 외 과 학	의 학 박사
"	金 庸 樂	마 취 과 학	"
"	金 宇 基	일 반 외 과	"
"	金 宗 善	이 비 인 후 과	"
"	盧 浚 亮	흉 부 외 과	"
"	安 承 檉	생 리 학	"
"	尹 鳳 子	예 방 의 학	
"	李 正 相	내 과 학	"
"	李 珍 鏞	산 부 인 과 학	"
"	李 趙 昇 烈	기 생 층 학	
"	崔 國 鎭	일 반 외 과 학	"
"	洪 性 國	"	"

간호학과

학	과	장	조	교	수	李	恩	玉	간	호	학
			부	교	수	洪	麗	信		〃	
			조	교	수	朴	貞	浩		〃	
						洪	京	子		〃	
			전	임	강	金	梅	子		〃	
						徐	文	子		〃	
						李	笑	雨		〃	

행정실

행정사무관 安 鳳 俊

치과대학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
2. 학과 : 1개 학과.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위
학	장	교	수	鮮	于良國	치과재료학	의	학	박사
학장보(교무)	부	교	수	金	明國	구강해부학			〃
학장보(학생)	조	교	수	朴	兌源	방사선학			〃
서무과장	서	기	관	張	之南				
도서관장	부	교	수	趙	漢國	구강병리학			〃
	교		수	金	圭植	구강외과학			〃
				金	洙哲	보존학			〃
				金	永昌	구강해부학			〃
				金	英海	보존학			의학박사
				金	仁哲	보철학			〃
				金	周煥	예방치과학			〃
				安	炯珪	방사선학			〃

교	수	劉	鍾	德	구강해부학	의학박사
	"	李	春	根	구강외과학	"
	"	張	完	植	보철학	"
	"	陳	庸	奐	보철학	"
	"	車	文	豪	소아치과학	"
	"	黃	聖	明	구강해부학	"
부	교 수	金	明	國	구강해부학	"
	"	金	鎭	泰	소아치과학	"
	"	閔	丙	一	구강외과학	"
	"	徐	廷	勳	교정학	"
	"	申	範	哲	보철학	"
	"	劉	東	洙	방사선학	"
	"	李	鳴	鍾	보존학	"
	"	李	在	賢	치주병학	"
	"	李	正	植	보존학	"
	"	丁	東	均	약리학	"
	"	趙	根	沃	보철학	"
	"	趙	喜	園	교정학	"
조	교 수	金	守	經	구강외과학	"
	"	金	英	洙	보철학	"
	"	金	鍾	培	예방치과학	"
	"	金	宗	源	구강외과학	"
	"	金	哲	偉	치과재료학	"
	"	南	日	祐	구강외과학	"
	"	朴	兌	源	방사선학	"
	"	孫	同	銖	소아치과학	"
	"	孫	性	熙	치주병학	"
	"	梁	棟	奎	구강외과학	"
	"	梁	源	植	교정학	"

조 교 수	尹 壽 漢	보 존 학	〃
〃	李 勝 雨	구강진단학	〃
〃	李 種 昕	생 리 학	〃
〃	林 成 森	보 존 학	〃
〃	林 昌 潤	구강병리학	〃
〃	張 翼 泰	보 철 학	〃
〃	鄭 泰 英	생 리 학	〃
〃	崔 翔 默	치 주 병 학	〃
전 임 강 사	高 在 丞	구강해부학	〃
〃	高 權 赫	보 존 학	〃
〃	禹 元 燮	소아치과학	〃
〃	李 善 炯	보 철 학	〃

(3) 명 예 교 수 명 단

전 소 속	성 명	전 공 과 목 학 위	발령년월일
문 리 대	李 丙 燾	사 회 학 문 학 박사	1962. 7. 20
〃	李 熙 昇	국 문 학 문 학 박사	62. 7. 20
〃	金 庠 基	동 양 사	62. 7. 20
〃	朴 忠 集	영 문 학	63. 4. 23
의 대	尹 日 善	의 학 박사	62. 7. 20
〃	金 斗 鍾	의 학 박사	62. 7. 20
〃	金 東 益	의 학 박사	62. 7. 20
〃	金 錫 煥	의 학 박사	62. 7. 20
농 대	趙 伯 顯	농 학	62. 7. 20
미 대	盧 壽 鉉	회화(동양화)	62. 10. 23
법 대	鄭 光 鉉	법 학 박사	67. 9. 1
대 학 원	朴 鍾 鴻	철 학 박사	68. 9. 1
공 대	李 均 相	건 축 학	69. 12. 1
대 학 원	金 桂 淑	철 학 박사	70. 10. 8

의사대공	대원대	金李鄭	星鍾鳳	煥洙寧	의영국수	학문어학	의학박사	70.10.8
문사음	리대대	朴權蔡李金	商寧義惠元	朝大順求福	토목공물사영기	학이학박사	명예문학박사	72.5.1
의	대	吳羅	鎮世	變振東	의	학의학박사	문학박사	74.7.8
생약연구소	대	韓龜	世龜	東	약	학약학박사	의학박사	7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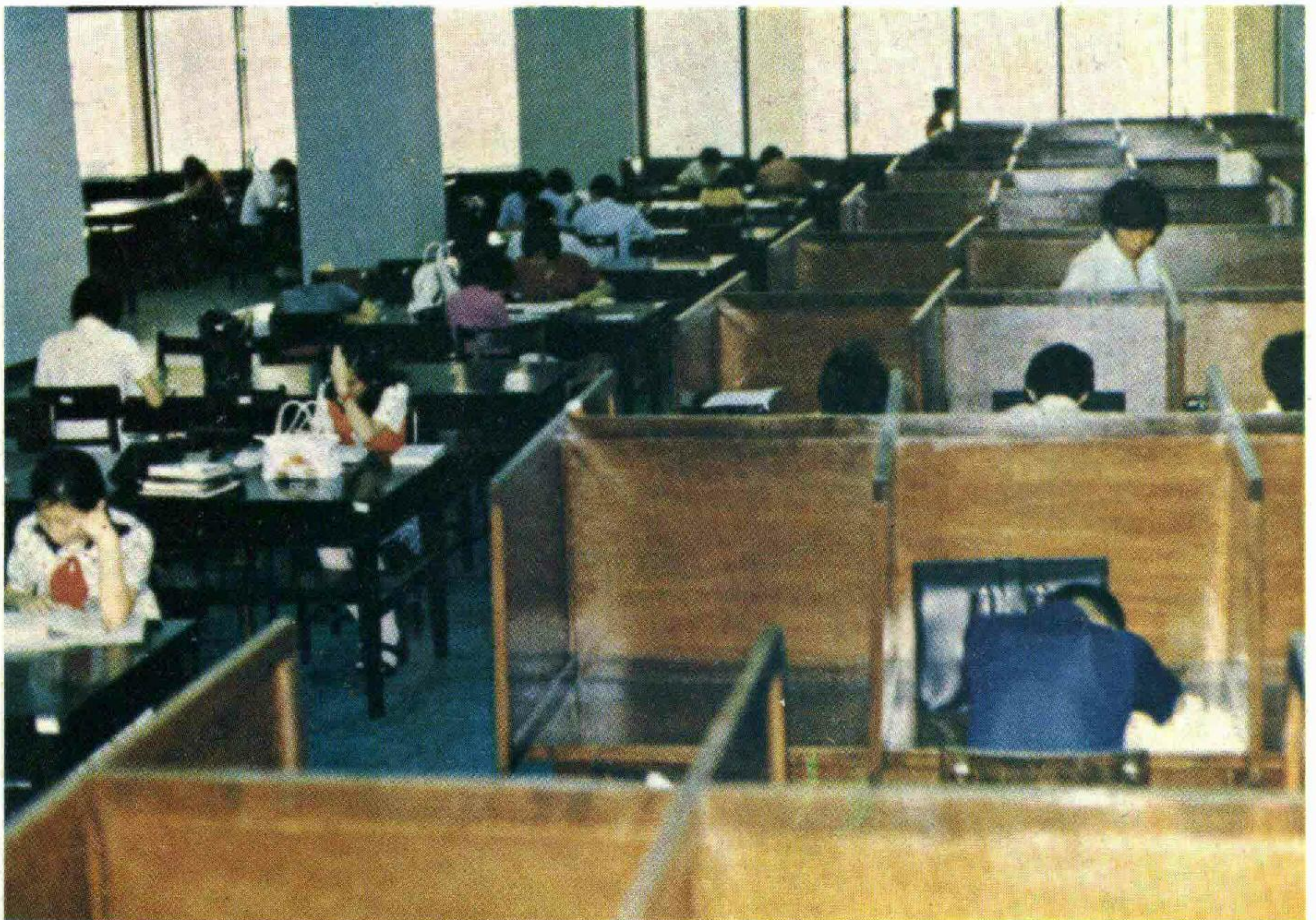
여 백

다. 부 설 기 관

여 백



도서관 (관악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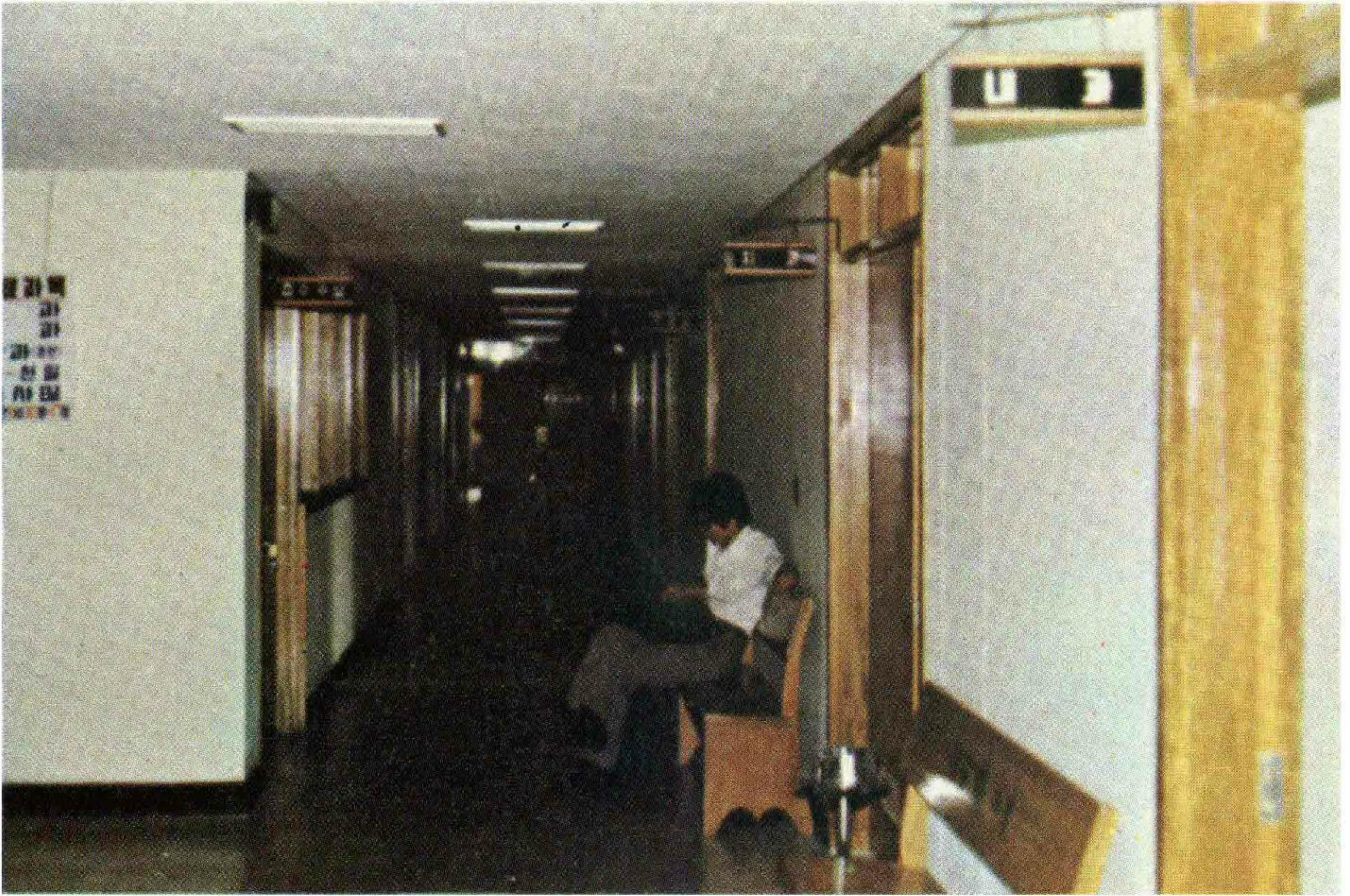
자유열람실



학생회관 (관악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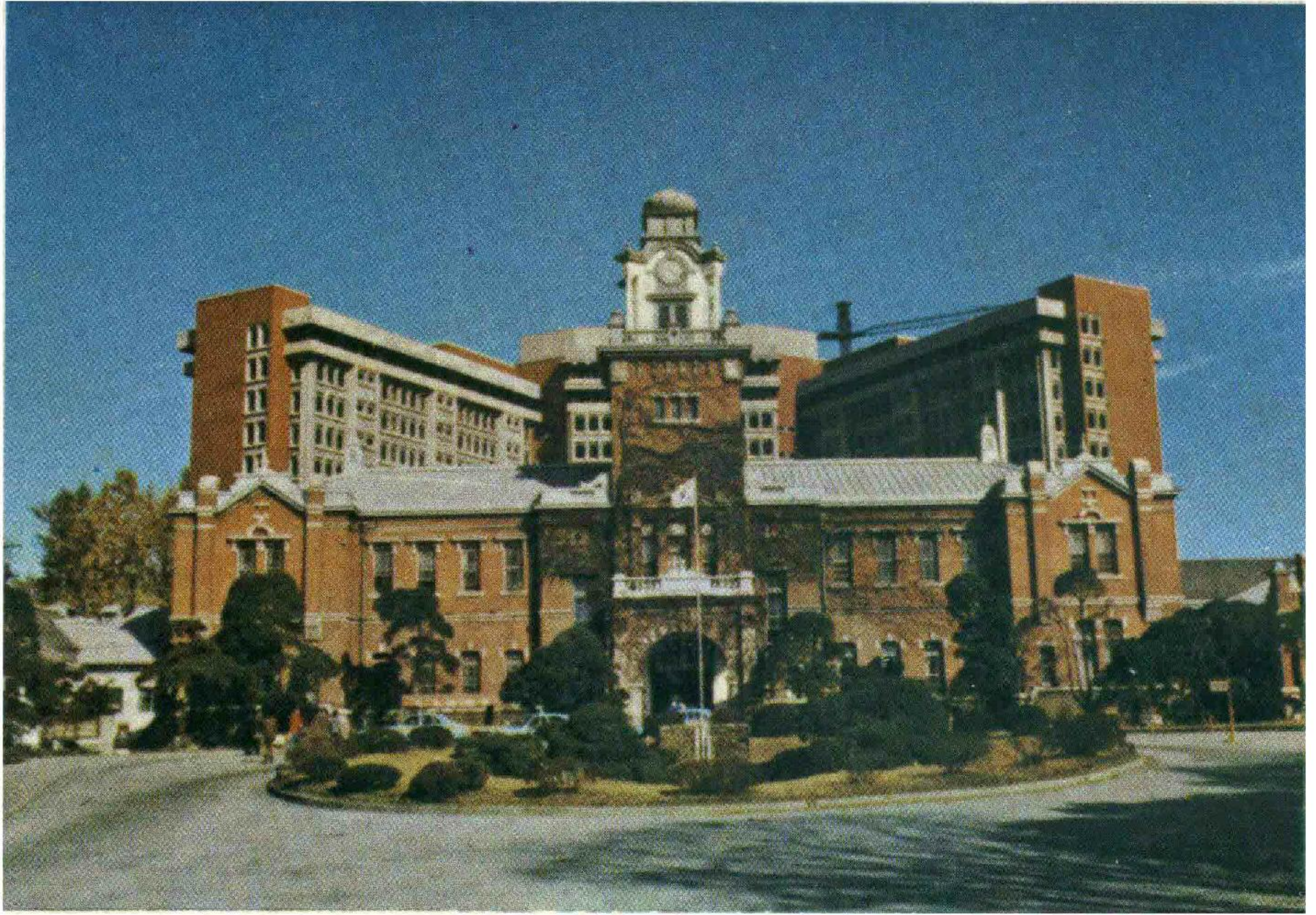
음악감상실



보건진료소 (관악캠퍼스)



소비조합운동구점



의과대학부속병원



치과대학부속병원

1. 연구 기관

(가) 직할기관

생약연구소

- (1) 위치 : 의학캠퍼스 구내
 (2) 조직 : 천연물화학연구부, 생물활성연구부, 자원개발연구부, 기기분석실, 행정실

(3) 교직원 명단

직위	직명	성명	전공	학위	겸무기관
소장	교수	禹源植	생화학	약학박사	약학대학 약학과
	"	禹麟根	식물화학	"	"
	"	洪文和	약품물리화학	"	"
	부교수	金濟勳	식물화학	"	
	"	韓秉勳	생화학	"	
	조교수	池亨浚	생약학	"	
	전임강사	申國鉉	약품분석화학	"	
	"	尹惠淑	약화학	"	
	"	李殷芳	약물학	"	

(4) 설립일자 : 1946. 8. 22

(5) 기능 : 동물, 식물 및 미생물에 함유되어 있거나 산출하는 생물활성물질에 대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기초적연구 및 신진 연구자의 지도육성

(6) 연구실적 : 최신 정밀기기와 17,526평의 연구자료 공급포지 및 10,000여종의 학술표본을 활용하여 화학, 생물학, 의학, 약학, 농학등 각 전문연구자가 유기적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하여 외국학술지, 약학회지, 생약학회지, 생화학지, 의학계열지 등

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길초의 정유성분, 강활의 정유성분, 목양의 정유성분, 희첩의 배당체성분, 인삼의 배당체성분, 길경의 사포닌성분, 상육의 사포닌성분, 여로의 알카로이드성분등 주로 테르페노이드계열의 새로운 물질의 발견, 그 화학구조 및 약리작용의 규명등 100여권의 연구실적을 들 수 있다.

어학연구소

(1) 위 치 : 관악캠퍼스 63동(학생회관 3층)

(2) 조 직 : 연구부, 교육훈련부, 행정실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겸무기관및겸직사항
소 장	교 수	黃燦鎬	영미문학		인문대학영문학과
연구 부 장	부교수	張奭鎭	언 어 학	언어학박사	인문대학언어학과
교육훈련부장	〃	李季順	언 어 학		사범대학외국어교육과
	〃	高永根	국 어 학		인문대학국문학과
	조교수	李廷玟	언 어 학	언어학박사	인문대학언어학과

(4) 설립일자 : 1962년 12월 31일

(5) 기 능 : 어학 및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어학능력 측정 및 교육훈련

(6) 연구실적 :

가. 연구사업

① 학술지 발간 : 1965년도부터 “어학연구지” 연2회 발간 (1975. 12. 현재 11권 2호), “언어교육”(75이후 응용 언어학으로 개제)지 연2회 발간 (1975. 12. 현재 7권 2호)

② 어학연구회 개최 : 1967년 제1회 개최 이래 1975년 제9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발표 및 “국어의 변형문법적 분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언어학과 인접과학”, “의미표시 : 생성론 대 해석

론”, “언어대조 분석과 언어교육,” “외국어 교재와 4기능”등 이론과 응용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활발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 ③ 어학세미나 개최 : 매월 1회 본교 교수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본세미나는 어학연구에 많은 향상과 발전을 가져왔으며 본교 종합화에 따라 특히 교수들간의 협동연구와 학문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교육 훈련

최신 설비를 갖춘 어학실습실을 보유하여 본교 재학생의 언어교육, 기타 일반인의 어학훈련을 75년 현재 15,000여명,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훈련 270명등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파견대상자에 대한 언어능력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생활연구소

- (1) 위 차 : 관악캠퍼스 63동(학생회관 4층)
 (2) 조 직 : 기획연구부, 심리상담부, 행정실
 (3) 교직원명단 :

직 위	직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검무기관
소 장	교 수	李義喆	심 리 학	철 학 박사	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
기획연구부장	조교수	李創基	정 치 학		
심리상담부장	〃	李將鎬	심 리 학	철 학 박사	사회과학대학심리학과
	〃	林承權	교 육 학		사범대학교교육학과

- (4) 설립일자 : 1962. 2. 17

- (5) 기 능 : 학생의 생활과 활동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및 학생에 대한 정신위생적 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6) 연구실적 :

- 가) 학생 생활의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수행
 나) 전문학술지 발간 : “학생연구” 년 2회 발간(11권 1호 발간)
 다) 국·영문 연차보고서 간행 : “효과적인 학습방법” “대학생을 위한 교양도서” “대학생을 위한 정신위생”등의 책자, 기타 자료 발간.

라) 학생 개인 및 집단 상담과 각종 심리검사 실시.

마) 학생을 위한 소집단 대화와 감수성 훈련 실시.

재외국민교육연구소

(1) 위치 : 공과대학 구내

(2) 조직 : 예비교육부, 학생지도부, 행정실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겸무기관
소 장	교 수	崔弘基	사회학 문학박사	사회과학대학사회학과
예비교육부장 학생지도부장	조교수	金炳國	고전문학	인문대학국어국문학과

(4) 설립일자 : 1970. 6. 23.

(5) 기능 : 재외국민 모국유학생의 지도 및 대학진학을 위한 예비교육, 재외국민 학생의 하계단기교육과 재외국민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

(6) 연구실적 :

개소 이래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947명이 예비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중 국내 대학 진학생이 575명, 대학원 진학생이 45명이며, 75학년도 예비교육부에 143명이 수학과 있다.

본 연구소의 연구 및 실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예비교육부 : 재외국민을 위한 교과서와 연구지 “재외국민교육” (신문), “재외국민교육논총”, 교지 “현해탄” 발간.

나) 학생지도부 : 모국유학생 자치회를 통하여 모국 유학생들의 자질향상과 국내 학생들과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경제연구소

(1) 위치 : 관학캠퍼스 인문사회관 7동 3층

(2) 조직 : 연구부, 경제문헌자료센터, 행정실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겸무기관
소 장	교 수	李賢宰	재정금융 경제학박사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
연구부장	“	姜命圭	경제학사	“

(4) 설립일자 : 1961. 2. 27.

(5) 기능 : 경제문제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연구를 수행하여 경제이론을 개발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한다.

(6) 연구실적 :

본 연구는 연구지발간, 자체 및 국제 공동연구, 수탁연구,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 도서자료의 수집, 정리, 해외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술지 발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계간경제논문집인 “경제논집”

나) 연간영문논문집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Review”

다) 외국의 저명 논문을 발췌수록한 “Selected Articles Series”(연 1회 이상)

라) 월간 연구 정보지로서 “외국학술지 주요 논문 목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자체 및 국제 공동연구결과와 외부의 위탁연구보고서 등을 수시 발간하고 있다.

법학연구소

(1) 위치 : 관악캠퍼스 10동 4층

(2) 조직 : 연구부, 판례부, 간행부, 행정실

(3) 교직원명단

직 위	직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겸무기관
소관 판례부 장	교수	鄭熙喆	상	법학박사	법과대학
연구 간행부 장	조교수	宋相現	민사소송법	법학박사	법과대학

(4) 설립일자 1970. 4. 8.

(5) 기능 :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법학교육 및 법률문화의 향상을 도모한다.

(6) 연구실적 :

본 연구소는 우리나라 초유의 사업으로서 건국이래의 대법원판례에대

한 주석집을 민사법, 형사법, 공법의 3분야로 나누어 발간하고 (현재까지 민사법 판례집 4집, 형사법판례집 3집, 공법판례집 1집 발간), 학술연구지로서 “법학”을 년 2회(현재까지 16권 2호, 특별호 3호 발간) “판례회고”를 년 1회(현재까지 3호 발간) 간행하고 있다.

또한 법학연구총서를 국, 영문으로 간행하고 있으며(현재 한국의 법학교육”과 “한국의 법조인” 발간)

경제기획원 및 USAID, 국토통일원, 문교부 등의 요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또 학술대회의 개최로서 1964년 및 1965년에 “전국 법학교수대회”를, 1972년에 “법학교육에 관한 세미나” 및 “법과 사회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주최하였다.

특히 1971년부터 법학교육 방법 개선을 위해 아시아재단의 재정지원으로 우리나라 조유의 판례교재 편찬사업을 수행하여, 1차년도 사업으로 “물권법”과 “어음 : 수표법”, 2차년도 사업으로 “헌법”과 “친족상속법”, 3차년도 사업으로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이 출간되었으며 기타 주요법률분야에 관한 판례교재도 1977년까지는 완결할계획이다.

(나) 대학부설기관

① 법정기관

사회과학대학 신문연구소

- (1) 설립일자 : 1963. 3. 25.
- (2) 소장 : 교수 金 圭 煥
- (3) 기능 : 신문, 방송, 출판, 공보등 매스컴커뮤니케이션분야에 관한 학술적연구와 이에 종사하려는 자의 교육훈련
- (4) 연구실적 :

1968년까지 66명의 연구생을 수료시켰으며, 매년 연구소 학보를 발간하여 1975년도에는 제12집 까지 발간하였다.

1970년에는 “경제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문공부와

연구용역을 맺어 교수 김규환(소장)을 주축으로 한 연구팀이 큰 연구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76년부터는 한국신문언론인금고에서 위탁한 증견 언론인 5명에 대해 기자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공부에서 “언론계 경영실태조사”를 위촉해 이의 연구를 위한 계획을 이미 마쳤고, 68년부터 아시아 신문재단이 요청한 독자연구센터를 본 연구소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연구중이다.

공과대학 생산기술연구소

(1) 설립일자 : 1975. 3. 1.

(2) 소장 : 교수 金 熙 喆

(3) 기능 및 업적

본 연구소는 재료개발, 기계 및 선박, 전력 및 전자기술, 석유공학, 전설기술, 에너지 개발 및 공해산업체제연구부를 두고 생산기술 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향상과 국가의 산업개발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학 및 공업에 관한 연구, 정부기타 각기관에서 위촉하는 연구, 국내 각기관의 기술자 재훈련, 외국 각기관과의 학술및 기술정보 교환등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1) 설립일자 : 1973. 9. 29.

(2) 소장 : 교수 鄭 然 泰

(3) 기능 : ①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개발

② 학습지도방법의 연구

③ 교육자료의 수집과 개발

④ 교사교육 및 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협조

(4) 연구실적 :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실업학교 물리교육에 관한 연구” “Portland project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발전과 과학교육 Work-

shop을 개최하며 매년 하기방학기간중 과학교사 재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교육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실업학교 연구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과대학 의학교육연수원

(1) 원장 : 교수 權 彝 赫

(2) 개요 : 의학교육연수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원, 의료기사등 각종 의료보조요원을 양성하는 전국교육기관의 교육요원을 교육학적 과정에 의하여 재훈련 시키고, 의학 및 기타 보건교육의 기본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관련교육 재료의 제작연구 및 개발등을 수행하고자 1975년 3월 1일 신설되었으며 연수교육부, 연구부, 자료부, 시청각기재부, 사무실 등을 두고 있다.

1) 연수교육부 사업으로는 의학 및 관련 보건교육 요원등을 재훈련 시키고 의학 및 관련보건교육자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실행 및 평가를 포함한 교육학 분야의 훈련을 통하여 의학 및 관련보건분야의 지식과 기술향상 개발에 응용하는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

2) 연구부는 의학 및 관련보건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의 연구와 개발등을 하고

3) 자료부에서는 교육자료의 수집, 제작 및 대여등을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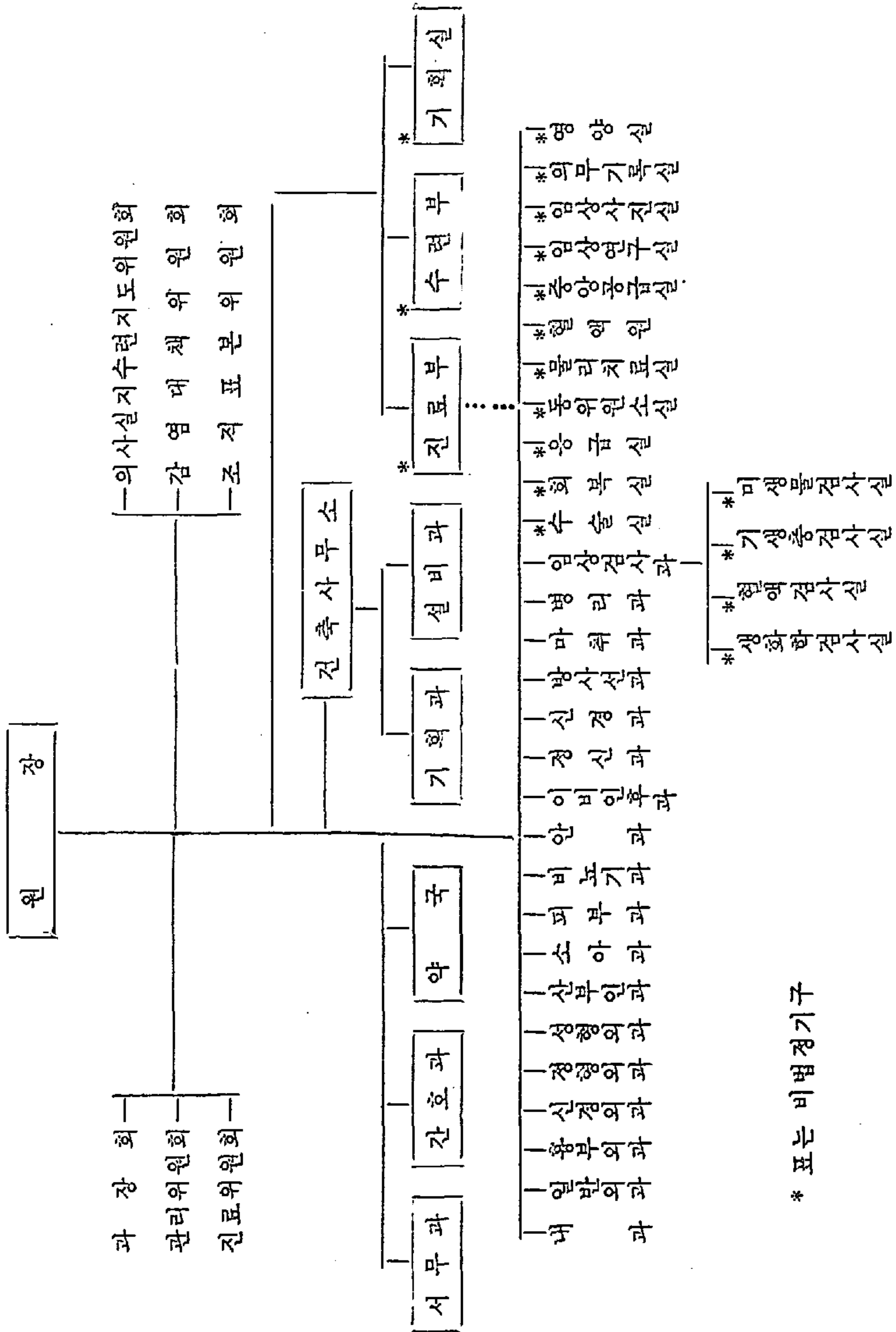
4) 시청각기재부에서 교육에 관련된 보조기재의 전시(상설, 순회)및 응용등을 수행하므로써 국내 의학 및 관련보건분야의 교육기관을 협조 지원한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1) 기구표(p. 103 참조)

(2) 조직 : 원장, 건축사무소장 4과 1약국 2부 1실 18진료과 6중양진료시설 5부속시설 4점사실이 있다.

표 구 기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겸무기관
원 장	교 수	金 弘 基	이비인후과학 의학박사	의과대학
진 료 부 장	"	朱 權 源	비뇨기 과학 "	"
수 련 부 장	"	李 定 均	정 신 과 학 "	"
기 획 실 장	"	金 英 均	비뇨기 과학 "	"
건축사무소장		金 雄 世		
서 무 과 장	서 기 관	趙 元 濟		
간 호 과 장	조 교 수	洪 京 子	간 호 과 학	의과대학
약 국 장	약 무기 정	康 炯 泰	약학박사	
기 획 과 장	서 기 관			
설 바 과 장	건축기 좌	尹 吉 相		
직 무 대 리				
서 무 과	행정사무관	金 漢 培		
"	"	朴 燾 甲		
"	"	金 均 盛		
"	"	李 重 華		
"	"	呂 乙 九		
간 호 과	간 호 기 좌	金 義 淑		
"	"	金 錦 子		
약 국	약 무기 좌	李 哲 雨		
"	"	趙 允 熙		
기 획 과	행정사무관	金 喆 相		
검 사 과	보건기 좌	石 鍾 聲		

(4) 운영현황

본원은 진료를 통한 의학의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기관으로서 89명의 임상교수와 192명의 레지던트, 74명의 인턴, 159명의 간호원 및 231명의 일반직과 의료기술진의 보조로 진료를 행하고 있는 국내최대의 종합병원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있다.

본병원 75년도 진료계획을 보면 입원환자 165,000여명, 외래환자 221,000여명이며 74년도 진료실적은 입원환자 135,322명이고 외래환자는 190,167명으로서 총세입은 1,652,441,580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74년도 교육실적은 임상교육 69명, 수련교육 230명, 수습생교육 36명 합계 956명이며 75년도 계획은 1,031명으로서 당초 계획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5) 시설현황

병원 대지 44,380평에 입원실, 진료실, 수술장, 검사실 및 실험실, 약국, 행정실과 연구실등 총 3,009평의 건물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보유 입원실은 230개이고 병상수는 512개이다.

또한 본원은 동양 최대의 영구적인 교육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내자 82억 8백만원, 외자 3,500만불을 들여 1967~1977년에 걸쳐 쌍 Y형 철근 콘크리트조의 지하 1층 지상 12층의 맘모스 병원을 신축중에 있는데 여기에 소요된 전평은 25,227평이고 장차 보유하게될 병상수는 1,055개로서 1일 외래환자진료수는 2,000여명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개개인에게 베풀어지는 의료혜택의 범위는 가일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치과대학 부속병원

(1) 기구표 (p. 106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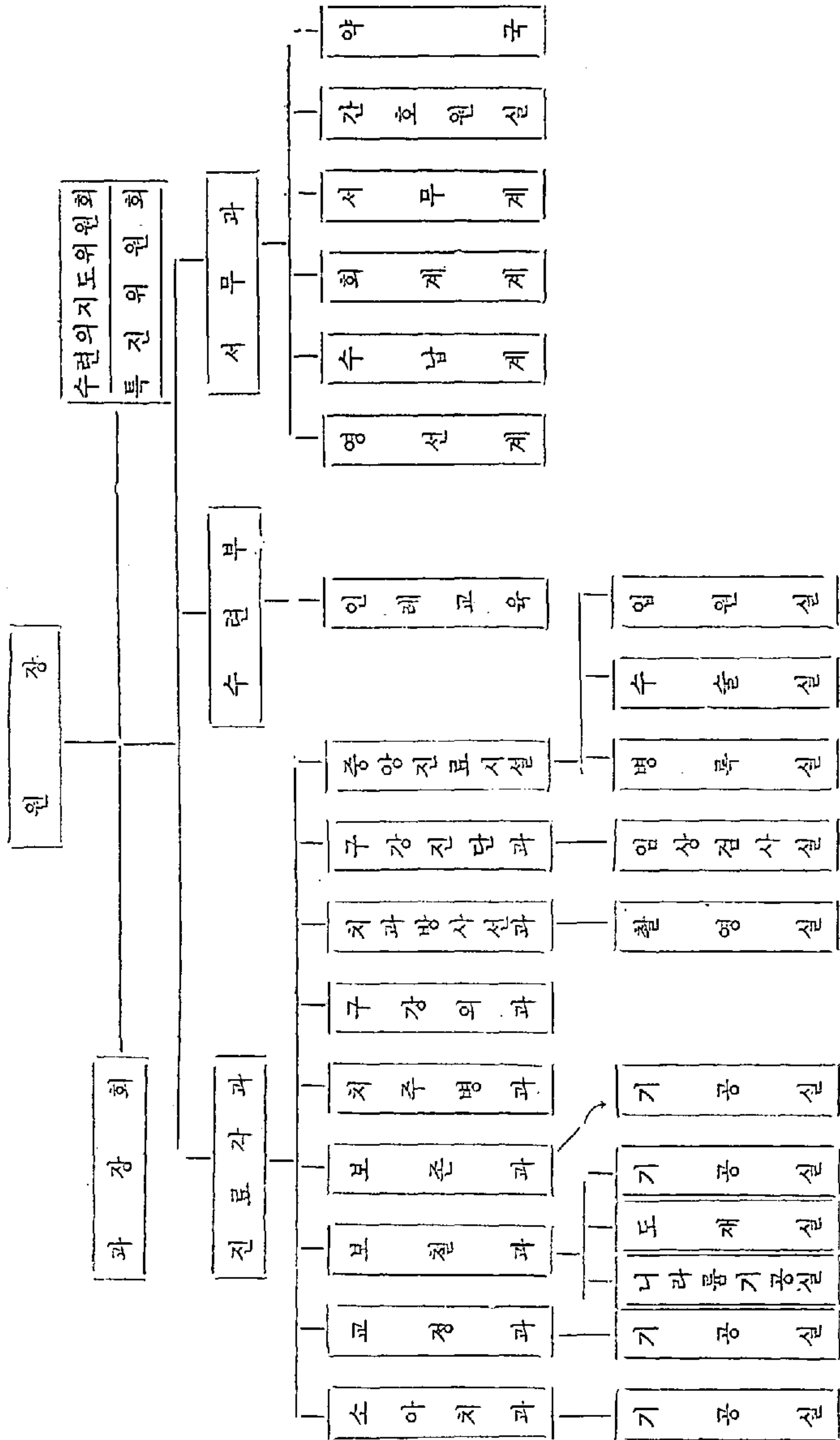
(2)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겸무기관
원 장	교 수	金 圭 植	구강외과학	의학박사	치과대학
서 무 과 장	서기관	張 之 南			

(3) 운영현황 :

본 병원은 1과 1부 8개의 진료과를 두고 있으며 53명의 교수진, 36명의 수련의 즉 24명의 레지던트와 12명의 인턴으로 이루어진 의료진과 23명의 일반직원 및 37명의 업무보조원등 14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36명의 전문의의 수습과정 교육은 물론 원내생(학부 3,4학년)에 대한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기구표



(4) 시설현황 :

건평 677.8평의 건물에 9개의 병실과 23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유닐 139개 치과의자 145개, 엑스레이촬영대 12개, 에어터빈 49개, 수술대 2개, 전신마취기와 전기소작기 등의 진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② 비법정기관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1) 설립일자 : 1961. 1.

(2) 소장 : 교수 李 基 文

(3) 기능 : 한국을 기축으로한 동부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 조사 및 보급.

(4) 현황 및 업적 :

본 연구소는 설립이래 본대학교 규장각 소장 도서의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학술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귀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성과를 크게 올려서 이를 간행하였다. 한편 분야간 협동의 방식으로 한국의 전통사회와 문화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왔다. 이리하여 이조말기 사회연구, 서구사상의 유입과 이조말의 전통문화연구, 한국의 경제구조와 그 변천, 변화하는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이조 초기의 양반관료 체제의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또 한편 한국연구를 국내 및 국외에 더욱 보급시키기 위해 영문판 “한국학의 현황”등을 발간하였고, 한국학대사전편찬의 일환으로 방대한 “국어국문학사전” 및 “정치경제사사전”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밖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학술발표회를 주관하였으며 국내외의 저명 학자를 초청하여 공개학술강좌를 열었고, 또 동양학 심포지움, 담화회등의 형식으로 동양학에 관한 학자간의 연구발표 및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졌으며 학보 “동아문화”를 제13집까지 발간하였다. 근년에 이르러 연구범위를 넓혀서 동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인문대학 한국문화연구소

(1) 설립일자 : 1969. 6. 13.

(2) 소장 : 교수 韓 洙 勳

(3) 기능 : 한국문화에 관한 연구를 각분야에 걸쳐서 수행하여 대학교육의 질적향상과 세계문화 발전에 공헌한다.

(4) 연구실적

설립이래 “한국의 사회의식 구조의 변천”이라는 연구과제로서 각 분야에 걸친 연구를 하여 한국문화총서(년간)을 16권까지 발간하였으며 75년도에는 3권의 총서를 발간하였다.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

(1) 설립일자 : 1965. 8. 31.

(2) 소장 : 교수 李 海 英

(3) 기능 : 한국의 인구 및 발전문제와 이에 관련된 과제의 연구 및 이들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4) 연구실적 :

인구현상 및 발전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이 분야의 연구업적과 자료의 수집 및 정리, 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공개강좌 및 학술토론회 개최,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협동연구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간행물은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회보”(년간), “인구 및 발전문제 연구소 연구총서”(부정기)의 두가지 종류를 발간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 국제문제연구소

(1) 설립일자 : 1972. 6.

(2) 소장 : 교수 朴 奉 植

(3) 기능 : 국제문제의 학술적 연구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며, 한국의 안보 국방 및 외교정책 수립에 공헌함으로써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4) 연구실적 :

국제문제의 조사연구, 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성과 및 간행물의 발간,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와의 협력 교류, 연구발표회 및 공개강좌 학술토

론회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소의 “논문집”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그 영향을 특히 많이 받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에 비추어 볼때 국가의 존위와 번영을 위해 국제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가 실로 긴요하므로 본 연구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경영대학 한국경영연구소

(1) 설립일자 : 1963. 4. 22.

(2) 소장 : 교수 沈 昞 求

(3) 기능 : 1. 경영학의 이론적 연구와 경영의 실제문제 분석
2. 정부의 관계부처 및 전체기업과의 산학협동 증진
3.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책에 기여한다.

(4) 연구실적

경영 및 산업전반에 관한 제반기초자료의 수집, 정비 및 발표와 국내외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과 위탁연구, 정부 및 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경영상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학술지로는 “경영논문집”(계간) “경영실무”(계간) “한국경영사례집”(년간)을 발간하며, 학술강연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학술연구분야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공기업의 경영지도 및 경영분석을 통하여 경영학분야에 훌륭한 연구업적을 쌓아왔다.

농과대학 농업개발연구소

(1) 설립일자 : 1967년 8월 7일

(2) 소장 : 교수 玄 信 圭

(3) 기능 : 농·임업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농·임업생산기술의 향상과 국가 농·임업시책에 대한 방향제시, 자료 제공 및 농·임업교육 향상에 기여한다.

(4) 연구실적 :

“초자원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등 20여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6회의 교수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현재 Ford Foundation의 지원에 의한 Laboratory Village(실험농촌) 사업을 착수하고 있고, 농업과학연구소의 명칭을 농업개발연구소로 개칭하여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 설립일자 : 1963. 11.

(2) 소장 :

(3) 기능 : 교육에 관한 제문제를 연구함으로써 한국교육의 향상에 공헌한다.

(4) 연구실적 :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전망” “교사 자질 예언을 위한 평가연구”등 30여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교육이념, 교육정책과제도,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사회교육, 생활지도에 관한 연구 및 교육자료의 수집, 개발, 교육문헌의 정리와 출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과대학 결핵연구소

(1) 설립일자 : 1963년 6월

(2) 소장 : 교수 金 敬 植

(3) 기능 : 결핵치료와 예방의 발전, 한국결핵의 학술적 실태조사 결핵관리사업의 발전을 연구 조사함으로써 결핵의 근절과 해결을 도모하고 환자의 진료 및 예방의학적 검토와 대책에 관한 연구조사.

(4) 연구실적 :

결핵질환 및 유사질환의 병리 및 세균학적 연구조사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결핵환자의 생화학적 검토 및 항결핵제의 약리학적 조사연구,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생리학적 연구조사와 기능적 진료에 대한 연구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최근의 연구업적으로는 결핵환자의 치료관리 외에 기관지염 치료법

에 관한 연구 등 수건을 행하였다.

의과대학 인구의학연구소

(1) 설립일자 : 1972. 4. 28.

(2) 소장 : 교수 權 彞 赫

(3) 기능 : 인간생식, 가족계획과 인구역학분야에 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향상과 교육훈련.

(4) 연구실적 :

본 연구소의 국제참여기관(International Participating Agency)인 WHO와 공동으로 모든 연구를 계발 추진하고 있다.

또한 WHO 본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22개 임상연구기관(Clinical Research Center)의 하나로 인구의학에 관한 임상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의과대학 암연구소

(1) 설립일자 : 1963. 7. 1.

(2) 소장 : 교수 李 濟 九

(3) 기능 : 암 및 이와 관련된 질병들의 본태,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4) 연구실적 :

암의본태, 진단 치료에 관한 논문 100여편 외에 “한국인의 백혈병에 관한 연구”등 20여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연구와 암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암의 조기진단에 관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의과대학 풍토병연구소

(1) 설립일자 : 1963. 9.

(2) 소장 : 교수 徐 丙 高

(3) 기능 : 한국고유의 풍토병을 연구 조사하여 병원체 근절을 도모하여

풍토병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4) 연구실적 :

기생충질환, 풍토성인 농후한 세균 및 바이러스질환, 결핍성질환의 조사연구와 치료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71년도에는 열대지역 특유의 질병을 조사하였고, 열대지역 파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여 왔던 열대의학연구소를 흡수 통합하여 기구 및 인원을 재 정비, 연구사업을 더욱 확장하였다.

“제주도 사상충증의 역학적 연구 및 집단치료”를 위시하여 경남지방에서 “이락촌 폐흡충”을 발견하는 외에 100여편의 주요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제주도 서귀포에 연구소 분원을 설치하고 O.T.C.A.에서 약4만불 상당의 기재를 원조받아 제주도 사상충증의 집단치료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의과대학 국민체력과학연구소

(1) 설립일자 : 1965. 3. 1.

(2) 소장 : 교수 南 基 鏞

(3) 기능 : 국민체력의 과학적 연구와 계몽을 통하여 국민체력의 증진과 체위향상에 기여한다.

(4) 연구실적 :

“학교급식에 관한 연구” “일부 직장여성의 체질 방향 측정에 의한 영양실태조사” 등 6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모든 연령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과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

(1) 설립일자 : 1966. 8. 30.

(2) 소장 : 부교수 許 程

(3) 기능 : 국민보건에 관한 과학적연구와 계몽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4) 연구실적 :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대한 조사, 모자보건실태조사, 가족계획 실태조사, 환경위생 실태조사, 가족계획사업의 행정적 평가등 제반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년간 2회 공중보건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1) 설립일자 : 1967. 11. 2.

(2) 소장 : 교수 朴 東 緒

(3) 기능 : 행정대학원에 행정분야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이론과 실제면의 조사를 행할 수 있는 행정조사 연구소를 두고 있다. 주로 각 부처 행정에 관한 조사를 뒷바침하고 위탁조사를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출판 제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조사 기술을 습득케 한다.

이 연구소는 종래의 조사연구실이 확장 승격된 것인 바 연구의 체계화와 집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되 연구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4) 연구실적 :

그동안 본 연구소에서 조사 연구한 실적은 다음과 같은 바 이것은 모두 출판되어 각계 각층의 연구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능력에 관한 평가” “행정계획에 대한 전반적 평가” “최고정책결정직의 역할에 관한 연구” “행정능력의 평가” 외 40여건의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1975년도에는 행정관리 개선 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체신공무원 단독신분 및 보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 및 청소년 개발을 위한 실태연구 외 많은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 및 학술분야에 공헌을 하였으며 단행연구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 지 원 기 관

(가) 직할기관

도서관

- (1) 위치 : 관악캠퍼스 62동
- (2) 조직 :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참고서지과, 규장각도서관리실
- (3) 교직원 명단 :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검무기관
관 장	교 수	李 萬 甲	사 회 학	사회학박사	사회과학대학 사 회 학 과
규장각도서관리실장	부 교 수	朴 秉 濠	민 법	법학박사	법 과 대 학
수서과장	서 기 관	朴 炳 璵			
	행정사무관	金 通 元			
정리과장	서 기 관	柳 東 烈			
열람과장	"	金 應 河			
참고서지과장	"	鄭 燦 珏			

(4) 개요 :

본교 도서관이 관악캠퍼스에 이전함을 계기로 종합화되어 대학도서관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캠퍼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각 교육시설에서 이용이 편리하며, 냉·난방 시설을 갖춘 총 9,244평의 6층 건물 안에 약 4,000석의 열람석과 120만권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서고 및 기타 시설등을 갖추어 교수, 학생들의 활발한 연구, 면학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이 종합화됨에 따라 농대, 의대를 제외한 모든 분관장서를 흡수함으로써 약 83만권의 장서 외에 특수도서로서 규장각도서를 위시하여 일사문

고, 가람문고, 상백문고, 경제문고, 설송문고 등의 귀중한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5) 시설내용

- 가) 기본도서실 : 학생들이 보고자 하는 교양도서를 자유롭게 서고에 출입하여 열람하도록 되어 있으며 좌석은 320석임
- 나) 정기간행물 열람실 : 4층에 마련되어 있어 학술잡지의 열람에 임하고 있음.
- 다) 정독실 : 학생들이 임의로 출입하여 장시간 공부할 수 있으며 좌석은 256석임.
- 라) 자유열람실 : 학생들이 자유로히 출입 공부할 수 있으며 좌석은 406석임.
- 마) 일반열람실 : 4.5.6층에 6개의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음.
- 바) 교수 및 대학원생 열람실 : 5.6층에 각 1개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열람석도 30석이 마련되어 있음.
- 사) 그룹스타디움 : 학생들이 집단으로 연구 토의할 수 있는 특수시설로서 7개실이 있음.
- 아) 참고실 : 참고도서를 비치하고 목록 및 도서관자료 이용안내, 참고질문에 응하고 있음.
- 자) 서지실 : 각종 색인, 초록, 목록, 서지등을 비치하여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음.

박물관

- (1) 위치 : 관악캠퍼스 62동(도서관) 6층에 잠정 수용
- (2) 조직 : 고고부, 행정실
- (3) 교직원명단

직	위	직명	성명	전공	학위	겸무기관
소	장	교수	金元龍	고고학	문학박사	인문대학교고고학과

- (4) 개요 :

본교 박물관은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역사적 유물과 문화, 예술, 민속에 관한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 발굴하고 이를 진열 전시하여 학술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역사고고품, 민속품, 서화류 등 총 6,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소장품 현황(1975 년 현재)

분 류	역사미술품	민속품	계
금속제품	972	389	1,361
옥석제품	367	123	490
토도제품	1,782	174	1,956
골각제품	89	105	194
서화류	513	43	556
의상류		30	30
편집물제품	5	155	160
목죽초제품	127	946	1,073
모피혁제품	19	256	275
기타		28	28
합계	3,874	2,249	6,123

보건진료소

- (1) 위치 : 관악캠퍼스 63동(학생회관) 2층
- (2) 조직 : 환경위생부, 건강관리부, 진료부(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정신신경과, 응급실) 검사부(X레이검사, 암상검사), 약국, 행정실.

(3) 교직원 명단 :

직 위	직명	성 명	전 공	학 위	경무기관
소 장	교 수	魯 炳 鎬	내 과 학	의학박사	의과대학
	전임강사	崔 康 元	내 과 학		

(4) 개요 :

본 진료소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과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목적으로 1957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학생보건 향상을 위한 건강상담, 집단검진과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에 관한사항, 환자진료및 처치와 질병상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 진료소의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VIII학생 장학, 후생의 2항에 수록된 학생보건편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전자계산소

- (1) 위치 : 관악캠퍼스 60동(본부) 2층
- (2) 조직 : 기계실, 프로그래머실, 천공실, 행정실
-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명	성명	전공	학위	겸무기관
소장	교수	金 哲 洙	유체역학	이학박사	자연과학대학물리학과
부소장	조교수	金 榮 澤	계산과학	공학박사	// 계산통계학과

(4) 개요 :

본 계산소는 정보처리에 관하여 학생교육 지원, 교수의 연구지원, 학교행정의 기계화 지원등 지원사업과 정보과학을 위한 전공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본 계산소는 1975년 3월부터 IBM 360 Model 40의 기종을 설치하여 학생교육지원, 교수연구지원, 학교행정의 기계화 지원등 지원사업과 고도의 정보과학의 연구개발을 담당 지원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는 FORTRAN등을 이수시켜 수치계산을 위한 기계이용방법을 보급시키며 자연과학대학 등에서 약 1,000명의 학생이 매학기마다 수강하고 있다.

사회계열 학생들에게는 COBOL등을 이수시켜 사무자료 처리를 위한 기계이용법을 훈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과학을 전공하는 계산계열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기계의 전공서적 및 문헌을 보급하여 정보과학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교수들에게는 일반적인 기계이용을 통하여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하며 학교행정의 기계화로 현재 12,000명의 학생의 학사행정처리 2,000

여명의 직원의 급여처리 등이 연구 실시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일반자료처리를 하고 있지만 곧 특수연구실을 갖추어 시대적인 요구의 정보, 과학실험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달성을 갈망하고 있다

교육매체제작소

- (1) 위치 : 관악캠퍼스 61동
- (2) 조직 : 제작부, 관리부, 연구개발부, 행정실.
- (3) 교직원명단 :

직 위	직명	성명	전공	학위	겸무기관
소장	조교수	安秀吉	통신회로망이론	공학박사	공과대학전자공학과

- (4) 개요 :

본 제작소는 서울대학교 종합 10개년계획에 따른 공동시설(종합시청각교육관, 시청각 장비 및 CC-TV장비)의 현대화에 의거 교수의 강의를 돕고 동시에 많은 학생을 필름과 슬라이드, 녹음 및 T.V. monitor를 통한 시청각교육을 하므로써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청각교육 보조재료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Instruction Media Center에서 Radio T.V.의 방영은 물론, 영화, 슬라이드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CC-TV를 통하여 I.M.C.관과 캠퍼스내에 산재되어 있는 7개의 대형강의실과 연결되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실험동물사육장

- (1) 위치 : 관악캠퍼스 64동
- (2) 조직 : 사육부, 자료연구부, 행정실.
- (3) 교직원명단 :

직 위	직명	성명	전공	학위	겸무기관
장	장 조교수	朴相大	세포생물학	이학박사	자연과학대학동물학과

- (4) 개요 :

본 사육장은 본교 교직원의 연구와 학생의 실험 실습에 필요한 동물을 사육, 유지, 공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마우스(A, C₃H, C₅₇ Strain), 랫트(WM. Sprague-Dawley 등 근교 계통), 햄스타, 기니아픽, 토끼등을 사육하고 있고, 이외에 교직원 연구에 필요한 소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탁받고 있다. 동물사육을 위하여, 5개의 사육실 및 특수실험동물사육실. 수족관, 사료 배합 및 건조실, 세척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학생기숙사

1. 관악사

(가) 위치 : 관악캠퍼스 80-85동

(나) 사감명단 :

사감장 : 부 교수 南 世 鎭

사 감 : 조 교수 金 鎭 世

사 감 : 전임강사 金 東 進

사 감 : " 李 光 雄

(다) 개요 :

1975. 8. 23. 개사한 관악사는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학하는 각 대학 제 1학년 및 대학원과정 남학생이 입사할 수 있으나 다만 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는 대학 제 2학년 이상의 학생도 입사할 수 있으며 수용정원은 712명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며 시설도 매우 훌륭하여 사생들의 사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다.

(라) 사칙 :

서울대학교 관악사 사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사칙은 서울대학교 관악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목적) 관악사는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율과 질서있는 공동생활의 체험을 통해 인간형성에 이바지한다.

제 3 조 (개사기간) 관악사의 개사기간은 학기 및 동기 휴기기간을 제외한 개학기간으로 하되 사감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임시 폐사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제한) 관악사의 숙소 및 시설물은 사생이외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감장은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 5 조 (사생활동) 효율적이며 질서있고 명량한 공동생활을 꾀하고 상호 학문적 탐구를 위한 사생의 활동은 사감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그 방침과 절차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 (시행세칙) 이 사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7 조 (설치) 관악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8 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후생과장 및 사감장과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직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칙 및 동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결산
3. 각종 부담금징수
4. 기타 관악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시행) 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사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3 장 조 직

제12조 (사감) ①관악사에 사감장과 숙사등에 사감 각 1인을 둔다.

②사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사감은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사감의 직능) ①사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악사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사감은 사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한다

제14조 (조교) 사감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숙사등에 조교 각1인을 둔다.

제15조 (직원) 관악사에 관리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16조 (사감회의) ①관악사에 사감 회의를 둔다.

②사감회의는 사감장과 사감으로써 구성하며 의장은 사감장이 된다.

③사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생선발
2. 퇴사처분
3.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기타 사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회의성립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입사 및 퇴사

제17조 (입사자격) 관악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학하는 각대학 제1학년 및 대학원과정 남학생으로서 학업에 정려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라야 한다. 다만 신체적 조건으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자는 대학 제2학년 이상의 학생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사할

수 있다.

- 제18조 (사생선발) ①관악사에 입사하고자 하는자는 매학기 사생선발 기간중 입사원을 담당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감장은 지도교수 경유 대학(원)장이 추천한 입사희망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 통지서를 발부한다.
- ③사감장은 전항의 선발결과를 총장 및 소속대학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2. 관악사에서 퇴사한자.
 3.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4. 품행이 전전치 못한자.

제20조 (입사등록) 입사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 등록기일내에 납부금과 국·공립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제21조 (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감장은 퇴사처분하고 총장 및 소속대학장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자.
 2. 휴학
 3. 사칙 및 동시행세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4. 납부금 체납자
 5. 전염성 질환이환자
 6. 기타 단체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

제22조 (퇴사신고) 재사기간의 만료 또는 원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퇴사처분을 받은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공용비품의 반납확인서를 받은 후 퇴거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사기간) 재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과정 학생과 제17조 단서에 규정된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장 경 비

제24조 (경비부담) 관악사의 시설 및 시설 보수비와 총장이 배치한 직원의 급여 이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의 부담으로 한다.

제25조 (납부금) ①사생은 입사비, 사비, 관리비 및 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② 납부한 입사비, 사비 및 관리비는 퇴사를 사유로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납부금의 납부시기) 입사비와 사비 및 관리비는 매학기 1회, 식비는 매월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는 사감장이 정한다.

제27조 (납부금의 용도) ①입사비와 사비는 관악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공공요금 및 직원의 수당에 사용한다.

②관리비는 사생이 직접쓰는 광열수도료, 난방비, 소모품비 및 용원의 급료에 사용한다.

③ 식비는 식사 조리에 필요한 재료비, 취사용 광열수도료, 취사 및 식사용 소모품비와 취사부의 급료에 사용한다.

제28조 (예산과결산) ①사감장은 매학기 개시 20일전에 세입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사감장은 매학기 경과후 지체없이 세입과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사칙은 1975년 8월5일부터 시행한다.

2. 청암사

(가) 위치 : 공과대학 구내

(나) 사감 : 조교수 羅 亨 用

(다) 설립목적 :

사생에게 수학상의 제반 편의를 도모하여 사생 상호간의 인화를 조성하고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협동 자치정신을 배양하며 지도자적 인물로 육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 입사자격 :

청암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공과 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서 학업에 정려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라야 한다.

청암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사원서에 보증인 연서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고 사감은 이를 심사하여 입사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1)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2) 퇴사명을 받고 퇴사된 자.
- 3) 품행이 건전치 못한 자.
- 4) 사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마) 수용능력 :

2인용 방으로서 3개호동에 총 610명 수용, 각호동별 수용능력은 다음과 같다

1호동 104개 208명

2호동 105개 194명 (2인용 89개 독방 16개)

3호동 104개 208명

(바) 개요 :

청암사는 1961. 3. 14. 준공되었으며 2층 홀에 음악감상실이 마련되어 청암사생들의 정서 양양을 도모하고 있다.

132평 홀에 80여석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클래식 음악 레코드 200대가 비치되어 있다. 또한 오락실에는 탁구대 4대가 설치되어 청암사생들의 건전한 스포츠 생활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많은 청암사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3. 상록사

(가) 위치 : 농과대 학구내

(나) 사감 : 조교수 南 重 熙

 " 禹 建 錫

(다) 설립목적 :

본 기숙사는 농과대학 남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상의 편의를 도모하여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협동 자치정신을 함양하여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입사자격 :

농과대학 신입생은 전원 입사하고 농과대학 학생으로서 전학기 평점 2.70 이상의 성적을 득한자에 한하여 입사할 수 있다.

(마) 수용능력 500여명.

4. 녹원사

(가) 위치 : 농과대학 구내

(나) 사감 : 李 良 厚

(다) 설립목적 :

농과대학 여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함으로써 수학상의 편의를 도모하여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협동자치 정신을 함양하여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

(라) 입사자격 :

농대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서 기숙사 수용인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한다 단, 1학년은 전원 입사.

(마) 수용능력 : 54명

5. 함춘사

(가) 위치 : 의과대학 구내

(나) 사감 : 전임강사 李 笑 雨

(다) 설립목적 :

함춘사는 협동정신, 시간관념, 인간 이해력의 증진 및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성을 기를수 있는 단체훈련 등의 교육목적과 유사시의 긴급소집, 주. 야간의 임상실습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함에 있다.

(라) 입사자격 :

간호학과 3,4학년 전원

(마) 수용능력

본관 3층 2인용 35개(70)

본관 2층 2인용 9개(18) 1인용 사감 2개(2) 90명분.

6. 정영사

(가) 위치 : 의과대학 구내

(나) 사감 : 부교수 李 寬 容

(다) 설립목적 :

교내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 입사시켜 기숙생활을 통한 면학의 기풍조성과 더불어 협동정신 및 자치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국가에 유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입사자격 :

대학 2학년 이상의 남학생으로서 학업성적 평점이 3.5이상거나 당해대학 학년별 정원의 3/100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입사할 수 있다.

(마) 연혁 :

1968년 4월 8일 대통령하사금 1,000만원과 국고부담 1,600만원으로 3층건물을 완공, 동년 5월 16일 개사하였음.

(바) 수용능력 : 30실 120명이다.

7. 왕릉사

(가) 위치 : 의과대학구내

(나) 사감 : 부교수 李 寬 容

(다) 설립목적 :

모국에 유학하고 있는 교포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올바르게 신속한 모국의 이해와 수학상의 편의를 도모하여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협동 자치 정신을 함양하여 지도자적인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 연혁 :

1966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에 제일교포 왕득용씨의 회사 금 1,000만원으로 착공, 1967년 4월 20일 개사하였다.

(마) 수용능력 : 28실 60명이다.

(나) 기 타 기 관

대학신문사

서기 1952년 2월 4일 자로 부산 임시교사에서 창간된 “대학신문”은 당초 한국의 전 대학을 총 망라한 범 대학신문으로 출발하였으나, 각대학에서 제각기 독자적인 신문발행을 피하기에 이르러, 서울대학교의 신문으로 그 기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본지는 창간이후 71호까지 타브로이드 4면으로 발행하던 것을 72호(1974. 3. 16)부터는 대판 4면으로 증간하였고, 1972년 8월부터 8면 증간을 단행하여 현재는 1주 1회 총부수 약 4만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지역의 가장 권위 있는 대학신문으로 발전하여 국내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구독함은 물론 멀리 해외에서도 한국에 관한 자료 또는 한국어 교재 등으로 다루어 주문해오고 있다.

1975년 12월 1일 현재 949호의 지령을 쌓아올린 “대학신문”은 각 단과대학에서 뽑혀진 18명의 학생기자를 중심으로 1만 6천명 서울대학생의 생생한 모습을 해부, 대변하고 있으며 국내외 학계의 뉴스와 동향, 석학들의 학문연구업적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아카데미즘”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총장을 사장으로 하며, 주간(교수), 편집국, 업무부로 조직되어 있는 본신문사는 본교 권위교수 6명의 편집 자문을 받고 있다.

본지는 명실상부 학생들의, 학생을 위한, 대학신문으로서의 기능과 존재를 위하여 학생편집장을 중심으로한 학생기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대학신문”은 단순한 대학의 기관지로서가 아니라 엄정한 중립지, 생생한 뉴스지, 그리고 지성의 여론지로, 자랑스런 “대학의 기수”로 그 앞날을 다짐하고 있다

임원명단

직위	직명	성명
사장	총장	尹 天 柱
주간	교수	金 榮 國

학술연구재단

(1) 설립목적 :

교육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학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학술연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 :

본 재단은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 및 5인 이상의 이사와 2인이상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총장이, 부이사장은 부총장이 겸임하고 있다. 상임이사는 교무처장으로 보하며, 기타 이사와 감사는 본교 교직원 중에서 이사회회의 선임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3) 임원명단 :

직 위	직 명	성 명
이 사 장	총 장	尹 天 柱
부이사장	부 총 장	徐 明 源
상임이사	교 무 처 장	金 正 洙
이 사	대 학 원 장	韓 祐 肋
"	사회과학대학장	趙 淳
"	미술대학장	金 世 中
"	의과대학장	權 彝 赫
"	교 수	高 柄 翊
"	"	李 樑
"	사 무 국 장	金 道 淵
감 사	법 과 대 학 장	金 曾 漢
"	교 수	李 榮 基

(4) 사업내용 및 실적 :

가. 사업내용

- 1)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비 및 동 보조금 지급
- 2) 학술연구를 위한 장려비 지급

- 3) 학술논문 및 문화향상 발전을 위한 도서출판
- 4) 학술연구를 위한 외국인 초청 경비 지급
-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사업실적

1) 설립이후 연구비 지급현황

(단위 1,000원)

구분 \ 년도	68	69	70	71	72	73	74	계
건 수	24	55	64	55	30	29	27	284
금 액	3,400	11,800	16,550	16,440	13,270	15,785	15,430	92,675

2) 외국인 초청 경비 지급

1973년 9월 228,000원

(어학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에 미국인 언어학자 마폴리 교수 초청 경비보조)

3) 서울대 논문집 발간경비 보조

1975년 5월 854,000원 지급

(서울대학교 논문집 게재원고에 대한 원고료 예산 삭감으로 편당 채택료조로 10,000원씩과 논문 심사료 편당3,000원씩 보조하였음)

4) 75년도 연구비 지급상황

26명에 대한 1차분 6,500,000원

2차분 5,200,000원

기타연구비 2,500,000원

계 14,200,000원

출판부

(1) 목적

서울대학교 교수의 학술연구 및 교무행정의 지원과 출판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구

가. 이사장 및 부이사장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으로 서울대학교 총장과 부총장이 된다.

나. 이사회 및 감사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당연직이사 6명과 선임이사 3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 및 운영사항을 감사한다.

다. 업무이사

업무이사는 당연직이사인 상무이사 중에서 선임되며 집행기관인 출판실과 인쇄소를 지휘 감독한다.

라. 출판실장

출판실장은 서울대학교 교수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도서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하부기관으로서 업무과와 기획편집과를 두며, 자문기관으로 출판위원회를 둔다.

업무과는 도서의 판매, 계약, 섭외에 관한 사항을, 기획편집과는 출판의 기획, 조사연구, 출판조정 및 출판물의 편집 교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마. 인쇄소장

소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업무이사의 명을 받아 인쇄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은 서무과와 공무과를 둔다.

서무과는 서무, 회계, 주문, 계약, 물품관리 구매에 관한사항을, 공무과는 제본, 연판, 기계, 주소, 조판, 문선등 출판물 인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주요발간내용은 교내 교양교재, 학술서적, 통신대학교재 및 정기간행물 등을 인쇄한다.

(3) 임원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이 사 장	총 장	尹 天 柱
부이사장	부 총 장	徐 明 源

업무이사	교무처장	金正洙
이사	학생처장	丁炳焦
"	사무국장	金道淵
"	대학원장	韓 祐 勛
"	사회과학대학장	趙 淳
"	도서관장	李萬甲
"	교수	李庸俊
감사	경영대학장	吳相洛
"	행정대학원장	朴東緒
출판실장	교수	李東昇
인쇄소장		鄭榮煥

직원 의료보험

(1) 설립목적 :

본 조합은 서울대학교 직원 및 그 가족이 질병, 부상, 분만 및 장제를 당하였을 때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직원 및 그 가족의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본 조합의 조합원은 본교 직원인 조합원과 그 가족인 조합원으로서 구성되며, 본교 직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함께 본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본 조합은 총장, 교무처장, 사무국장,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장, 보건진료소장과 조합원인 피보험자가 호선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중요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표이사는 총장이 겸임하며, 상무이사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되고, 감사는 조합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또한 본 조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밑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위원회는 상무이사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

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호선위원 2인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3) 운영형태 :

가. 자산

본 조합의 자산은 조합원이 불입하는 보험료, 본교 및 본교 산하 각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정부보조금, 본 조합의 재산과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기타 각계의 찬조금 등이다.

나. 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로 구분

(2) 분만급여

(3) 장제급여

다. 치료비 지급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

(1) 직원조합원이 입원치료를 하였을 때에는 입원료 및 식대를 제외한 치료비의 90/100

(2) 직원조합원이 통원치료를 하였을 때에는 치료비의 80/100

(3) 가족조합원이 치료를 하였을 때에는 치료비의 50/100

(4) 분만급여와 장제급여는 의료보험법 법정금액을 급여한다.

학생의료보험

(1) 설립목적

학생으로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자에게 적절한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제도 개요

학생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치료비에 충당케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상부적(相扶的) 활동이다.

가. 재학생은 누구나 피보험자가 된다.

본교 학생은 매학기 등록을 필함으로써 당연히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즉 등록생이 납부하는 학생수혜경비중 일부(1인당 200원)가 자동적으로 의료보험료로 전입되며 이 보험료가 보험금의 지불 준비를 위한 기금으로 운용된다.

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험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치료에 한하여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했을때 심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는 보험금지급대상이 될수 있다.

(1) 본교 부속병원

(2) 본교 각 보건진료소

(3) 이사장이 지정한 의료 기관(수원 독립병원 및 최치과의원)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피보험자가 소정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치료비 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와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라. 보험금지급기준

보험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공상을 제외하고도 치료비 총액의 7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급 별	기 준	지 급 액 (최고한도액)
1 급	공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100,000원
2 급	위급한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5,000원
3 급	학업이수에 지장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5,000원
4 급	기타 질병의 치료와 치과보철을 한 경우	5,000원

마. 보험금의 범위

보험금은 질환 또는 부상의 치료에 따르는 수술료, 처치료, 검사료, 약값 및 입원료(식대를 포함하되 3동을 기준한다)등 모든 비용을지급범위로 하나, 다만 진단에 소요되는 수술료와 치과의 보철재료대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캠퍼스에 마련된 보건진료소에서 학생은 언제라도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매학기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바. 보험금 지급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없다.

- (1) 치료비 청구액이 1,000원미만일 때
- (2) 동일질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년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3) 선천적질환, 성형(成形)또는 기타 심사위원회가 보험금지급이 부당하다고 사정한 때

(3) 조직

학생의료 보험은 앞서 밝힌 설립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제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료보험 이사회”와 “치료비심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본부 학생처 후생과에서 그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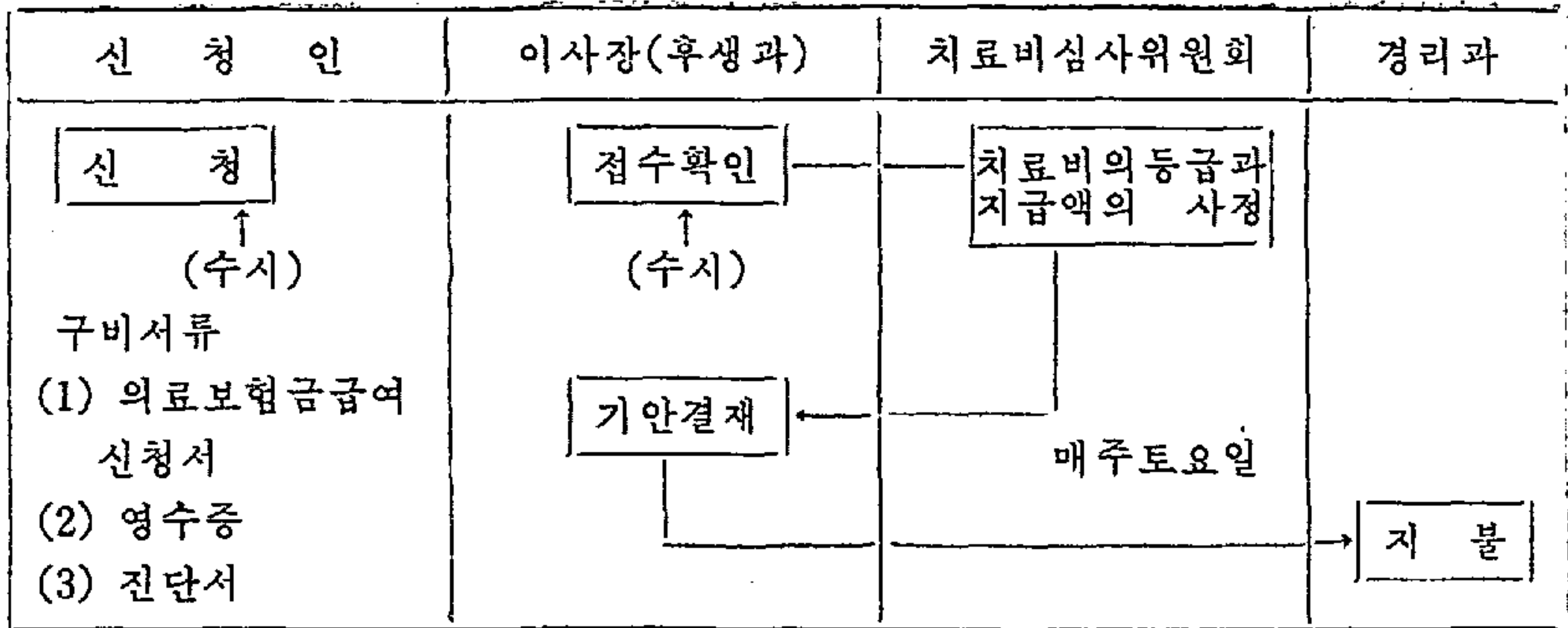
가. 이사회

본교 총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부이사장(부총장 겸무), 상무이사(학생처장겸무)를 포함한 7인의 이사(본교 교수중에서 총장이 위촉)로써 구성하며 운영정책과 방침, 예산과 결산, 제규정의 개폐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상무이사가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밖에 감사 2인(본교 교수중에서 총장이 위촉)이 지급사무를 감리한다.

나. 치료비 심사위원회

이사회 상무이사인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소속 교수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전문의와 본부 후생과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급액의 등급과 범위를 사정한다.

(4) 보험금 지급절차



(5) 보험금 지급실적

년 도	지 급 인 원	지 급 액
1972	436	2,543,940
1973	376	2,431,300
1974	409	3,616,550

(3) 부설대학 및 부속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 (1)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6의 1번지
- (2) 조직 : 학과 ; 가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
기구 ; 교학과, 방송교육과, 학사관리과

(3) 교직원 명단

직 위	직 명	성 명	전 공	학 위	점무기관
학 장 교 수	金 宗 西	金 宗 西	교 육 학	문학박사	사범대학
교 학 과 장 조 교 수	李 溶 傑	李 溶 傑	교 육 학	문학박사	"
방송교육과장 부 교 수	李 相 禧	李 相 禧	컴퓨터이 론 과 여 론		사회과학대학
가정학과장 전 임 강 사	李 順 媛	李 順 媛	피부구성학		가정대학
경영학과장 부 교 수	韓 羲 泳	韓 羲 泳	상 품 학	경영학박사	경영대학
농 학 과 장 교 수	宋 啓 源	宋 啓 源	축산가공학	농학박사	농과대학

초등교육과장	조	교수	李 烘 雨	교육학	교육학박사	사범대학
행정학과장	부	교수	吳 錫 泓	조직이론	행정학박사	행정대학원
		부	韓 荃 淑	철학	철학박사	자연과학대학
학사관리과장	서	기관	黃 仁 哲			
		행정사무관	任 正 彬			
		"	咸 錫 泰			
		"	李 倫 浩			
		"	金 俊 經			

(4) 개요 :

통신대학은 특수교육 방법으로 통신교재에 첨부된 학습지침서에 따라 학생 스스로 학습을 계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목별로 중요한 내용만을 방송을 통하여 특별지도하고, 학생들의 서면질의에 답해주며 과제 제출을 통한 첨삭지도로써 학생의 교육방향을 지도하고 있다.

협력학교별로 하기 및 동기 방학을 이용한 4주간(하기 2주, 동기 2주)의 출석 수업을 실시하여 강의 및 실험실습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통신대학출제의 종합시험과 협력학교별로의 필답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보충교육을 지도하고 이들을 통하여 학업성적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통신대학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 자신이 교육방식을 이해하고 스스로가 활동 계획을 세워서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방송통신 교육목적에 달성토록 하고 있다.

서울대학신문을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론적인 기본지식 및 전문분야의 기초실력을 넓혀주고 본래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를 하는 한편 제7면은 통신대학생에게 알려야 될 제반지시 및 주지사항을 게재하여 통지하여주고 있다.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9번지

(2) 교장 : 丁 海 洙

교 감 : 石 鎭 復

행정사무관 : 鄭 在 攝

(3) 학생정원 : 1,260명

교 원 : 46명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1)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9번지

(2) 교장 : 安 秉 績

교감 : 金 斗 鉉

(3) 학생정원 : 1,470명

교 원 : 42명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의 1

(2) 교장 : 李 豐 基

교감 : 曹 圭 三

(3) 학생정원 : 1,680명

교 원 : 45명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1)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의 1

(2) 교장 : 尹 錫 山

교감 : 丁 熙 鎭

(3) 학생정원 : 1,080명

교 원 25명

여 백

III. 설치령 및 학칙

여 백

1.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정	70.	4.	8.	대통령령	제4870호
개정	70.	6.	23.	〃	제5116호
	70.	12.	30.	〃	제5429호
	71.	6.	10.	〃	제5666호
	72.	7.	24.	〃	제6298호
	72.	12.	19.	〃	제6405호
	73.	1.	25.	〃	제6476호
	73.	4.	11.	〃	제6626호
	73.	9.	29.	〃	제6880호
	74.	1.	14.	〃	제7006호
	75.	2.	28.	〃	제7565호
	75.	9.	15.	〃	제7810호
	75.	12.	31.	〃	제7931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의 설치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문교부장관의 관할 아래 국립학교로서 서울대학교를 둔다.

제 3 조 (운영의 원칙)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치, 단과대학 및 학과) 서울대학교의 위치, 단과대학 및 학과는 별표 1과 같다.

제 5 조 (대학원) ① 교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의 목적을 더욱 깊이 추구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제1항의 대학원 이외에 학문을 심오·정치하게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별표2의 대학원

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부속시설) ① 서울대학교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도서관·박물관·보건진료소·전자계산소·교육매체제작소·생약연구소·어학연구소·학생생활연구소·재외국민교육연구소·경제연구소·법학연구소·실험동물사육장·학생기숙사

② 서울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사회과학대학에 신문연구소
2. 공과대학에 부속공장·생산기술연구소
3. 농과대학에 부속농장·부속연습림·부속동물사육장·부속수목원
4. 미술대학에 부속실습장
5. 약학대학에 부속약초원·부속실습약국
6. 의과대학에 부속병원·의학교육연수원
7. 치과대학에 부속병원
8. 수의과대학에 부속동물병원
9. 사범대학에 과학교육연구소

제 7 조 (부속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다음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속국민학교
2. 부속중학교
3. 부속여자중학교
4. 부속고등학교

제 8 조 (총장) ① 서울대학교에 총장 및 부총장 각 1인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서울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9 조 (학장·대학원장) ① 서울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

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④ 서울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2인 이내의 학장보를 둘 수 있으며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⑤ 학장보는 학장을 보좌(서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하며, 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학장보가 2인일 경우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부속시설의 장) ① 제6조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교수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7조의 부속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1조 (하부조직) ① 부총장 밑에 사무국·교무처·학생처·시설관리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각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며, 시설관리국장은 이사관, 부이사관, 공업기감 또는 공업부기감으로 보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12조 (사무국) ① 사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조달과 및 기획예산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는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관리·교내 우송제도의 운영·법령예규·비상계획·차량관리·기타 다른 처·국·실·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경리과는 세입·세출·금전출납·결산·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달과는 물품의 구매·조달·보관·처분·수리 및 재물 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 예산관리, 통계, 자체감사 및 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3조 (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무과는 대학, 대학원, 학과 및 과정의 설치와 폐지 공통시험의 관리 교과과정의 작성, 교원과 학생의 정원관리, 교원의 연구와 복무에 관한 관리, 도서관, 박물관, 전자계산소, 교육매체제작소, 실험동물사육장 및 부속연구소(학생생활연구소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과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학적과는 입학·등록·휴학·복학·전과·전학·학적조회·제적·졸업·학위수여·학적부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수업과는 수강신청·교과서관리·수업시간표 및 수업관리, 교외교육, 실습, 학점, 성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 (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 후생과 및 상담지도관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상담지도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학생과는 학생의 병사, 체육, 동원, 훈련, 통학, 신분 및 학생회관관리, 기타 처내 다른 과 및 상담지도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후생과는 학생의 보전, 후생, 장학금 급여 및 학생기숙사 기타 학생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상담지도관은 학생의 행사, 자치기구의 운영, 과외활동 개별, 집단지도와 상담, 취업지도, 상벌 및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시설관리국) ① 시설관리국에 관리과 및 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는 청소, 조경, 경비, 소방 및 국유재산관리와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운영과는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기기의 운영관리, 건축물 기타 설비의 영선과 이에 부대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서무과) ① 농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서무과를 두며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서무과는 보안·인사·관인관수·문서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치과대학 서무과장은 치과대학 부속병원 사무를 통할한다.

제17조 (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 참고서지과 및 규장각도서관리실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수서과는 서무·도서의 주문 및 접수·자료 교환·등록 및 제본과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정리과는 도서의 분류, 편목, 도서목록의 보관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열람과는 도서의 열람·대출·장서 및 서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참고서지과는 참고업무, 서지업무, 문헌복사, 문헌속보 및 도서전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규장각도서관리실은 규장각도서의 조사, 문헌해제, 정리 보관 및 공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분관을 둘 수 있으며 분관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18조 (의과대학부속병원) ①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서무과, 간호과 및 진료 각과와 약국을 두고, 병원장 밑에 건축사무소를 두되, 건축사무소에 기획과와 설비과를 둔다.

②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간호과장 및 진료 각과의 장은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하고, 약국장은 약무기정으로, 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설비과장은 기계기정 또는 전기기정으로 보하고, 건축사무소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되,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임용한다.

③ 서무과는 보안, 인사, 관인관수, 문서, 통계, 기본운영계획, 심사분석, 예산,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연금, 환자의 입·퇴원 및 급식관리, 진료비 조정 및 수납, 세입대사 기타 병원내 다른 과와 약국 및 건축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④ 간호과는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진료 각과는 환자의 진료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약국은 약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기획과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계약, 공사감독, 공사용 각종 자재관리 및 외자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축사무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⑧ 설비과는 전기, 기계 기타 내부설비에 관한 설계, 공사, 공사 감독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75.9.15. 대통령령 제7810호로 개정)

제19조 (건설본부) ① 서울대학교의 종합 건설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총장 밑에 건설본부를 두며 건설본부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건설본부에 건설국 및 건설통제실을 두며,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0조 (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행정과 건축과 토목과 및 설비과를 두며, 건설행정과장은 서기관으로, 건축과장은 건축기정으로, 토목과장은 토목기정으로, 설비과장은 기계 기정 또는 전기기정으로 보한다.

② 건설행정과는 서울대학교 시설확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련된 지출원인 행위, 물품구입, 공사계약, 매각 재산의 처분, 건설을 위한 재산취득,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건축과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건축공사의 설계감독 및 건축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토목과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토목 공사의 설계감독 및 토목자재의 관

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설비과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각종 부대설비공사의 설계, 감독 및 설비 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건설통제실) 건설통제실은 서울대학교 종합건설계획의 발전, 조정, 기본설계, 설계통제 및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 (기획위원회) ①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처장국장과 각 대학원장, 학장, 교수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 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3조 (공무원의 정원) 서울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간호학과 학생의 학비보조등) ①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② 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 이상의 학생은 재학 중 학생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사비, 식비와 피복비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④ 교육법시행령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은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생과 그 졸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0조 제1항 중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교육법 시행령 제152조중 “교사자격증”은 이를 “간호원 면허증 또는 조산원 면허증”으로 본다.

제25조 (학생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 학생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의 식비는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부 칙 (1975. 2. 28 대령제7565호)

- ① (시행령) 이 영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편되는 대학원대학 또는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유사 또는 신설되는 대학원 대학 또는 학과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학 또는 전과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사 또는 신설되는 대학원 대학 또는 학과에 전학 또는 전과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학학생 정원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75. 9. 15. 대령제7810호)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무소는 1977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그 기한 도래와 동시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시설, 설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기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75. 12. 31 대령제7931호)

- ① (시행일) 이 영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수의예과에 재학하는 학생 (휴학중인자를 포함한 다)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의 재학생으로 본다.

(별표 1)

위 치	대 학	학 과
서울특별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중어중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불어불문학과 · 독어독문학과 · 언어학과 · 국사학과 · 동양사학과 · 서양사학과 · 철학과 · 고고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 외교학과 · 경제학과 · 무역학과 · 사회학과 · 인류학과 · 심리학과 · 지리학과 · 사회사업학과

		· 신문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 계산통계학과 · 물리학과 · 천문학과 · 화학과 · 식물학과 · 동물학과 · 미생물학과 · 기상학과 · 지질학과 · 해양학과 · 의예과 · 치의예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 · 공업교육과 · 공업화학과 · 금속공학과 · 기계공학과 · 기계설계학과 · 산업공학과 · 섬유공학과 · 요업공학과 · 원자핵공학과 · 자원공학과 · 전기공학과 · 전자공학과 · 조선공학과 · 토목공학과 · 항공공학과 · 화학공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 국어교육과 · 외국어교육과 · 사회교육과 · 수학교육과 · 과학교육과 · 체육교육과
법과대학		법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 제약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 간호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 식품영양학과 · 의류학과
미술대학		회화과 · 조소과 · 응용미술과
음악대학		성악과 · 작곡과 · 기악과 · 국악과
경기도	농과대학	농학과 · 원예학과 · 임학과 · 임산가공학과 · 농화학 과 · 식품공학과 · 농경제학과 · 축산학과 · 잠사학과 농생물학과 · 농공학과 · 농가정학과 · 농업교육과 · 조경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별표 2)

위 치	대 학 원	학 과
서울특별시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환경조경학과

2. 서울대학교 학칙

규칙제 326호 75. 7. 25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교는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정리한 응용방법을 교수하고 연구개발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과 독창력을 함양하며 협동정신이 풍부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하고 연구와 사회의 각 전문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이 나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본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등 학위과정” 학사학위를 하기 위한 과정을 학사과정, 석사학위를 하기 위한 과정을 석사과정, 박사학위를 하기 위한 과정을 박사과정이라 부른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합하여 대학원 과정이라 부른다.
2. “기초과정” 학문계열별(이하 계열별)로 모집된 학생이 그 소속 학과가 결정되기 이전의 과정과 비계열로 모집된 학생의 교양교육을 위주로 하는 과정을 기초과정이라 부른다. 기초과정은 학사과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3. “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5조2항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대학원을 전문대학원이라 한다.
4. “전임교수” 본 학칙의 규정목적에 위해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전임교수라고 부른다.
5. “전공”한 학과내에서 학문의 분화로 인하여 별도로 세분된 전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 때문에 1인의 주임교수를 두고 학생의 소속과 교과과정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는 과정을 전공이라

한다.

6. “주전공과 부전공” 학생의 소속학과를 주전공이라 부르고 타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을 일정수 이상 체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부전공이라 부른다.

제 3 조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분류 및 설치) ① 서울대학교의 대학과 전문대학원은 기본학문 영역과 전문학문 영역으로 분류한다.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수요가 현저하게 크며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이 인정되며 그 학문의 성질과 경향, 교육기구 편성의 일반관례 및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와 장기계획등에 일치하거나 전임교수의 수, 학생의 수, 교육지원시설등의 일개학과의 수준을 초과하는 규모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 4 조 (학과의 구성과 임무) 학과는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며 교육과 연구에 일한다.

제 5 조 (학과의 설치) ① 학과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학문의 독립성이 널리 인정되며 그 학문의 성질과 경향, 교육기구 편성의 관례 사회적 수요 및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와 장기계획등에 일치하거나 전임교수의 수, 학생의 수, 교육지원시설 규모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의 학사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 동일명의 학과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 6 조 (학위과정의 설치) 학과에 학위과정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학문의 성질과 새로운 경향 및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등에 일치하거나 학과의 수, 학생의 수, 교육지원시설 규모 등이 적정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 7 조 (협동과정) 학문간의 상호교류하는 방법에 의하여 새로운 분야의 학위과정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학과나 대학(원)을 신설하지 않고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2개 이상의 기존학과 또는 대학(원)간의 협동과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 8 조 (전임교수의 소속) ① 서울대학교의 전임교수는 원칙적으로 전공에 따라 1개학과에 소속되며 학과를 통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소속

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소속학과 이외의 타학과 또는 대학(원)에 겸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수의 소속학과를 변경하거나 겸임을 명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겸임교수의 근무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 (학생의 소속) ① 서울대학교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1개 학과에 소속되며 학과를 통하여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소속된다.

② 계열에 의하여 모집된 학생과 비계열에 의하여 모집된 학생의 소속은 제17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협동과정의 학생은 그 협동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연계운영) 서울대학교 대학원과정은 대학원장이 각 대학장에게 위탁하여 학사과정과 종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과과정 운영의 원칙) 교과과정은 각 학과 단위에서 종적으로 각급 학위과정 간에 일관성 있게 통합조정되어야 하며, 횡적으로 각 학과와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간에 상호통합조정되어야 한다.

제12조 (대학간 학과간의 협조) 2개 이상의 학과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 간에 교과과정, 전임교수, 인사관리, 교육 예산관리, 사무실배치, 시설의 공동사용, 사무직원의 배치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연구소 간의 협조) 2개 이상의 각급연구소 간에 연구사업의 공동분담, 기금의적립, 연구원, 사무직원 및 시설의 공동사용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교 육 조 직

제14조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본교에는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기본학문대학으로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

학대학을 전문학문대학(원)으로서, 가정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을 둔다.

제15조 (학사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 ① 서울대학교 학사과정의학과, 협동과정, 전공의 학과별 소속 각학과의 대학별 소속 및 학사과정의 계열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사과정에 계열별로 입학된 학생의 학과배정기준은 총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 (대학원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 ①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의 학과, 협동과정, 전공의 학과별 소속 각학과의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별 소속과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학원과정에는 총장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항 이외의 전공을 들 수 있다.

제17조 (기초과정 학생의 소속) 기초과정 학생의 지도를 위한 대학별 소속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 (대학장등) ① 대학에 학장,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대학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사과정의 학생을 교육지도하며, 부속연구소, 부속시설, 부속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대학 부속병원 제외)의 운영을 관장한다.

③ 대학원장 및 전문대학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대학원 과정의 학생을 교육지도하며, 부속연구소의 운영을 관장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원장이 대학원 과정의 학생교육을 대학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학장이 교육지도를 관장한다.

④ 대학에 교무담당 학장보와 학생담당학장보를 두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⑤ 교무담당학장보는 입학, 졸업, 학적, 강좌 또는 교과과정, 학술연구, 수업, 학점, 학위, 기타 교무에 관한 사항을 학생담당학장보는 학생의 보

건, 후생, 상벌, 장학, 동원, 집회, 훈련, 병사와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⑥ 학장이 유고시에는 교무담당학장보가 대리한다.

제19조 (학과장) ①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대학의 학과장은 대학원의 당해 학과장을 겸보한다.

② 학과장은 소속교원을 통솔하고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에 속한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학장 또는 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학장 또는 원장은 학과장에게 소관 사무를 위임하여 전결시킬 수 있다.

제20조 (교수회) ① 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수로서 조직하되 의장은 학장 또는 원장이 된다.

③ 총장, 부총장은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교수회는 학장 또는 원장이 소집하되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와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교육 시설장비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교육상 중요한 사항.

제 3 장 부속시설 연구소 및 부속학교

제21조 (부속시설 및 연구소) ① 본교에는 도서관, 박물관, 보건진료소,

전자계산소, 교육매체제작소, 생약연구소, 어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재외국민교육연구소, 경제연구소, 법학연구소, 실험동물사육장, 학생기숙사등 부속시설과 연구소를 둔다.

② 다음의 대학과 도서관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다.

1. 사회과학대학 신문연구소
2. 공과대학 부속공장, 생산기술연구소
3. 농과대학 부속농장, 부속연습림, 부속동물사육장, 부속수목원,
4. 미술대학 부속실습장
5. 약학대학 부속약초원, 부속실습약국
6.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학교육연수원
7. 치과대학 부속병원
8.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9.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10. 도서관 의학계분관, 농학분관

③ 부속시설 및 연구소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속시설과 연구소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부속학교) ① 사범대학에 다음의 부속학교를 둔다.

1. 부속국민학교
2. 부속중학교
3. 부속여자중학교
4. 부속고등학교

② 부속학교의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관 리 조 직

제23조 (총장) 총장은 서울대학교의 모든 행정을 통할하고, 학생을 교육 지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통솔하고, 대외적으로 본교를 대표한다.

제24조 (부총장과 처, 국 조직) ① 총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 밑에 교무처, 학생처, 사무국, 시설관리국을 두며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국장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공업기감, 공업부기감으로 보한다,

③ 각처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처장을 둘 수 있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25조 (과조직) ① 교무처에 교무과, 학적과와 수업과를 둔다.

② 학생처에 학생과, 후생과와 상담지도관을 둔다.

③ 사무국에 총무과, 경리과, 조달과와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④ 시설관리국에 관리과와 운영과를 둔다.

⑤ 각 과장과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상담지도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각과, 담당관, 상담지도관 등의 사무분장은 서울대학교 설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건설본부) ① 서울대학교의 종합화건설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총장밑에 건설본부를 두며 건설본부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건설본부에 건설국 및 건설통제실을 두며,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실장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7조 (학장회) ① 서울대학교의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회를 둔다.

② 학장회는 총장, 부총장, 건설본부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대학원장, 각 학장, 각전문대학원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도서관장으로 조직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③ 학장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④ 학장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전문대학원 학과 전공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중요사항.
4. 고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와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학장회의 간사는 사무국 총무과장이 된다.

제28조 (기획위원회) ① 서울대학교의 중, 장기교육 및 시설종합계획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장이,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처장, 실장, 국장과 각 대학원장, 학장, 교수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기획위원회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대학교의 중, 장기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2. 서울대학교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서울대학교의 중, 장기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

⑤ 기획위원회의 간사는 사무국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제29조 (대학원위원회) ① 서울대학교 대학원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및 본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대학원과정의 교육에 관하여 특별한 식견을 갖고 학문의 각 분야별로 총장이 임명한 위원 약간명으로써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대학원위원회는 그가 위촉하는 사항을 심의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밑에 상임위원 약간명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상임위원과 분과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④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위심사의 제도와 절차에 관한 사항.
3. 대학원과정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의 제도에 관한 사항.
4. 박사학위와 명예박사 학위에 관한 의결.
5.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와 심사위원회 선정제도에 관한 사항.
6. 대학원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조제4항제4호에 관한 의결은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0조 (기초과정위원회) ① 서울대학교 학사과정의 기초과정의 학생들에 관한 교육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초과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과정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교무담당학장보와 기타 대학의 교무담당학장보 4인으로 구성하며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된다.

③ 기초과정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과정의 입학시험에 있어서의 계열의 분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공학과와 선정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3. 기초과정의 교양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초과정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사항.

④ 기초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계열의 분류방법의 변경과 전공학과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초과정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교무과장이 된다.

제31조 (교과과정위원회) ① 서울대학교의 각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위원회를 둔다.

② 교과과정위원회는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및 각 학문계열을 대표하는 본교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교과과정위원회는 그가 위촉하는 사항을 특별히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교과과정위원회는 그가 위임한 사항과 위원장이 위촉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연구조사시킬 목적으로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교과과정위원회는 각급 학위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하고 심의한다.

1. 교과과정 제정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과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과과정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교무과장이 된다.

제32조 (연구위원회) ① 서울대학교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과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인으로써 조직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2인의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사업비의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출판, 학술보고서, 논문집에 관한 사항.

6. 본교내 각급연구소 간의 상호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술연구 및 도서출판에 관한 중요사항과 총장이 위촉하는 사항.
- ④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연구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연구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교무과장이 된다.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33조 (서울대학교 평의회) ① 서울대학교에 평의원을 둔다.

- ② 평의원의 수는 27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결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되 호선하며 그 임기는 전항과 같다.
- ④ 평의회는 총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평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장학금 기타 제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⑥ 평의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되 본교 직원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제 6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34조 (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제35조 (수업일수) ① 학사과정의 매학년 수업일수는 2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학원 과정의 매학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36조 (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일요일, 1월 1일·2일·3일, 3.1절(3월 1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추수절(추석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개교기념일((10월 15일), 국제연합일(10월 24일), 성탄절((12월 25일).

하기휴가, 동기휴가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7 장 등록과 입학

제37조 (입학시기) 학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이내로 한다. 대학원과정의 입학시기는 매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 (학사과정 지원자격) 본교의 학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에 합격(해당시도)한자. 다만, 음악, 미술 및 체육 계열별 예비고사 합격자는 당해 예체능계 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제39조 (석사과정 지원자격) 본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초급대학 제외)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 다만,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진학허가를 얻은자에 한한다.
2. 외국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40조 (박사과정 지원자격) ① 국내외에서 정규의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총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41조 (대학원 과정에의 지원자격 학과의 제시) ① 대학원 과정에는 지원자의 출신학과 이외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동종계통의 학과 또는 전공의 과정에 한한다.

② 학과별로 지원할 수 있는 출신학과의 종류를 모집기에 공고한다.

③ 전항의 출신학과의 종류에는 부전공의 학과를 포함한다.

제42조 (선발고사) 입학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때는 선발고사를 행한다. 다만, 미달할 때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선발고사의 과목과 시일은 모집기에 이를 공고한다.

제43조 (학사편입학) ① 학사과정의 학사편입학은 3학년(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은 제1학년)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때에 실력을 고사한 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 제3학년 지원자는 편입대학 제2학년 수료자, 제1학년 지원자는 편입대학 예과과정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제44조 (재입학) ① 퇴학한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원학년 이하에 한하여 매학기초 등록기간 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④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기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45조 (입학지원 서류와 고사료)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하기 서류와 소정의 고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그 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학업성적표, 다만 부득이하여 제출치 못할 때는 그 이유를 구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최근 3개월 안에 촬영한 명함형 탈모 상반신 사진.

4. 건강진단서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고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서류외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입학지원자는 이력서 또는 재직증명서, 학위등록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석사과정 입학지원자로서 사범대학 졸업자는 문교부장관의 취학허가서 또는 진학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입학사정) 입학자의 선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정한다.

1. 필답고사 성적(단, 학사과정에 있어서는 예비고사성적 포함)
2. 구술고사상황
3. 신체검사상황
4. 학사과정에서는 출신고등학교 최종 2년간의 학업성적, 대학원과정에서는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의 학업성적

제47조 (입학허가자 구비서류) 입학이 허가된 자는 서약서 1통 및 호적초본 2통에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첨부 제출하여 지정기일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8조 (등록)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기일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9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등록기일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서 신청해야 한다.

② 일단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허가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수업년한, 재학년한, 교과, 학점 및 졸업

제50조 (수업년한, 재학년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중 인문사회계에 있어서는 기초과정 1년반, 전공과정 2년반으로, 자연계열, 교육계열 중 자연계, 가정계열, 농학계열, 비계열 중 간호학과, 농가정학과는 기초과정 1년 전공과정 3년으로 하고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수의학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2년,

전공과정 4년으로, 미술대학, 음악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있어서는 전공과정 4년으로 한다.

재학년한은 6년(예과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석사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이상 박사과정의 수업년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재학년한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년,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학사편입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년한은 잔여년한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 (교과목의 분류표시)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분류하고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한다.

제52조 (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체육과 군사훈련에 관한 것을 포함함)는 1학기간 32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53조 (과정 이수학점) ①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졸업논문제외) 이상으로 하되 교양과목은 42학점 이상으로 한다. 전공과목은 부전공이 없는 경우에는 인문사회계열에서는 54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에서는 63학점 이상으로 하고 부전공이 있는 경우에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주전공 39학점 이상, 부전공 21학점 이상, 자연과학계열에서는 주전공 48학점 이상, 부전공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부전공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과하며 교양과목은 해당예과에서 과하되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에서는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학과 학점 이외에 수업년한 중 연구학점으로 석사과정에서는 매학기 2학점씩, 박사과정에서는 매학기 4학점씩 부과시킬 수 있다.

③ 대학원 과정에서의 부전공의 범위와 이수학점의 조정에 관한 것은 총장이 따로 정한바에 의한다.

제54조 (학사과정의 교양과목) 학사과정의 교양과목은 국민윤리, 한국사, 체육, 교련 및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있게 선택하여 과한다.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교양과목은 각 계열에 속하는 제1학년, 제2학년에 걸쳐서 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작문, 체육 교련(R.O.T.C를 포함한다) 과목은 1학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 (교직과목) 사범대학과 공과대학의 공업교육과, 농과대학의 농업교육과에 교직과목을 둔다.

제56조 (교과과정의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57조 (타학과 교과목의 이수) 다른 대학(원) 또는 학과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수업시간표)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전에 총장이 결정하여 공포한다.

제59조 (교과목번호) 각 교과목번호에 대해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0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사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최소 15학점 이상 19학점까지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생의 사정에 의하여 15학점 미만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1학점까지 초과하여 취득케 할 수 있다.

1.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2.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B. 이상일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③ 대학원 과정은 각과정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61조 (과정간의 학점취득교류)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의 제4학년, 석사과정의 제2학년 학생은 차상급과정의 제1학년의 교과목을 취득할 수 있다.

제62조 (선수과목) ①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하급과목

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과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학생이 그 과정에 입학 후 하급과정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3조 (학사과정의 학점별 학년) 학사과정의 학점에 의한 학년별은 다음과 같다.

1학년 36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2학년 37학점 이상 72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3학년 73학점 이상 108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4학년 109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을 때

제64조 (졸업) ① 학사과정에서 규정된 수업년한의 재학과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1)의 졸업증서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사과정에서 규정된 수업년한의 재학과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박사과정에서 규정된 수업년한의 재학과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졸업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65조 (학위수여 규정예의 위임) 서울대학교가 수여하는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의 종류와 해당 학과 및 석사,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과 심사 및 어학시험에 관한 것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예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시험과 성적

제66조 (시험과 출석) 매학기 말에 각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행한다. 다만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그 학기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 결석한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67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평소의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조정한다.

<u>성 적</u>	<u>평 점</u>
A ⁺	4.3
A ^o	4.0
A ₋	3.7
B ⁺	3.3
B ^o	3.0
B ₋	2.7
C ⁺	2.3
C ^o	2.0
C ₋	1.7
D ⁺	1.3
D ^o	1.0
D ₋	0.7
F	0
S	없음
U	없음

②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합격여부만 구분하여 S(급) 또는 U(낙)로 표기한다.

③ 성적조정이 미완된 교과목에는 잠정적으로 I(미완)의 성적을 부여한다.

제68조 (취득학점의 계산 및 평점평균) ① 학과사정에 있어서는 “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여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 평균 및 전공과목(부전공이 있을 경우에는 부전공을 포함)의 성적 평점 평균이 각각 1.7 (C₋)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학원 과정에 있어서는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계산하되 학위논문 제출하기 위하여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및 전공과목

(부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부전공포함)의 성적 평점평균이 각각 3.0(B⁺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미달하여 과정의 성질상 전 교과목 또는 일부 교과목을 재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급을 시킬 수 있다. 그 기준과 유급제도를 적용할 학과 또는 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일단 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은 개강 후 3개월 이내에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⑤ 학사과정의 “D⁺” 이하의 성적은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되 그 교과목을 재수케 할 수 있다. 다만, 재수성적은 “B⁺” 이하로 하고 그 전 성적은 취득학점 평점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9조 (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자는 그 교과목의 시험전에 담당교수를 거쳐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자의 성적은 잠정적으로 I로 하며 그뒤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제10장 휴학, 복학, 제적, 복적 및 퇴학

제70조 (휴학, 제적, 복적)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학사과정에서는 4학기, 석사과정에서는 3학기, 박사과정에서는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에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병역복무를 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등록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자는 그 학기 납입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등록기간 중 휴학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제적된다. 다만, 분항에 의한 제적은 그 정상에 따라 다음 학기초등록기간 중에 복적을 허가할 수 있다. 복적은 1회에 한한다.

제71조 (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학기초 등록기간중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자가 그학기 등록기간내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2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신하여 학장 또는 전문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3조 (이중학적의 금지)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1장 학생활동

제74조 (학도호국단설치) 학풍을 쇄신하고 정신전력을 배양하며, 배우면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학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학도호국단(이하 “학도호국단”이라 한다)을 두며, 학도호국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 (단비) 학도호국단의 단원은 소정의 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조직승인) 학도호국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도호국단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7조 (학생지도)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학(원)장은 매학년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8조 (금지활동)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79조 (활동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항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나.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다.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라.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80조 (간행물) ① 학생단체가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지도위원)의 동의와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 또는 학(원)장이 위촉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81조 (포상대상자) 학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또는 특히 미행이 있어 표창할만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82조 (학년 우등생)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매학년 성적의 평점 평균이 3.4 이상인 자에게 다음 학년초에 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공고한다. 다만 I의 성적이 포함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3조 (졸업우등생) ① 학사과정의 졸업대상자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 졸업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총장이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

<u>구</u>	<u>분</u>	<u>평</u>	<u>점</u>
최우등급(Summa Cum Laude)		3.9	이상
준최우등급(Magna Cum Laude)		3.6	이상
우등급(Cum Laude)		3.4	이상

②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4조 (징계) ① 총장 또는 학(원)장은 학생이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 수 있다.

③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으로 한다.

④ 제명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하되 총장명으로 한다

1. 제86조에 의한 제명해당자.
2.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3.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⑤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명된 자(타교에서 제명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85조 (학사경고)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C-)에 미달되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자에게 과하되 다음학기 개강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지도교수에게 통고하여 이 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성적 I를 받은자에 대한 학사경고는 성적의 확정결과에 따라 학기도 중에도 과할 수 있다.

③ 전항의 학생에게는 지도교수 또는 학장이 수강학점수, 결석회수 및 과외활동에 제한을 과할 수 있다.

④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C-) 이상이 되고 전체 이수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1.7(C-) 이상이 될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해제한다.

제86조 (학사정학과 제명)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기간 중 학업성적이 극히 열등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학 또는 제명한다.

1. 한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1.0(D_o) 미달인 자는 다음 1학기간의 유
기정학
2. 전호에 해당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다시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성적을
취득한자는 제명
3. 학사경고를 받은자로서 재학기간 중 한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1.0
(D_o) 미달인자는 제명
4. 재학기간 중 이미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로서 다시 학사경고에 해
당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는 제명

제13장 납 입 금

제87조 (납입금 납부의무)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에 수업료,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 (복학자의 납입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 (결석 또는 정학과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0조 (수업료 면제)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납입이 불가능한 자는 2할에 해당하는 학생수의 한도내에서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농촌지도 교육 전공 제외. 이하같다)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사과정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1조 (실험실습비) 실험과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정도로 이를 따로 징수한다.

제92조 (납입금의 반환금지) 이미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납입 이외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장 장학, 학비보조와 졸업후의 복무의무

제93조 (장학금) 서울대학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서울대학교 장학금 급여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급여할 수 있다

제94조 (학비보조금의 급여대상)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사과정 학생에게는 교육법 제159조에 의한 학비보조금을 급여한다.

제95조 (학비보조금 급여중지)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사과정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학기중 학비보조금의 급여를 중지한다.

제96조 (학비보조금의 상환)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사과정의 학생으로서 퇴학하는자는 이미 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7조 (졸업 후 복무의무) ① 사범대학,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농과대학 농업교육과의 학사과정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에 종사할 의무가 있으며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학사과정 졸업자는 수업년한에 해당하는 기간,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에 의한 복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급여된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제15장 위탁생, 공개강좌, 특별연구생, 청강생,
야간수업, 계절수업 및 외국인 학생

제98조 (위탁생) ① 정부 각 부 재직자로서 그 소속 장관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에 한하여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의라도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되 소정의 시험을 거쳐 수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위탁생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99조 (위탁생의 제적) 위탁생이 수학 중 그 직을 사하였을 때는 자연히 제적된다.

제100조 (공개강좌) 본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의 수득을 필요로 하는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101조 (특별연구생) 각급 학위과정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교 전임교수가 아닌자를 특별연구생으로 하여 전적으로 연구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연구실적 증명서) 특별연구생에 대하여 그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별지서식(2)에 의하여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3조 (야간수업)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의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그 수업을 야간에 시행할 수 있다.

제104조 (계절수업)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제105조 (세칙에의 위임) 공개강좌 및 계절수업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06조 (청강생) ① 각급 학위과정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교과목에 대한 청강생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강생은 외국인에 한한다.

③ 청강생의 등록, 자격, 증명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07조 (외국인학생)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원하는 자에게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의라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8조 (본 학칙의 준용) 위탁생 또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보건대학원, 신문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의 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④ 본 학칙 시행당시 문리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학생의 소속 학과가 귀속되는 대학에 소속시킨다.

⑤ 본 학칙 시행당시 교양과정부에 재학중인 학생은 학칙의 별표 3에 의하여 소속시킨다.

⑥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폐지 또는 개편되는 대학(원) 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의 소속은 별표 4와 같다.

⑦ 197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 본 학칙 시행당시 75.2.28. 현재 교육대학원에 재적 또는 입학이 결정된 학생은 종전 교육대학원의 해당 학위과정으로 졸업할 수 있다.

별표 1

학사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

	학 과	입 학 정 원	계 열 별
인 문 대 학	국어국문학과	20	인 문 계 열 185
	중어중문학과	10	
	영어영문학과	20	
	불어불문학과	20	
	독어독문학과	20	
	언어학과	10	
	국사학과	15	
	동양사학과	10	
	서양사학과	10	
	철 학 과		
	철학전공	20	
	종교학전공	10	
	미학전공	10	
	고고학과	10	
사 회 과 학 대 학	정치학과	20	사 회 계 열 530
	외교학과	20	
	경제학과	75	
	무역학과	40	
	사회학과	20	
	인류학과	10	
	심리학과	20	
	지리학과	20	
	사회사업학과	10	
	신문학과	15	
	경 영 대 학	경영학과	
법 과 대 학	법 학 과	160	
농 과 대 학	농경제학과	20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20	자연계열 1,075
	계산통계학과	15	
	물리학과	30	
	천문학과	10	
	화학과	30	
	식물학과	15	
	동물학과	15	
	미생물학과	20	
	기상학과	10	
	지질학과	20	
	해양학과	20	
공과대학	건축학과	40	
	공업교육과 (건축전공 기계전공 구조전공 용접판금전공 전기전공 전자전공 자동차전공)	120	
	공업화학과	35	
	금속공학과	50	
	기계공학과	50	
	기계설계학과	50	
	산업공학과	30	
	섬유공학과	40	
	요업공학과	30	
	원자핵공학과	30	
	자원공학과	40	
	전기공학과	60	
	전자공학과	50	
	조선공학과	50	
	토목공학과	40	
	항공공학과	25	
	화학공학과	50	
	약학대학	약학과	40
		제약학과	40

사범대학	교육학과	20인문사회계 210	교육계열 370
	국어교육과	40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40	
	불어전공	20	
	독어전공	20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20	
	역사전공	20	
	지리전공	30	
	수학교육과	40 자연계 160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30	
	화학전공	30	
생물전공	30		
지학전공	30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30	가정계열 90
	식품영양학과	30	
	의류학과	30	
농과대학	농학과	20	농학계열 310
	원예학과	20	
	임학과	20	
	임산가공학과	15	
	농화학과	20	
	식품공학과	20	
	축산학과	25	
	잠사학과	20	
	농생물학과		
	식품병리전공	10	
	농업곤충전공	10	
	농공학과		
	농업토목전공	20	
	농업기계전공	20	
	농업교육과		
	농업교육전공	30	
	농촌지도교육전공	30	
조경학과	30		

자연과학대학	의예과 치예과	160 100	비계열
의과대학	의학과	(160)	
	간호학과	80	비계열
치과대학	치위학과	(100)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50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20	비계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40	비계열
미술대학	회화과	25	비계열 70
	조소과	15	
	응용미술과	30	
	상업미술전공		
	공예미술전공		
	공업미술전공		
음악대학	성악과	30	비계열 130
	작곡과	15	
	기악과	60	
	국악과	25	
	합 계	3,210	(예과260포함)

별표 2

대학원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

	석사과정	입학정원	박사과정	입학정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언어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철학과 (철학전공 종교학전공 미학전공) 고고학과	90	서양사학과 철학과 (철학전공 종교학전공)	25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사업학과 신문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농경제학과	254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농경제학과	25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계산학전공 통계학전공) 물리학과 천문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미생물학과 기상학과 지질학과 해양학과 약학과 건축학과 공업교육과 공업화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지질학과 약학과 건축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공학과 섬유공학과 요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 토목공학과 항공공학과 화학공학과	302	토목공학과 항공공학과 화학공학과	70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교육심리전공 교육과정전공포 함)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상업교육전공)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불어전공 독어전공)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역사전공 지리전공)	70	교육학과	3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물전공)			

	지학전공)	20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25		
	농학과 원예학과 임학과 농화학과 축산학과 잠사학과 농생물학과 농공학과 농업교육과	54	농학과 임학과 농화학과 축산학과 잠사학과 농생물학과 농공학과	17
	의학과 간호학과	90	의학과	22
	치의학과	40	치의학과	13
	수의학과	10	수의학과	3
	농가정학과	5		
	체육교육과	20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18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32		
보 대 학 원	보건학과	60		
행 대 학 원	행정학과	84		
환 대 학 원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50		
	합 계	1,224		178

별표 3

기초과정 학생의 대학별 소속

소 속 대 학	입학시의 계열분류
인문대학	인문계열 교육계열중 인문사회계
사회과학대학	사회계열
자연과학대학	자연계열 교육계열 자연계 가정계열 농학계열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농가정학과, 간호학과
미술대학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과
음악대학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별표 4

폐지, 개편되는 대학(원) 및 학과재적생의 소속

개정전 대학(원) 및 학과		개정된 대학(원) 및 학과	
대학 (원)	학 과 (전공)	대학 (원)	학 과 (전공)
신문대학원	신문학과	대학원	신문학과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대학원	경영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 상업교육, 미술교육, 음악교육, 전공)	대 학 원	교육학과 협동과정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과정, 초등교육 전공)	대 학 원	교육학과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대 학 원	국어교육과
	교육학과 (영어교육, 독어교육 불어교육전공)	대 학 원	외국어교육과
	교육학과 (일반사회, 역사, 지 리전공)	대 학 원	사회교육과
	교육학과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학교육 전공)	대 학 원	과학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대 학 원	수학교육과
	교육학과 (체육교육전공)	대 학 원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공업교육전공)	대 학 원	공업교육과
	교육학과 (농업교육전공)	대 학 원	농업교육과
공 과 대 학	재료공학과	공 과 대 학	요업공학과 (재료공학과로 졸업 가능)
대 학 원	재료공학과	대 학 원	요업공학과 (재료공학과로 졸업 가능)
공 과 대 학	원자력공학과	공 과 대 학	원자핵공학과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대학원	조경학과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상과대학	경제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상과대학	무역학과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상과대학	경영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법과대학	행정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대학원	행정학과	대학원	법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
대학원	사학과	대학원	그 전공에 따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에 소속
대학원	조선항공학과	대학원	그 전공에 따라 조선항공학과와 항공공학과에 소속
대학원	가정학과	대학원	그 전공에 따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에 소속
대학원	종교학과	대학원	철학과의 종교학전공
대학원	미학과	대학원	철학과의 미학전공
농과대학	수의학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대학원	사회학과(신문학전공)	대학원	신문학과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3,4년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대학원	화학공학과	대학원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대학원	핵공학과	대학원	원자핵공학과, 물리학과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	인문대학	고고학과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대학원	고고인류학과	대학원	고고학과, 인류학과
문리과대학	천문기상학과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 기상학과
대학원	천문기상학과	대학원	천문학과, 기상학과

공과대학	응용수학과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공과대학	타학과(공대응용 수학과 졸업가능, 공대 타학과를 택한 경우 당해 교과과정에 따라야 한다)
대학원	전자공학과 (응용수학전공)	대학원	전자공학과,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공과대학	응용물리학과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공과대학	타학과(공과대학 응용물리학과로 졸업가능, 공과대학 타학과를 택한 경우 당해 교과과정에 따라야 한다)
공과대학	응용화학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공과대학	타학과(공대응용 화학과로 졸업가능, 공대 타학과를 택한 경우 당해 교과과정에 따라야 한다)
대학원	화학공학과 (응용화학전공)	대학원	화학공학과, 화학과 공업화학과

별지서식 (1)

졸업증명서

본 적

이이는 본교 대학 학과(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시험에 합격하여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성 명
서 기 년 월 일생

서 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 대학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서 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인

별지서식 (2)

연구실적증명서

본 적

현주소

이이는 본교대학(원) 학과(연구소)의 특별연구생으로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연구분야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함.

(학위) 성 명
서 기 년 월 일생

서 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연구소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명서를 수여함.

서 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인)

여 백

IV. 학 위

여 백

1.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서울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 학위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석사학위

제 2 조 석사학위는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그 제출한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하되 그 종별은 전공학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문학석사

국어국문학과, 중국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언어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고고인류학과, 사회학과, 사회사업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심리학과, 미학과, 교육학과

2. 정치학석사

정치학과, 외교학과

3. 법학석사

법학과, 행정학과

4. 상학석사

상학과, 무역학과

5. 경제학석사

경제학과

6.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7. 이학석사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지질학과, 천문기상학과

8. 공학석사

건축공학과, 자원공학과, 금속공학과, 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조선항공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핵공학과

9. 농학석사

농학과, 임학과, 농공학과, 축산학과, 농화학과, 농경제학과, 농생물학과, 감사학과

10. 의학석사

의학과

11. 치의학석사

치의학과

12. 수의학석사

수의학과

13. 약학석사

약학과

14. 미술학석사

회화과, 조소과, 응용미술학과

15. 음악석사

성악과, 작곡과, 기악과, 국악과

16. 가정학석사

가정학과

17. 체육학석사

체육학과

18. 간호학석사

간호학과

제 3 조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1)에 의한 학위증으로써 행한다.

제 4 조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 5 조 석사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독, 불 3개 국어 중 일종으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

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 2 조의 논문심사와 구술고사는 대학원장이 교수 중에서 지정하는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이 행한다.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주심) 1인을 두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그 합격을 결정한다.

대학원장이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의 이수학과 또는 해당 전공과에 가까운 학과 교수 중에서 지정한다.

제 3 장 박사학위

제 1 절 총 칙

제 7 조 ①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종의 외국어 시험과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동 전공계의 본 대학교 교수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전 1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

②박사학위는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제 8 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본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학술연구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라야 한다.

1. 대학졸업자(4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교육관계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7년 이상 초급대학졸업자(교육대학졸업자, 구제 2년제 사범대학 졸업자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0년 이상 초급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자.

2. 대학(4년제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초급대학(교육대학, 전문학교 및 구제 2년제 사범대학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전임으로 교육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국어 시험과 예비시험 실시 당시에 현직에 있는 자.

3. 외국에서 제 1호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국내에서의 학력과 경력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합산한다.

제 9 조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박사학위의 증별은 다음의 11종으로 한다.
공학박사, 농학박사, 문학박사, 철학박사, 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박사, 정치학박사, 의학박사, 약학박사, 수의학박사

제10조 박사학위논문은 그 심사요구서에 소정의 심사료와 이력서 10통을 첨부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논문의 용어에 관하여는 제 5 조를 준용한다.

제 2 절 논문의 심사

제12조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개월 이내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부하여 접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제출 자격의 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접수하지 않기로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10조의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려한다.

제14조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을 접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 대학교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심사하게 하되 위원장(주심), 부위원장(부심) 각 1인을 둔다.

제15조 주심은 심사개시후 6개월 이내에 심사요지와 심사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의 통과는 심사위원 5분지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대학원위원회는 박사학위논문(주논문)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논문 또는 부분,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3 절 구술고사와 예비시험 및 외국어시험

제17조 외국어시험과 예비시험은 논문접수에 앞서 이를 시행한다. 외국어 시험과 예비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논문접수를 할 수 없다.

제18조 구술고사는 논문심사위원이 시행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구술고사는 담당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시험에 있어 외국어는 논문, 저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이며 예비시험은 전공분야와 이에 부수되는 분야의 학식에 관한 종합평가이다. 전항의 시험은 2종의 외국어시험과 2과목 이상의 예비시험으로 하되 1종에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시행하며 출제위원은 본 대학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험과목에 있어 외국어 중 1종은 영어로 한다.

예비시험은 기초 공통과목에서 1과목 이상, 전공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서 1과목 이상으로 한다.

시험은 년 2회 실시하되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하고 일부 과목만 합격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년간(2회의 시험기간) 그 합격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구술고사와 예비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결과는 논문심사 결과와 함께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학위의 수여와 취소

제21조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박사학위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심사요지와 구술고사와 예비시험 및 외국어시험의 시행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수여하되 별지 서식(2) 또는 (3)의 학위기로써 행한다.

제23조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을 때 또는 총장이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4조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학위수여를 취소하였을 때에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인쇄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또는 총장이 그 공표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 4 장 명예박사학위

제26조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7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지서식(4)에 의한 학위로서 행한다.

부 칙

제28조 본 규정은 195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본 규정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196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196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본 규정은 196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3조 본 개정규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본 규정은 196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본 규정은 196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196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이 개정규정은 1968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사법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사학위를 가지고 사법대학원을 수료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학

위기는 제33조에 불구하고 별지 서식(1-1)과 같다.

②전항의 학위수여를 위한 논문제출 기한은 1975년 11월 30일까지로 하되
군복무 의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7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0조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7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72
년 3월 1일 이후 본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
실시한 시험은 본 개정규정에 의거 실시한 시험으로 본다.

②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8조는 1975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
다.

별지서식 (1)

석	제	호	학	위	기
본적					
성명					
서기		년	월	일생	
이 이는 본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 하여 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 학석 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별지서식 (2)

박 제 호	학 위 기
본적	
성명	
서기	년 월 일
이 이는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 ○○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별지서식 (3)

박 제 호	학 위 기
본적	
성명	
서기	년 월 일
이 이는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별지서식 (4)

명박 제	호	학	위	기
본적				
(국)				
성명				
	서기	년	월	일
이 분은 ○○함으로써(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				
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				
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별지서식 (1-1)

석 제	호	학	위	기
본적				
성명				
	서기	년	월	일
이 이는 본교 사범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을 제				
출하여 대학원의 심사에 통과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법학 석				
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법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 ○ ○ 직인				

2.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번호	학위명	국	적	성명	직	위	수여년월일
1	법학	미	국	더그라스. 이. 맥아더	극동군사령관		1948. 8. 10.
2	"	"	"	장. 알. 하-지	주한 미군사령관		1948. 8. 10.
3	"	한	국	이승만	대통령		1949. 7. 15.
4	"	미	국	필립. 씨. 제섭	콜럼비아대 교수		1950. 1. 13.
5	"	"	"	존. 포스터. 델레스	미 국무장관		1950. 6. 23.
6	"	"	"	잔. 제이. 무츠	초대주한 미대사		1952. 9. 6.
7	"	"	"	제임스. 에이. 벤플리트	주한미제 8군사령관		1953. 1. 31.
8	"	중화	민국	주가화	총통수석고문		1955. 5. 24.
9	"	"	"	전유	대북사대교수		1955. 5. 24.
10	"	비울빈	공화국	맥시미노. 지. 부에노	한국통일재건위원		1956. 2. 21.
11	"	미	국	씨. 타일리. 우드	유엔경제조정관		1956. 7. 24.
12	"	중화	민국	염공초	학자		1956. 8. 16.
13	"	미	국	프레데릭. 부라운 해리스	미 상원의원		1956. 8. 31.
14	"	"	"	딘. 이. 헤스	국방성특별고문		1956. 10. 4.
15	"	"	"	막스웰. 디. 테일러	미 8군사령관		1957. 3. 22.
16	"	월	남	고. 딘. 더엠	월남대통령		1957. 9. 21.
17	"	미	국	오발. 엘. 푸리맨	미네소타주지사		1957. 11. 10.
18	문학	"	"	마커스. 파블류. 슈바카	주한미대사문경관		1958. 6. 9.
19	법학	"	"	존. 비. 콜터	윤크라단장		1958. 9. 12.
20	"	"	"	윌리엄. 이. 윈	유엔경제조정관		1959. 3. 16.

번 호	학위명	국	적	성	명	직	위	수여년월일
21	법 학	토	이	레 휘. 코랄탄		더키수상		1959. 9. 16.
22	"	미	국	월터. 씨. 다우링		주한 미국대사		1959. 10. 1.
23	"	시	독	리할트. 헬쓰		주한서독대사		1960. 9. 17.
24	"	비	빈	펠릭스베트로. 엠. 세라노		비올빈외상		1960. 11. 11.
25	"	중	화	왕동원		주한중국대사		1961. 2. 6.
26	"	미	민	월라드. 이. 가슬린		피비디대학수석교문		1961. 2. 14.
27	"		"	월터 페트릭 매카나기		주한 미국대사		1961. 3. 28.
28	"		"	카터. 비. 맥루더		유엔군 사령관		1961. 6. 28.
29	"		"	아더 이. 슈나이더		서울대 I.C.A. 수석교문		1961. 7. 8.
30	"		"	레이몬드. 타이선. 모이어		유شم처장		1961. 8. 24.
31	"	태	국	타날. 코만		태국외상		1961. 9. 15.
32	문 학	한	국	이희승		서울대 대학원 원장		1961. 9. 30.
33	농 학		"	조백현		서울대 농대 교수		1961. 9. 30.
34	법 학	미	국	네이단. 엠. 푸시		하바드대 교수		1961. 10. 10.
35	"	월	남	트랑-빈-레		월남하원의장		1962. 7. 16.
36	이 학	미	국	헨리 아이링		미국유타대 총장		1963. 6. 7.
37	법 학	독	공	오이겐. 젤스텐 마이어		독일대 통령		1964. 5. 28.
38	"	중	화	장 군		중국총통비서실장		1964. 8. 24.
39	이 학	한	민	이태규		미국유타대 교수		1964. 9. 22.
40	법 학	인	도	비네이 란진 센		F.A.O. 사무총장		1964. 11. 5.

번호	학위명	국적	성명	직명	직	수여년월일
41	학법	독일연방공화국	칼. 뵙거		독일특명전권대사	1964. 10. 26.
42	"	중화민국	엔차간		중국행정원장	1964. 12. 2.
43	"	미국	토마스. 제이. 다드		미 상원의원	1965. 4. 7.
44	문학	마레이시아	통쿠압돌 라만 푸트라알-하		말레이시아국무총리	1965. 4. 30.
45	학법	부라질합중국	말코 리노 고메스 칸다우		W.H.O. 사무총장	1965. 9. 15.
46	이학	미국	해롤드. 제퍼슨. 쿠리지		미 학술원 회원	1965. 11. 4.
47	학법	"	오스카. 로이. 쇼크		한미재단부총재	1966. 5. 6.
48	"	"	새뮤얼. 더. 버거		미 국무성극동담당차관보	1966. 6. 4.
49	"	"	헤이든. 윌리엄즈		아시아재단총재	1966. 10. 15.
50	의학	"	레오나드 다블리. 히튼		미 육군 의무감	1966. 11. 16.
51	학법	미국	조지 윌드맨 불		미 경제사절단장	1967. 3. 21.
52	"	이탈리아	타눔 키티카 초론		태국 수상	1967. 4. 4.
53	"	오스트렐리아	해롤드 에드워. 드 홀트		호주 수상	1967. 4. 7.
54	이학법	독일연방공화국	페오도르 뤼넨		문헌대 교수	1967. 8. 30.
55	학법	미국	얼 워렌		미 대법원장	1967. 9. 14.
56	이학	"	로버트 호프스텝터		미 스탠포드대교수	1967. 9. 20.
57	학법	타이	프라팃 자르싸티엔		태국 부수상겸내무장관	1968. 3. 22.
58	"	이티피	하이레세 라세 1세		이티피아 황제	1968. 5. 20.
59	농학	뉴지일랜드	키이스 제이 호리요크		뉴지일랜드 수상	1968. 10. 19.
60	학법	미국	칼 버트 앨버트		미 하원의장	1969. 3. 6.

번 호	학위명	국	적	성 명	명	직	위	수여년월일
61	법 학	말	에	아	두안꾸 이스마일 나시루딘 샤 이 비너알-마홈 술탄 자이날 아비딘	말헤지아국왕		1969. 4. 30.
62	"	월	남	국	구엔 반 티유	월남 대통령		1969. 5. 28.
63	이 학	미	국	국	한스 에이. 베베	미국 핵물리학자		1969. 10. 20.
64	농 학	니	제	화	더오리하마니	니제르공화국대통령		1969. 10. 28.
65	법 학	미	국	국	존 제이 스파크맨	미 상원의원		1969. 11. 10.
66	수의학	카	나	다	후랭크 더블류 스크펠드	수의학자		1970. 3. 14.
67	법 학	미	국	국	바브 로울즈 도르시	미 걸프사 사장		1970. 5. 30.
68	"	엘	살	바	피델. 산체스. 엘난데스	엘살바돌대통령		1970. 9. 30.
69	"	영	국	국	월 후레드 켄크스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		1971. 9. 29.
70	농 학	미	국	국	헨리. 엠. 비첵	국제미작연구소품종개발과장		1971. 11. 18.
71	"	미	"	"	헤르만. 엠. 사우스위스	미국농산물유통자문위원		1973. 3. 14.
72	이 학	"	"	"	도날드. 프레데릭. 호너	브라운대 총장		1973. 8. 1.
73	법 학	비	울	빈	칼로스. 피. 로무로	비울빈의상		1974. 8. 6.
74	문 학	미	국	국	W.M. 윌리엄즈	A.I.D. 한국수석교육자문관교육행정가		1974. 11. 2.
75	경제학	서	독	국	Schmitt Voken hausen	서독 하원부의장		1975. 1. 4.
76	법 학	이	란	왕	마누체르 에그발	이란석유공사총재		1975. 5. 8.
77	"	가	봉	공	엘 하지 오마르 봉고	가봉 대통령		1975. 7. 7.

여 백

V. 교과과정

여 백

1. 교 과 과 정

(별책으로 편찬함)

2. 계열별 입학자의 학과배정

본교는 신입생을 계열별 및 학과별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다.

가. 계열별 모집은 학문의 성격상 동일계열에 속한 학과를 다음의 7개 계열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인문계열 인문대학 각학과

사회계열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각학과 및 농과대학
 농경제학과

자연계열A 자연과학대학의 각학과(생물계학과 제외) 및 공과대학각
 학과(공업교육과 제외)

자연계열B 자연과학대학의 생물계 각학과 및 약학대학 각학과

교육계열 사범대학의 각학과(체육학과 제외)

농학계열 농과대학의 각학과(농경제학과, 농가정학과 농업교육학
 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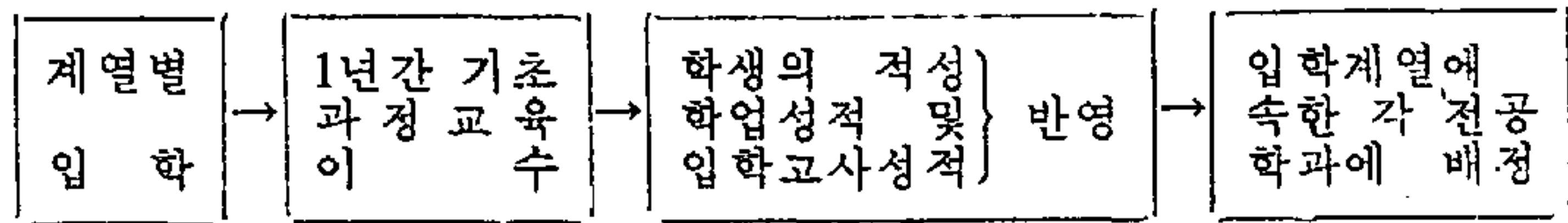
가정계열 가정대학 각학과

나. 학과별 모집은 학과의 교육목적이 특수한 학과로서 다음과 같이 학과별로 모집한다.

공업교육과, 농업교육과, 농가정학과, 간호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미술대학 각학과, 음악대학 각학과

다. 계열별 입학자의 학과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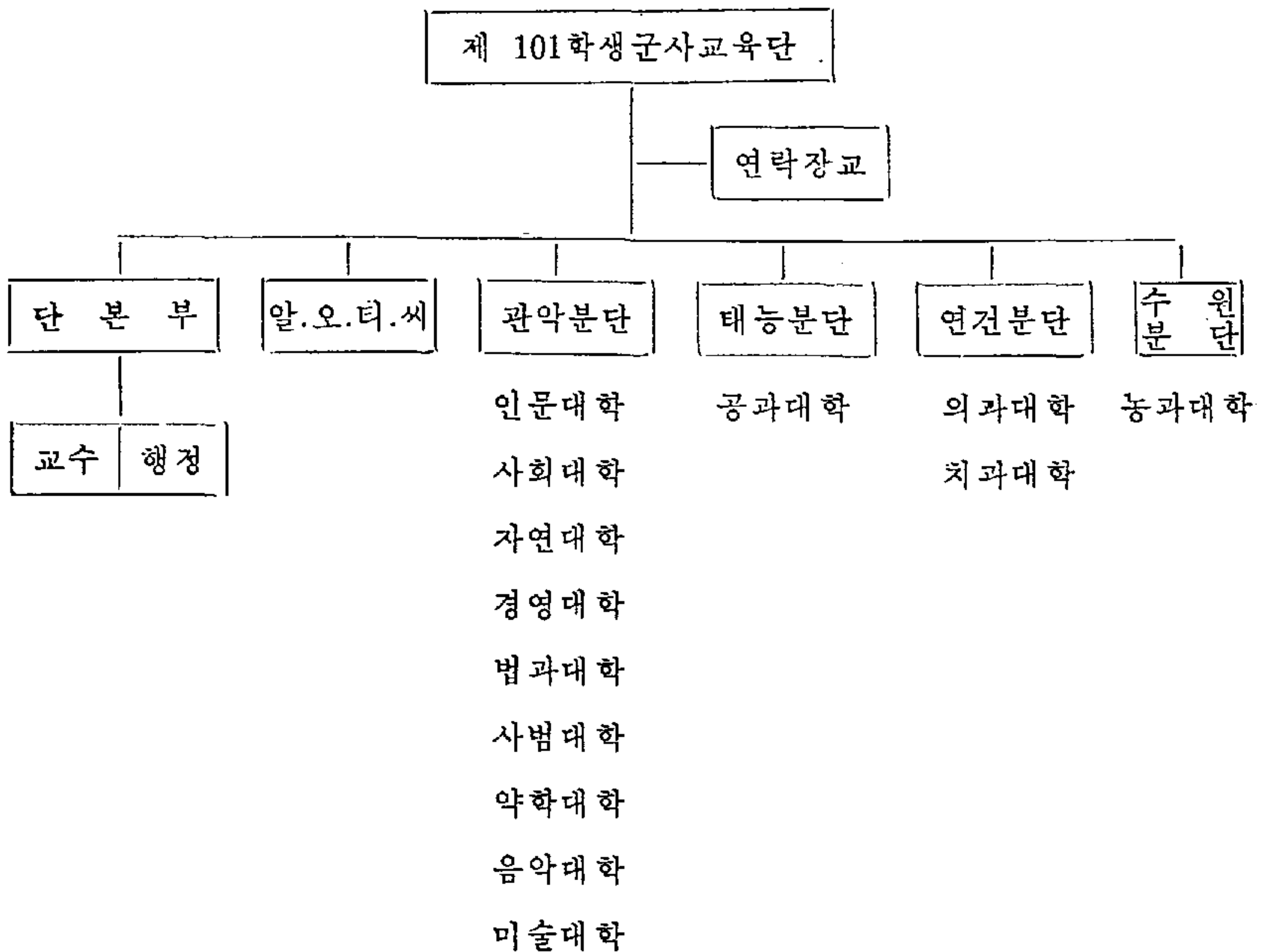
계열별 입학자는 1년간의 기초과정 교육을 공통으로 이수한후 학생적성과 학업성적, 입학고사 성적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반영하고 배정학과의 배정정원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배치 기준에 의거 각 전공학과에 배치하게 된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학생 군사교육

본교에서 육군 제101학생군사 교육단이 주재하여 일반학생 군사교육과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군사교육단은 단본부와 분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단본부가 통할하고 있다.

가. 편 성



나. 간부명단

단 장	육군 준장	盧 武 植
관악분단장	육군 대령	河 奉 烈
연건 "	"	柳 允 中
태능 "	육군 중령	李 幸 柱
수원 "	"	林 同 賢
대 대 장	"	朴 憲 元

다. 교육목표

(1) 일반학생

(가) 반공사상과 민주주의 이념에 밝은 국가관을 확립하고 자주국방 사상을 함양.

(나) 군의 적응성과 자질 배양

(다)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기풍과 협동심을 조장

(2) 예비역 무관후보생(알.오.티.씨)

초급장교로서 필요한 덕성과 자질을 부여하기 위해

(가) 임전무퇴의 군인정신과 필승의 투지력배양

(나) 기초전술, 전기 및 학술연마

(다) 지휘 및 통솔력배양

라. 일반군사 교육과정

일반군사교육은 1971년도 부터 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군사교육대상자들에게 연간 120(1학년 200) 3년간 440시간을 교육하고 매학기 마다 학점을 배정하고 있다.

(1) 교육과정 및 시간

과 정	내 용	시 간
일반학	국방개론, 정훈, 제식훈련 총점술 기타	131
화기학	엠1 소총을 비롯한 소화기 조작	90
전술학	각개전투, 경계 및 분대전투훈련	123
기 타	예비시간 및 평가	96
계		440

(2) 교육대상

대학의 1, 2, 3학년 재학자

(의, 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 1학년)

군사교육 비대상자

여학생, 외국인, 외국영주권소지자, 심신장애자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병종 또는 정종의 체격등위해당자, 병역법 제40조 2항 및 동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자)

(3) 교육수강자의 혜택

(가) 군사학점의 인정

(나) 군복무 기간의 단축

교육기간	1년간이수	2년간이수	3년간이수
단축기간	2개월	4개월	6개월

(다) 재학중 징병검사연기

①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법에 의하여 징병검사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연령별)

② 징병검사의 연기신청은 학교를 통하여 해당병무청에 제출하면 징병검사를 연기받을 수 있다.

파. 예비역 무관후보생과정(알오티씨)

알.오.티.씨는 1961년 6월 1일에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원자에 의하여 2학년 2학기 말경에 입단원서를 접수하여 소정의 입단전형심사를 거쳐 3학년초에 입단식을 거행하고 입단후 주 2회, 2년간 300시간 이내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으며 하기방학때는 각학년마다 4주간의 병영훈련을 인근 주둔부대에 입소하여 받게 되며 대학졸업과 동시 소위로 임관한다.

(1) 교육과정 및 시간

과 정	내 용	시 간		계
		병 영	학 교	
일반학	독도법, 핵및화생방, 참모학, 보안, 군법기타	28	158	186
화기학	엠 16소총, 경기관총 및 박격포를 포함 보병대대의 소화기 및 공용화기 조작	134	44	178
전술학	전쟁원칙, 소대 및 중대전술유격훈련 및 비정규전을 포함한 기초전술 이론에 대한 교육	162	86	248
기 타	지휘정신훈화, 새마을교육 및 기타	28	12	40
	계	352	300	652

(2) 알.오.티.씨. 입단절차

(가) 학생이 소속한 학군단에 지원서를 교부하며

(나)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부받은 곳에 접수를 한다.

구비서류 : 지원서, 서약서, 성적증명서, 신원증명서, 신원보증서
호적초본, 병적확인서 각 2부. 사진 2매(5×6센치)

(다)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및 간략한 면접을 통하여 1차 합격자를
선발하며

(라) 1차 합격자는 육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마) 신검합격자는 신원조회후 최종합격자를 결정 본인에게 통보한다.

(바) 자격기준

① 신원이 확실하고 신체등급 을종 이상자

② 병역기피가 없는자

③ 만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

(3) 알.오.티.씨. 특전

(가) 알.오.티.씨. 입단후 군사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은 장
학금을 지급한다.

(나) 알.오.티.씨. 기간중 군사훈련에 필요한 피복장비 일체를 군이
부담한다.

(다) 병영훈련 기간중에는 침식, 장비 일체를 군에서 제공한다.

(라) 알.오.티.씨.에 입단하면 3학년에서 받게될 일반군사훈련을 면제한다.

(마) 현역복무중(복무연장자) 군에서 실시하는 국내 및 해외 위탁교육(대학원 및 군사과정)을 국비로서 받을 수 있다.

(바) 부대근무는 2년간이며 제대시에는 육군 중위로 승진되며 귀향후는 직장 또는 지역향토예비군의 간부나 고문으로 근무하게 된다.

(4) 75년도 예비역 무관후보생

1년차 : 216명 2년차 : 189명

(5) 년도별 장교임관

년	도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계
인	원	513	528	437	398	351	352	338	268	200	311	292	291	287	4,566

바. 장학제도

(1) 알.오.티.씨 장학금 지급

=적용범위=

알.오.티.씨를 희망하는 장학생 지원자 및 알.오.티.씨에서 선발된 자로서 2년제 또는 3년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자격기준=

(가) 대학 2학년 진학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23세 미만의남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기피사실이 없는자

(다) 학교 학업성적의 평균 "C"학점 이상인자

(라) 일반대학 군사교련 성적 평균 이상인자

(마) 신체규격 "을"이상인자

(바) 친권자 동의서 및 재정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자

(사) 군 인사법 제10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2) 장학금 지급현황(75년도 1학기분)

종	류	인	원	1인당지급액	지급출액
2년제	장학생	10명		102,500	1,025,000
3년제	장학생	8명		102,500	820,000

VI. 연 구

여 백

1. 학 술 연 구

대학의 사명은 연구에 있다.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려면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전심 노력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반사정으로 시간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도움과 충분한 시설의 제공등 그 어느 하나의 요건도 그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곤경 속에서 단순한 연구 의욕만으로 이러한 난경을 극복하면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다.

본교에서는 이러한 환경밑에 연구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연구를 조장하고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를 두고 연구에 관한 제반 계획, 연구과제의 선정 또는 국비 예산으로 계상된 연구비의 배정, 연구논문집의 발간 등을 담당하여 미력이나마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 정부 및 사회의 뜻 있는 자는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경향이 현저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학술연구 조성비를 위시하여 민간재단, 기업체등의 연구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국고 예산으로 연구비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법정기구로서 또는 교내기구로서 체계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다

본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은 그 대부분이 사계의 권위자요, 적어도 전부가 각기 전공한 학문 분야에 대하여 일가를 이루고 있는 우수한 학자들이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술 연구활동에 있어서 영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의 연구비, 외국재단에서의 연구 보조, 민간재단 또는 기업체의 연구비중 상당한 부분이 본교의 교수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어 국내 고등교육 기관중에서는 학술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위원회

본교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과 본교 교수,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써 조직되며,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2명의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본 위원회는 학술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연구사업비의 조달계획,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과 연구비의 배정, 연구결과의 분석평가, 논문집, 학술보고서 등의 편집과 발간, 본교내 각급 연구소간의 상호 조정에 관한사항 기타 학술연구 및 도서출판에 관한 중요사항과 총장이 위촉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수는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이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연구위원회위원 명단

위원장	부총장	徐明源
위원	대학원장	韓 祐 勗
	교무처장	金 正 洙
	교수	張 世 憲
	"	黃 宗 屹
	"	李 春 寧
	"	李 榮 基
	"	南 基 鏞
	부교수	鄭 鎮 鎭
	"	金 彩 潤
	"	金 元 銖
	"	金 靜 子

3. 연구비

본교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학술연구비는 대략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임상연구비와 서울대학교 학술재단연구비를 비롯하여 정부 각기관, 외국의 재단 또는 원조에 의한 연구비, 민간재단, 기업체 및 교수개인의 사비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매년 그 액수가 증가 일로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활동이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된다.

1952년도 부터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를 비롯한 각종 학술 재단 및 기타에서 본교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 지급되어 왔다.

연구비의 지급대상자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으로서 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본교 연구위원회에 제출하면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제목과 연구자를 선정하고 연구비를 배정하여 연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경과를 보면 1963년도에는 30과제 24명에게 220만원, 1964년도에는 17과제 21명에게 168만원이 지급 되었으며, 1965년도에는 국고예산에 연구비가 계상되지 않아 본교 기성회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하여 인문사회과학계 33과제 55명, 자연과학계 41과제 44명의 연구자에게 지급하여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다.

1966년도에는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1,700만원을 120명에 지급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67년도에는 문교부에서 490만원, 과학기술처에서 약600만원, 기타에서 약 550만원의 연구비를 76명에게 지급하였고, 1968년도에는 문교부, 과학기술처,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5,000만원의 연구비를 110명에게 지급하였다. 1969년도에는 문교부에서 8,770만원,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180만원, 과학기술처에서 1,670만원, 임상연구비 2,551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630만원, 기타단체에서 3,760만원의 연구비를 362명에게 지급하였고, 1970년도에는 문교부에서 7,688만원, 과학기술처에서 2,084만원,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655만원, 임상연구비로 873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725만원, 기타단체에서 200만원의 연구비를 265명에게 지급하였다. 1971년도에는 본교 학술재단에서 1,644만원, 문교부에서 11,123만원, 과학기술처에서 1,030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400만원, 임상연구비로 900만원의 연구비를 356명에게 지급하였고, 1972년도에는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612만원, 문교부에서 14,602만원, 과학기술처에서 1,829만원, 성곡문화재단에서 245만원, 임상연구비 30,550만원의 연구비를 391명에게 지급하였고, 1973년도에는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456만원, 문교부에서 13,978만원, 임상연구비 32,000만원, 기타단체에서 200만원을 지급하여 373명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였고 1974년도에는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350만원, 문교부에서 12,064만원, 임상연구비 2,400만원, 기타기관에서 10,140만원을 지급하여 399명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였으며 75년도에는 본교 학술연구재단에서 1,300만원, 문교부연구비 9,850만원, 임상연구비 7,300만원 기타연구비 7,399만원을 지급하여 386명에게 연구비를 지급,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4. 해 외 연 수

교수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외의 문화와 학술을 연마하게 하여 국내문화와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국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기타 국내의 각 단체의 협조를 얻어 교수의 유학, 연구, 시찰등 해외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연합 산하기구 국제학술단체 등에 의한 교수의 해외연수 시찰, 국제회의 참석등으로 해외에 파견연구케한 교수는 75.12.31까지 총 2,480명에 달한다.

1975년도의 파견수를 보면 출국자 221명에 귀국자 232명이고, 1975년 12월 31일 현재 해외에 파견되어 연구활동을 계속중인 교직원은 67명에 달하고 있다.

VII. 학생지도 및 생활

여 백

1. 학생 지도

가. 학생 지도 이념

학풍을 쇄신하고 정신전력을 배양하여 배우면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학도로서의 사명을 완수함을 지도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나. 학생지도지침

1) 모든활동에 대한 지도는 지도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도호국단 제대 및 산하부서(단체)를 통하여 전교직원과 전학생이 일체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가) 학생의 면학분위기 진작

나) 학생의 국가안보에 관한 정신교육과 국토방위의 역군이 될 학생 군사교육의 실시

다) 학생의 새마을운동에의 적극적 참여

라) 전시하에서의 의료, 구호, 피해복구, 질서유지활동지원

마) 의료, 근로, 계몽활동 참여 지원

바) 학, 예술, 체육활동 촉진

2) 학부모, 동창과의 협력 유대강화에 의한 연계지도로서 대학의 안정을 도모한다.

다. 학생지도기구

1) 학도호국단 제대 및 부서지도위원(분담지도교수제 활용)

“기구표”

사단분과지도반

사단주임지도위원...학생처장

부(部) 지도위원

지도위원...학생부처장, 상담지도

관, 교육연구관

사단부(部)분과지도반

부(部) 주임지도위원

단체지도위원

연대분과지도반

연대주임지도위원(위원장)
부(部) 지도위원
대대지도위원
지도위원...학장보, 보조지도위원

연대부(部)분과지도반

부(部) 주임지도위원
단체지도위원

대대분과지도반(최고제대의 경우)

대대주임지도위원(위원장)
부(部) 지도위원
중대지도위원
지도위원...(학장보, 보조지도위원)

대대부(部)분과지도반

부(部) 주임지도위원
단체지도위원

중대분과지도반

중대주임지도위원(위원장임명)
소대지도위원(분담지도교수제 활용)
분대지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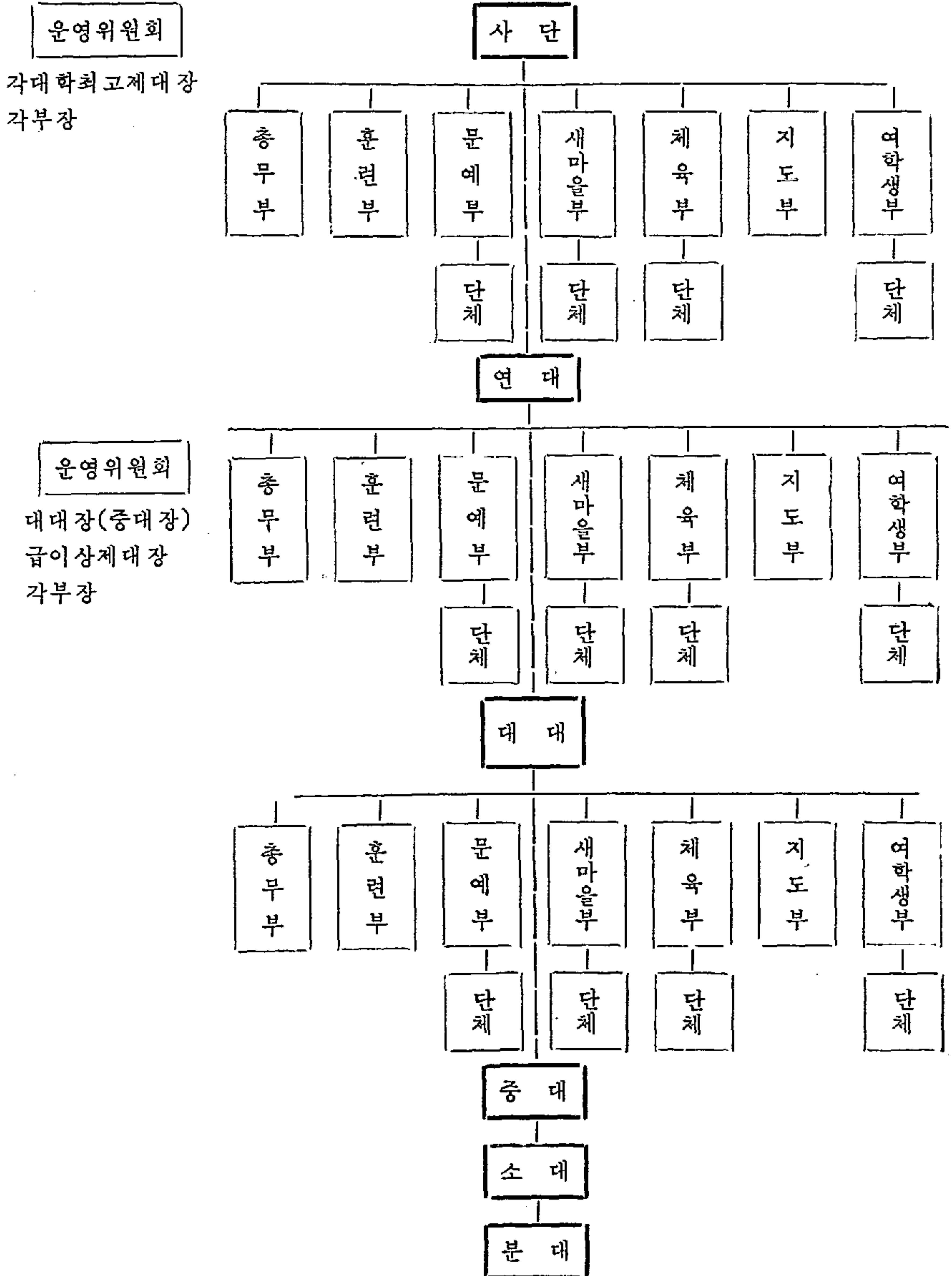
2) 상담지도관실

학생지도방침을 수립하고 교육연구직으로 하여금 각대학을 분담하여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통하여 학생지도를 한다.

3) 학생생활연구소(Ⅱ. 기구편참조)

2. 학도호국관

가. 기 구



운영위원회

각대학최고제대장
각부장

운영위원회

대대장(중대장)
급이상제대장
각부장

3. 학생 상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여러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문제는 그들의 학업생활과 개인생활에 적지않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당면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건전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도와주자는 것이 상담의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구체적으로는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1. 자기자신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자기이해의 부족이나 현실과의 갈등에서 기인되는 개인적인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한다.
2. 이해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여러가지 내적 갈등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다.
3. 학생들은 개인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학업생활이나 개인생활을 보다 풍족하고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종류의 내용에 접하게 된다. 이를테면 보다 능률적인 학습방법을 위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흥미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같은 것을 얻음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개인상담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심리 측정기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상담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학생들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장래에 대한 계획의 수립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개인상담에 의하여 그들의 교육적, 직업적 장래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거나 세우게 되는 것이다.

5. 개인상담은 신체적, 경제적 또는 기타의 원인에서 오는 열등감, 정서적 불안, 비사회성 등 심리적 적응성의 문제에 대하여 치료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있다.

학생상담은 각대학의 각 분담지도교수, 상담치도관실(교육연구직),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수시 누구에게나 상담에 응하고 있다.

4. 학생 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이 우수하거나 학도호국단의 운영 및 그 부서(단체) 활동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중에서 학풍쇄신에 노력한 학생을 포상한다.

가. 우등생포상

- 1) 재학생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3.4이상의 학생을 학년도말에 선정하여 학적부에 등재한다.
- 2) 다음은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학업성적이 정원의 3%이내의 학생에게 시상한 것이다.

학 년 도	72	73	74	비 고
포 상 인 원	1,311	1,227	1,488	

- 3) 졸업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 졸업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

최 우 등 급(Summa Cum Laude)	평점3.9이상
준 최우등급(Magna Cum Laude)	3.6 "
우 등 급(Cum Laude)	3.4 "

나. 학생생활포상

학도호국단 운영 및 부서(단체)활동이 타의 모범이되는 학생에 대하여 포상한다.

5. 학 생 병 사

1. 재학기간중 징병검사 연기

재학중 징집연기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재학기간중 징병검사 연기 혜택을 주어 재학생으로 하여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975년도에는 2,234명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 연기 혜택을 받고 있다.

2. 예비역 무관후보생(R.O.T.C.)과정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에 의거 예비역 무관후보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1975년도(13기생)에는 287명이 임관되었다.

3. 예비역 군의무관후보생

의, 치과대학(예과 포함) 재학생은 소정의 지원절차를 거쳐 예비역 군의무관 후보생에 선발되면 졸업과 동시에 군의관으로 임관복무할 수 있으며 금년도에는 135명이 이의 혜택을 받고 있다.

4. 일반 군사교육 이수자에 대한 현역복무기간 단축

소정의 군사교육 훈련을 받은 학생은 입영후 현역복무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6. 체 육 활 동

학생의 건강관리 및 협동하는 자세를 확립하고자 각종 체육부를 두어 활동을 하게 하고 있으며 각부 주최로 각 단과대학별 대항전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종합적인 행사로 각 단과대학 대항 총장기 쟁탈 구기대회와 개교기념 종합 체육대회를 거교적인 행사로 개최하며 마라톤 대회를 겸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및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에도 본교 각부에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VIII. 학생장학 및 후생

여 백

1. 장 학 제 도

가. 본교는 교육법 제158조(국가의 지방 공공단체는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원조하여야 한다)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계속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에게 면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여러가지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들 장학생의 선정기준은 “장학금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형평하게 기회가 부여되며 장학금은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급여 방법에 따른 구분

(가) 면제장학금

공납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장학금으로서 수업료와 기성회비가 이에 해당한다. 수업료는 매학기 정원의 2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성회비는 학교방침에 따라 매년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매학기 정원의 7%~20%가 역시 혜택을 입는다.

(나) 급여장학금

장학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며 서울대학교 장학회 장학금을 비롯하여 약 60여개의 장학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이 이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최저 학기당 20,000원서부터 150,000원까지 주체에 따라 각각 다르나 대체로는 납입금액수준이 가장 많다.

(다) 대여장학금

지급주체와 수혜자간에 일정한 조건아래 상환(대개가 졸업후에 분할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소요 학비를 대여해 주는 장학금을 말하며 종래 “대여장학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상환실적이 부진하여 현재는 지급이 중단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 대여장학금은 장학제도중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서 장차 본교에서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 발전시킬 계획이다.

(라) 보조장학금

성적이 극히 우수한 학생을 수용(규모 120명)하는 기숙사인 “정영사”(正英舍)사생에게는 서울대학교 장학회가 기숙사비를 보조해줌으로써 사생의 사비부담을 경감해준다.

(2) 지급주체에 따른 구분

(가) 교내장학금

앞서 기술한 면제장학금과 서울대학교 장학회 장학금이 이에 해당하며 1974학년도 수혜액은 총 188,679,200원에 이른다.

(나) 교외장학금

전항의 교내 장학금을 제외한 각종 장학단체 또는 독지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약 60여종이 있고 1974학년도 지급총액은 98,728,210원이다.

나. 장학금 지급현황(1975학년도 제 1학기)

장 학 금 구 분	수 혜 인 원	지 급 총 액
면제장학금(교내)	3,552	78,003,800
급여장학금(교내)	297	5,880,000
교외장교금	1,005	65,850,500
계	4,824	149,734,300

2. 학 생 보 건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예방, 치료, 상담등)를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이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때 그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등 학생보건에 힘쓰고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보건진료소

(1) 1957년 4월 1일에 개설한 보건진료소에서는 약 20명의 의료전문직을 두어 다음의 업무를 분담수행하고 있다.

(가) 건강상담과 진료(내과, 치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정신신경과)

- (나) 보건통계
- (다) 집단검진
- (라) 엑스레이촬영
- (마) 임상검사(혈액, 뇨, 세균, 기생충)
- (바) 결핵의 발견과 치료
- (사) 결핵환자관리

(2)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학생의 이용상황은 다음과 같다.

- 1971년 3월부터 1972년 2월까지 11,818명
- 1972년 3월부터 1973년 2월까지 10,192명
- 1973년 3월부터 1974년 2월까지 6,785명
- 1974년 3월부터 1975년 2월까지 6,565명

나. 학생의료보험

학생 의료보험은 “서울대학교 학생의료보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자에게 적절한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II. 기구편 다. (2)의 지원기관 (나)항 참조)

다. 학생신체검사

(1) 학생신체검사는 학교보건법(1967. 3. 30법률 제1928호)과 학생신체검사 규정(1961. 12. 1문교부령 제112호)에 의하여 매년 1회씩 학기초에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학생신체충실지수”의 평균치산출, 학생질병과 기생충보유율등의 제통계를 산출토록 하여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보건과 학생체질개선등의 중요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신체장애와 질병의 조기발견 그에 수반된 예방 및 치료권장 또는 전염병의 방비등 학생개개인의 보건은 물론 공중보건에도 공헌하고 있다.

(2) 신체검사(집단검진포함)의 종류와 내용

학생신체검사는 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력검사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격검사

신장, 체중, 흉위, 좌고, 척추등의 결함 유무를 측정한다.

(나) 체질검사

흉곽, 눈, 귀, 코, 목, 피부, 치아, 기생충, 영양등에 대하여 결함 유무와 질병 또는 보균상태를 검사한다.

(다) 체력검사

달리기, 멀리뛰기, 던지기, 턱걸이, 팔굽혀매달리기, 왕복달리기등의 능력측정 또는 유무를 검사한다.

(라) 학생환경위생

학생이 이용하는 교내의 식당, 다방, 휴게실, 이발소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학생보건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년 춘추 2회로 구분하여 보건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검사 위생검사 및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그때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도하고 시정을 요구하되 극히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염병 질환의 예방과 학생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3. 기 숙 사

Ⅱ. 기구편 다. (2)의 지원기관 (가)항참조

4. 서울대학교 소비조합

1. 설립목적

본교 소비조합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여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교육조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것이며 소비보호라는 경제적 측면과 검소, 절약의 미풍을 조장하는 교육적측면의 효과 거양을 목표로 한다.

2. 구 성

소비조합의 조합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직원과 재학생으로 구성되며, 총회를 대의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사장은 부총장이 겸임하고 있다.

조합원은 소액의 출자금을 납부하며 이에 따라 독립채산제의 운영형태를 갖추고 있다.

3. 운영형태

본 조합은 조합원 복리 도모와 후생대책을 그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함으로써 학교가 직접 후생시설 운영의 주체가 되었으며,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협동체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본 조합은 영리추구 보다는 조합원 후생에 큰 비중을 두고 신용있는 제조자와 직접 거래에 의한 구입방법으로 모든 물품을 염가로 공급하여 소비절약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영결과로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조합사업에 재투자 하거나 장학금으로 전용하므로써 설립취지에 부응하는 의의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공급범위

조합에서는 일차적인 생활필수품을 공급범위로 하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부서가 개설되어 있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서명 : 식당부, 스넥부, 다과부, 서적부, 문방구부, 일용품부, 양품부, 복장부, 양화부, 기념품부, 연초부, 이발부.

여 백

IX. 종합화건설(관악캠퍼스)상황

여 백

1. 종합화건설계획

1) 목 표

진리를 탐구하고 문화를 계승창조할 영재를 길러 영광된 조국의 앞날을
가늠하며 슬기를 모아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세계의 대학으로 지향한다.

2) 방 침

①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캠퍼스를 통합제열화하여 의학캠퍼스 및 농학캠퍼스는 현 위
치에 두고 종합캠퍼스는 새로이 관악산에 건설한다.

② 서울대학교 종합건설계획은 1977년 완성을 목표로 한다.

③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강화하여 점차 대학원중심의 대학교로 개선발전
시켜 전문분야별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④ 종합건설계획의 재원은 의학계 및 농학계 캠퍼스를 제외한 국유재산을
매각충당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⑤ 교육차관으로 교육연구용 기계기구와 도서를 연차적으로 확충보강한다

3) 추진경위

① 1968. 4. 15 서울대학교 종합화를 위한 기본방침을 국가정책으로 확정

② 1968. 7. 19 서울대학교 시설확충특별회계법 제정

③ 1970. 3. 16 관악산골프장(107만평)을 중심으로 인접한 남단의 농대연
습림(514만평)을 새로운 캠퍼스의 부지로 확정하고 이어
주거지역의 침투를 막고 교육환경을 조성보호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교육지구, 공원지구 및 개발제한지구로 구획
정리

④ 1970. 4. 8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기구신설(건설본부, 기획위원회)

⑤ 1970. 5. 5 종합계획 추진위원회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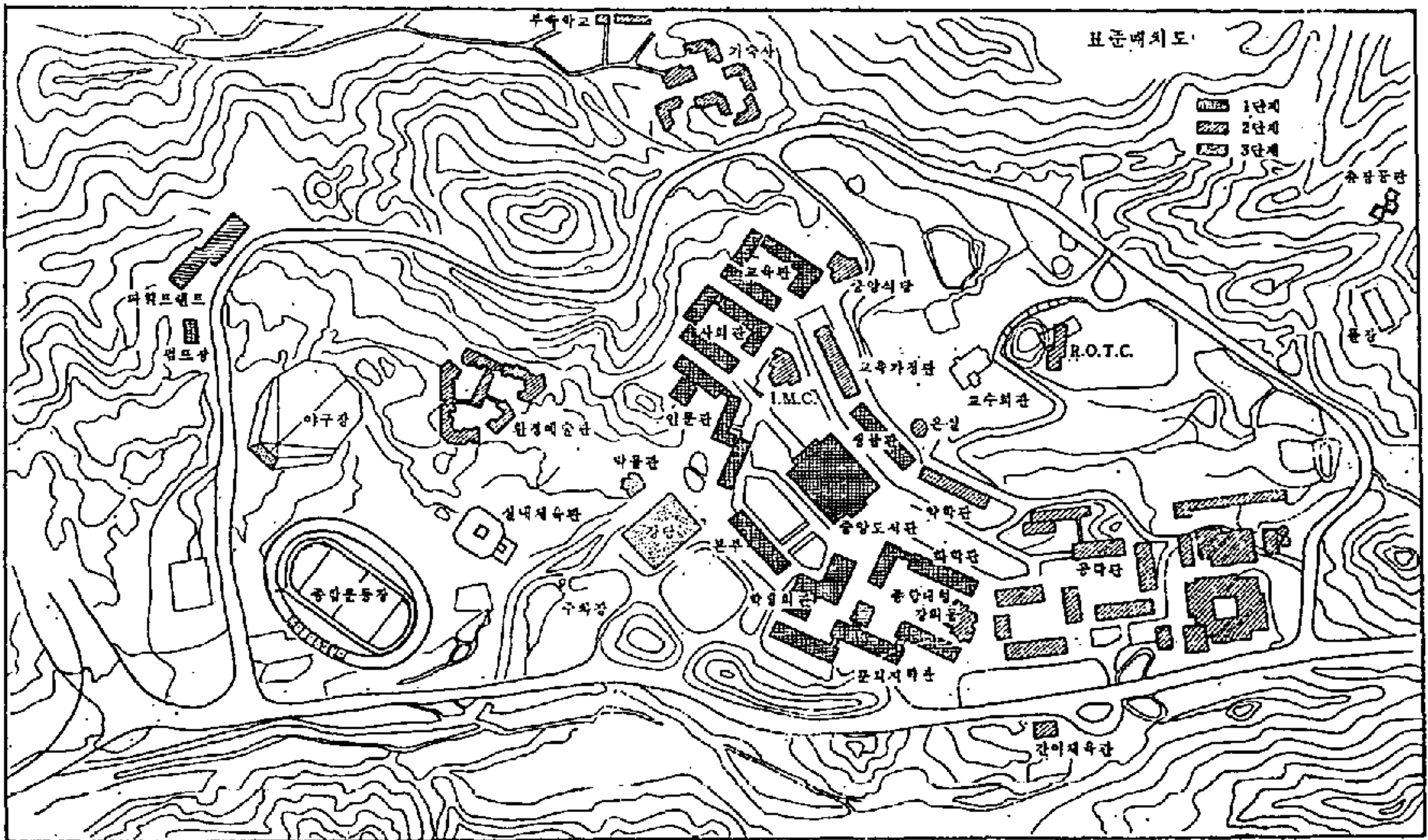
위원장 : 국무총리

위 원 : 관계부처의 장관

- ⑥ 1971. 4. 2 기공식 거행
- ⑦ 1971. 12. 30 아카데미플랜 및 마스터플랜 완성보고
- ⑧ 1974. 3. 30 1단계건설공사완성
- ⑨ 1974. 4. 2단계건설공사 착공
- ⑩ 1975. 2. 28 1단계이전
- ⑪ 1975. 8. 31 2단계일부 완성(약대, 가정대, R.O.T.C.기숙사일부등)
- ⑫ 1975. 12. 31 2단계 건설공사완성(예능관, IMC관)

4) 종합건설계획

단계별 건설계획도



—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

단계별 구분	총 사업 (1968—1977)	1 단계 (1970—1973)	2 단계 (1974—1975)	3 단계 (1976—1977)
대상 기관	의대, 치대 및 농 대와 그 부속기 관을 제외한 모 든 기관	대학원, 행정, 경 영, 신문, 교육대 학원, 문리대, 법 대, 상대, 사범대, 가정대, 중앙도서 관, 본부, 학생회 관, 기숙사, 일부	환경대학원 공대, 약대, 미대 음대, 중앙도서관 본부, 학생회관완 공, 기숙사 부속 학교등	대강당, 박물관, 스타디움, 체육 관, 기숙사등
대상인구(명)	학 생 12,300 교 수 950 직 원 600 부속학교 5,580 계 19,430	8,600 500 420 9,520	3,700 450 180 5,580 9,910	
건물면적(연건평)	338,150m ² (102,290평) 교육시설 55,658평 지원시설 30,410평 주거시설 16,222평	137,974m ² (41,737평)	129,389m ² (39,140평)	70,787m ² (21,413평)

2. 관악캠퍼스 제 1 단계 이전현황

가. 이전개요

관악캠퍼스 제 1단계 공사를 준공함에 따라 1975. 1. 20. 역사적인 제 1단계 이전에 착수하여 1975. 2. 28 이전을 완료하고 1975. 3. 5. 이곳에서 1975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함으로써 관악산록에 명실상부한 새 터전을 마련하였다.

나. 이전기관

대학교본부 및 대학원	대 학	연 구 기 관	지 원 기 관	기 타 기 관
대학교본부 대 학 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가정대학 경영대학 미술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어 학 연 구 소 학생생활연구소 경 제 연 구 소 법 학 연 구 소	도 서 관 박 물 관 보 건 진 료 소 전 자 계 산 소 교육매체제작소 실험동물사육장	학생군사교육단 대 학 신 문 사
4	10	4	6	2

다. 이전기관인원수

단위 : 명

학 생	교 수	직 원	계
10,843	633	385	11,861

3. 시 설 내 용

가. 교육시설

(1) 강 의 실

본교의 강의실은 학과, 대학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주당 학생 강의시간에 의해 종합적으로 산출하였다. 그 크기는

$\frac{\text{학생총 주당강의시간} \times \text{좌석당면적}}{\text{주당사용시간} \times \text{좌석점유율}}$ 의 수식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학문계열

별 총학생강의시간의 비율에 따라 분포하였다.

강의실 이용율은 평균 70%, 점유율은 60%로 추정하여 주요 사용목적별로 다음과 같이 시설하였다.

—20석…대학원 강의, 세미나, 소규모강의

- 40석…가장 보편적인 강의
- 60석… ”
- 80석…합동강의, R.O.T.C 및 교련용강의
- 120석…저학년 대규모강좌, 시청각교육
- 200석… ”
- 350석… ”

국제회의 또는 대규모 국내학술회의

(2) 계단식 대형강의실

120석이상 350석까지의 강의실은 가시거리를 고려하여 바닥을 계단식으로 처리하였으며, 대형강의실은, 시청각 종합교육관(IMC)과 직결되어 운영되므로 무창구조에 냉난방시설을 하였고 영사실과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였다.

26호관의 자연계 대형강의실은 교단이 회전식으로 되어있어 강의 또는 실험중 교단후면에서 다음시간의 실험준비를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율을 높도록 시설하였다.

(3) 실험실

현존 교과과정 및 각과목의 학생수를 기초로하여 유사실험과목은 동일시설에서 실시하므로써 이용율을 높이고 대학별 또는 과별로 구분않고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였으며 그 크기는

$\frac{\text{학생총주당실험시간} \times \text{좌석당면적}}{\text{주당사용시간} \times \text{좌석점유율}}$ 의 수식에 의해 산출하여 20석에서 32석 미만으로 통일하므로써 최대의 실험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실 2-4개실에 대하여 실험준비실 1실씩 배치하여 공동사용하도록 하고 상, 하수도, 가스등을 설치하여 최신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나. 연구시설

(1) 교수연구실, 실험실, 합동연구실, 세미나실 .

전임강사이상 1인 1실을 기준으로 6.1평 크기의 교수연구실과 실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교수에게 1인당 10평—15평 크기의 실험실을 배정하고 있다

인문사회계 교수들의 합동연구 및 소규모 세미나 또는 워크샵을 위하여 각 건물군별로 5개의 합동연구실이 해당학과 근처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17평으로 좌석수는 10-15석 정도이다.

또한 40명 이상의 교수회의 및 세미나 활동을 위해 각 건물군별로 1개의 교수회의 및 세미나실을 배치하고 있다.

대학원연구실은 인문사회계 대학원의 연구활동을 위하고 앞으로 대학원 중심으로의 대학으로 지향코자 하는 아카데미믹 플랜에 따라 시설면에서 대폭 증설하여 현 대학원 정원의 반에 해당하는 대학원생에게 고정 연구실을 제공하여 연구 및 소규모강의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부분 해당학과 근처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2) 특수실험실

학생 및 교수실험실 이외에 특수한 장비 또는 기기를 요하는 실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시설을 배치하였다.

가) 생·물·계

- 초파리사육실
- Autoclave실
- 저온실험실
- 멸균실
- 배양실

나) 화 학 계

- Nuclear magnetic Resonance Room
- Gas Chroma to-Graphy Room
- Micro Analysis Room
- Radiation Room
- Ultra-Contrifuge Room
- Spectroscope Lab.

다) 지구물리계

- 광학실험실
- 음향실험실

다. 지원시설

(1) 도서관

본교 도서관은 교육지원 시설의 핵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교육시설로부터 5분이 소요되는 거리인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국보급인 규장각 도서관의 보호를 위한 화재방지 및 소화시설로서 CO₂ 개스 자동소화 설비가 되어 있으며, 그외 전관 냉난방 시설과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기송관의 특수시설 및 4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2) 학생회관

본 회관은 학생의 후생, 오락, 휴식, 협동생활의 함양과 기타 문화적, 정서적 내지 사회적 활동을 고취하고 학생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음악감상실, 바둑실, 여학생휴게실, 실내운동시설, 오픈라운지등 학생생활을 위한 시설과 구내서점, 매점, 식당, 우체국, 이용원등 서비스 시설등이 있으며, 학생생활연구소, 보건진료소등 학생후생을 위한 기관이 배치되어 있다.

여 백

X. 총 동 창 회

여 백

총 동 창 회

본교 총동창회는 각대학(원)동창회 및 각 시도지부 동창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대학 및 대학원 동창회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9. 2. 12발족하였다. 중요사업으로는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모범졸업생에게 메달과 표창장을 수여하여 왔고 관악캠퍼스 건설지원금 모금 및 헌수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모교 종합화를 계기로 동창회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모교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총동창회 임원명단

직 명	성 명	현 직	비 고
회 장	閔 復 基	대법원장	
명 예 회 장	尹 天 柱	총 장	
부 회 장	元 容 奭	헤인증기주식회사사장	
〃	姜 信 浩	동아제약주식회사사장	
〃	朴 健 碩	범양전용선주식회사사장	
명 예 부 회 장	徐 明 源	부 총 장	
상 임 이 사	李 均 相	서울대공대 명예교수	공과대학 동창회장
〃	李 昌 九	코리아엔지니어링고문	농과대학 동창회장
〃	朴 浚 圭	국회의원	문리과대학 동창회장
〃	權 純 亨	서울대미대교수	미술대학 동창회장
〃	太 完 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법과대학 동창회장
〃	李 聖 秀	제일기획주식회사사장	사범대학 동창회장
〃	李 泌 奭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사장	상과대학 동창회장
〃	黃 源 性	태광화학연구소장	약학대학 동창회장
감사, 상임이사	金 昌 九	국립극장장	음악대학 동창회장

상	임	이	사	韓	格	富	의원개업	의과대학 동창회장
	"			徐	永	圭	치과의원 개업	치과대학 동창회장
	"			申	혜	순	서울시교육위원회근무	가정대학 동창회장
	"			俞	碩	鎭	의원 개업	대학원 동창회장
	"			金	在	植	국회의원	경영대학원 동창회장
	"			金	商	俊	경동고등학교 교장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			申	光	淳	서울보건전문학교 교수	보건대학원 동창회장
	"			文	道	彬	서울신문사논설위원	신문대학원 동창회장
	"			張	承	台	국회의원	행정대학원 동창회장
	"			姜	潤	姬	고려대의대 간호학과장	의과대학간호학과 동창회장
사	무	처	장	丁	炳	然	학생처장	
간			사	李	相	榮	상담지도관	

XI. 주요 통계

여 백

1. 기 구

구분 합계	본부	대학원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부속학교	대학부설기관			부속병원	방송통신대학	법인및타기
							법정기관	비법정기관	정관			
72	1	4	15	6	7	4	13	14	2	1	5	

2. 교 직 원

구분 합계	정 원									기 타 적			
	소계	총장	부총장	교원	부속학교교사	교육연구직	일반직	별정직	고용원	소계	명예교수	임시조교	시간강사
3,234	2,556	1	1	1,170	173	9	715	4	483	678	26	49	603

3. 학 생

구분 학교별	학 생 정 원				
	계	75학년도 (1학년)	74학년도 (2학년)	73학년도 (3학년)	72학년도 (4학년)
합 계	21,712	6,492	6,552	5,018	3,650
대 학	13,300	3,500	3,500	3,190	3,110
대 학 원	2,922	1,342	1,402	178	—
부속학교	5,490	1,650	1,650	1,650	540 (4-6학년)

구분 학교별	75학년도 제2학기 등록상황						졸업생(74년도누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위탁 연구생	학사	석사	박사
합 계	16,146	4,909	4,733	3,205	3,214	85	56,134	6,969	1,759
대 학	13,708	3,663	3,622	3,130	3,214	79	56,134	—	—
대 학 원	2,438	1,246	1,111	75	—	6	—	6,969	1,759

4. 기본재산

건물시설	토지시설					
	계	교지	체육장	시험및실습장	약초원	연습림
118,041평	56,434,864.50	1,576,495.50	40,240	93,114	22,938	54,702,077

5. 학생정원(대학, 대학원, 부속학교)

(1) 대학 학생정원(학년정원)

1975학년도

학년 모집학년도 대학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합 계
	(1975)	(1974)	(1973)	(1972)	
인문대학	185 (395)	185	185	185	740 (950)
사회과학대학	250 (530)	250	205	195	900 (1,180)
자연과학대학	545 (1,665)	545	200	200	1,490 (2,610)
가정대학	90 (0)	90	90	90	360 (270)
경영대학	100 (0)	100	100	100	400 (300)
공과대학	790 (0)	790	830	800	3,210 (2,420)
농과대학	350 (330)	350	390	360	1,450 (1,430)
미술대학	70 (70)	70	70	70	280 (280)
법과대학	160 (0)	160	160	160	640 (480)
사범대학	410 (40)	410	410	410	1,640 (1,270)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80 (0)	80	80	80	320 (240)
음악대학	130 (130)	130	130	120	510 (510)
의과대학	240 (240)	240	240	240	960 (960)
치과대학	100 (100)	100	100	100	400 (400)
계	3,500 (3,500)	3,500	3,190	3,110	13,300(13,300)

()는 계열별 모집으로 인한 실제 수용된 정원임.

(2) 대학원 학생 정원

대학원별	학 년 (모집 학년도)	1 학 년 (1975)	2 학 년 (1974)	3 학 년 (1973)	계
대학원	석사과정	934	994	—	1,928
	박사과정	178	178	178	534
보건 대학원		70	70	—	140
행정 대학원		100	100	—	200
환경 대학원		60	60	—	120
합 계		1,342	1,402	178	2,922

(3) 부속학교 학생정원

학교별	학 년 (모집 학년도)	1 학년 (1975)	2 학년 (1974)	3 학년 (1973)	4 학년 (1972)	5 학년 (1971)	6 학년 (1970)	합 계
고 등 학 교		420	420	420	—	—	—	1,260
중 학 교		490	490	490	—	—	—	1,470
여 자 중 학 교		560	560	560	—	—	—	1,680
국 민 학 교		180	180	180	180	180	180	1,080
계		1,650	1,650	1,650	180	180	180	5,490

6. 입 학 상 황

(1) 대 학

75학년도

구 분	모집정원	지 원 자	합 격 자	비 율	비 고
자연계열	1,120	2,643	1,120	2.4	
인문계열	185	572	185	3.1	
의 예 과	160	255	159	1.6	
치 의 예 과	100	448	100	4.5	
수 의 예 과	80	296	68	4.4	
사회계열	485	1,281	485	2.6	
가정계열	90	156	90	1.7	
교육계(인문사회)	210	826	210	3.9	
" (자 연 계)	160	615	160	3.8	
체육학과	40	194	40	4.9	
농학계열	310	931	310	3.0	
농가정학과	20	66	20	3.3	
미대회화과	25	196	25	7.8	
조 소 과	15	72	15	4.8	
응 용 미 술 과	30	175	29	6.0	
음대성악과	30	101	30	3.4	
기 악 과	60	136	60	2.3	
작 곡 과	15	39	15	2.6	
국 악 과	25	54	25	2.2	
간호학과	80	191	80	2.4	
합 계	3,240	9,247	3,236	2.9	

(2) 대 학 원

75학년도

대 학 원 별	모 집 정 원	지 원 자	합 격 자	비 율	
대학원 { 석사과정	934	1,719	788	2.2	
{ 박사과정	178	256	143	1.7	
보건대학원	70	101	70	1.4	
행정대학원	100	337	100	3.4	
환경대학원	60	106	60	1.8	
계	1,342	2,519	1,161	2.2	

7. 재학생통계(대학·대학원)

(1975학년도 1학기)

구분 대학별	합계 (가+나)	(가) 정 규					(나) 위탁 및 청강 연구 생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계	16,146	16,060	4,909	4,732	3,205	3,214	86
합계(대학)	13,708	13,628	3,663	3,621	3,130	3,214	80
인문대학	1,176	1,164	406	382	184	192	12
사회과학대학	1,491	1,480	498	509	228	245	11
자연과학대학	3,031	3,017	1,855	710	219	233	14
가정대학	262	262	—	90	86	86	—
경영대학	226	222	—	—	108	114	4
공과대학	2,504	2,473	853	—	805	815	31
농과대학	1,304	1,304	355	334	316	299	—
미술대학	287	287	169	72	74	72	—
법과대학	356	356	—	—	170	186	—
사범대학	962	955	47	81	380	447	7
약학대학	237	237	—	79	81	77	—
음악대학	525	525	134	134	126	131	—
의과대학	954	953	189	273	248	243	—
치과대학	393	393	110	104	105	74	—
합계(대학원)	2,438	2,432	1,246	1,111	75	—	6
대학원	2,016	2,011	1,013	923	75	—	5
보건대학원	126	125	74	51	—	—	1
행정대학원	191	191	98	83	—	—	—
환경대학원	105	105	61	44	—	—	—

여 백

여 백

여 백

여 백

(2) 석사학위 수여자 통계

구분	19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계
계	90	50	11	14	37	18	31	74	114	118	125	151	302	282	250	279	397	367	406	389	405	442	482	470	523	555	670	7,052
문학석사	20	9	7	4	4	3	1	10	16	16	19	13	33	24	29	49	68	45	54	39	39	43	54	50	60	78	99	888
정치학석사	-	-	-	-	2	-	-	1	7	6	6	9	11	3	6	7	14	5	8	4	12	3	6	7	3	6	8	134
법학석사	6	1	-	2	3	-	5	8	14	11	12	18	11	14	6	7	15	29	25	14	28	17	29	11	6	17	17	326
상학석사	-	-	-	-	-	-	-	-	2	1	-	1	4	2	2	4	7	1	8	1	2	1	-	-	-	-	2	38
경제학석사	-	4	-	1	5	4	1	5	12	3	12	7	13	12	3	6	7	12	7	3	1	2	9	7	5	4	12	157
미술학석사	-	-	-	-	3	-	-	-	2	2	2	-	-	-	3	1	2	3	3	1	2	4	8	11	15	8	15	85
음악학석사	-	-	-	-	-	-	-	2	-	2	2	1	1	1	2	1	8	4	5	8	6	2	4	17	11	7	21	106
언어학석사	4	4	-	1	7	-	10	6	12	18	13	17	17	26	25	18	19	15	23	24	13	18	20	27	16	38	42	429
공학석사	3	6	1	3	4	6	5	6	21	10	12	19	10	15	14	24	20	26	27	17	11	20	29	38	45	34	47	473
가정학석사	-	-	-	-	-	-	-	-	2	1	2	1	1	1	1	4	4	1	2	-	1	3	5	2	5	7	11	41
농학석사	-	-	-	-	-	-	-	10	6	8	6	9	12	14	12	10	18	17	25	17	17	12	22	14	25	22	24	300
수의학석사	-	-	-	-	-	-	-	1	3	1	1	2	2	1	3	3	4	4	2	4	3	3	1	-	3	3	3	49
치의학석사	57	26	3	2	7	1	6	17	12	32	35	35	53	61	52	31	31	51	42	48	52	58	24	30	50	48	86	950
약학석사	-	-	-	2	2	2	2	2	4	4	3	4	8	3	3	7	9	6	10	9	6	5	15	6	9	14	11	151
교육학석사	-	-	-	-	-	-	-	-	-	-	-	-	-	-	-	-	20	34	22	36	36	59	71	65	76	80	57	556
보건학석사	-	-	-	-	-	-	-	-	-	-	-	11	31	30	4	14	49	38	45	35	50	48	56	44	52	37	51	600
정육학석사	-	-	-	-	-	-	-	-	-	-	-	87	73	73	78	88	78	78	78	74	13	80	60	60	60	60	46	1,054
영양학석사	-	-	-	-	-	-	-	-	-	-	-	-	-	-	-	-	2	1	1	3	66	2	4	2	7	1	3	19
경제학석사	-	-	-	-	-	-	-	-	-	-	-	-	-	-	-	-	-	-	-	29	25	28	39	47	38	49	51	306
간호학석사	-	-	-	-	-	-	-	-	-	-	-	-	-	-	-	-	-	-	-	-	2	-	1	1	2	3	5	14
사회학석사	-	-	-	-	-	-	-	-	-	-	-	-	-	-	-	-	-	-	-	-	-	10	13	9	20	23	23	98
행정학석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3) 박사학위 수여자 통계

학위별	연 별		19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계
	계	6	6	6	14	14	5	3	6	16	23	45	62	89	93	111	120	155	141	130	118	118	142	152	204	163	1,922
공학박사		1												1	1		2	4	6	11	9	8	16	12	20	15	106
농학박사				1						1			2	3	4	2	4	6	9	5	5	8	9	28	25	117	
문학박사	2	2		2			2		1				3	1				3	9	1	1	2	(2)	14	18	75	
철학박사										2								2	1	-	1	2	2		1	11	
이학박사	3	1					1				2		1	2	1	8	5	7	4	10	10	2	4	2	10	12	85
정치학박사																(1)		(1)		(1)		(1)	(1)	(1)	(2)	4	6
법학박사										1			1	1				3	4	3	4	1	3	1	1	3	26
경제학박사										1			1		1				4	4	(1)	2	3	1	1	4	(1)
의학박사	1	2		11	2		3	6	15	18	43	53	77	84	96	107	128	98	83	83	92	99	109	118	74	1,402	
약학박사												(5)	(13)	(22)	(15)	(26)	(28)	(19)	(28)	(25)	(33)	(33)	(36)	(47)	(21)	(353)	
수의학박사													1	3	2	3	2	1	5	11	4	4	4	8	5	56	
													1	1			(1)	(1)	(1)	2	2	1	1	(2)	4	(9)	
													1	1			1	1	1	2	2	1	1	4	2	15	

()는 박사과정 수료자

(4)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통계

학위별	연 별																											계	
	19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계	2	1	2		1	1		2	5	3	2	3	2	10	1	1	6	4		6	3	6	3	2		2	2	3	77
공 학 박사																													
문 학 박사											1			1				1									1		4
이 학 박사																1	1	1		2		1				1			7
농 학 박사														1						1	1		1		1				5
의 학 박사																			1										1
철 학 박사																													
법 학 박사	2	1	2		1	1		2	5	3	1	3	2	8	1		5	2	3	4	2	4	2	1		1	2	58	
경제학박사																													1
약 학 박사																													
수의학박사																								1					1

여 백

여 백

여 백

9. 장학금 급여상황

(75학년도 제2학기)

구분 대학별	등록인원	비율	합계		급여장학금						면제장학금					
			인원	금액	소계		본부		단과대학(원)		소계		수업료		기성회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5,376	35.6	5,487	177,239,350	1,200	71,600,350	1,050	65,786,750	150	5,813,600	4,287	105,639,000	2,945	65,379,000	1,342	40,260,000
인문대학	1,088	39.3	428	13,399,800	73	4,512,600	73	4,512,600			355	8,887,200	226	5,017,200	129	3,870,000
사회과학대학	1,331	44.7	595	19,571,000	135	8,391,800	125	7,711,800	10	680,000	460	11,179,200	336	7,459,200	124	3,720,000
자연과학대학	2,889	29.7	858	28,118,150	152	10,260,950	152	10,260,950			706	17,857,200	426	9,457,200	280	8,400,000
가정대학	281	40.9	115	3,239,400	19	960,000	16	930,000	3	30,000	96	2,279,400	77	1,709,400	19	570,000
경영대학	519	31.4	163	5,323,400	34	2,249,000	29	1,909,000	5	340,000	129	3,074,400	102	2,264,400	27	810,000
공과대학	2,650	40.3	1,070	37,034,850	258	17,347,050	235	16,144,450	23	1,202,600	812	19,687,800	599	13,297,800	213	6,390,000
농과대학	1,385	42.8	593	17,222,400	101	5,208,000	89	4,515,000	12	693,000	492	12,014,400	352	7,814,400	140	4,200,000
미술대학	319	36.6	117	3,190,600	12	610,000	11	540,000	1	70,000	105	2,580,600	73	1,620,600	32	960,000
법과대학	623	42.0	262	10,532,100	122	7,205,700	71	5,675,700	51	1,530,000	140	3,326,400	112	2,486,400	28	840,000
사범대학	1,409	17.0	240	8,343,000	94	4,290,600	79	3,990,600	15	300,000	146	4,052,400	42	932,400	104	3,120,000
약학대학	266	43.6	116	4,265,750	39	2,408,150	28	2,018,150	11	390,000	77	1,857,600	58	1,287,600	19	570,000
음악대학	566	33.5	190	4,956,600	22	876,000	17	728,000	5	148,000	168	4,080,600	123	2,730,600	45	1,350,000
의과대학	1,194	32.5	389	12,606,450	93	5,247,450	88	4,997,450	5	250,000	296	7,359,000	195	4,329,000	101	3,030,000
치과대학	509	42.2	215	6,189,050	36	1,833,050	32	1,753,050	4	80,000	179	4,356,000	130	2,886,000	49	1,470,000
보건대학원	108	37.9	41	978,200	1	20,000	1	20,000			40	958,200	31	688,200	9	270,000
행정대학원	151	39.0	59	1,409,200	8	160,000	3	60,000	5	100,000	51	1,249,200	36	799,200	15	450,000
환경대학원	88	40.9	36	859,400	1	20,000	1	20,000			35	839,400	27	599,400	8	240,000

여 백

여 백

여 백

교 가

이 병 기 사
현 제 명 곡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단 일해 온 말을 쓰는 조-출한 겨-레

이 세상의 사-는 진 리 찾-는 이 길 을
창 조하 기 좋 아하 는 명 석한 머 리

씩씩하게 나-아가 는 젊 은 오 뉴 들
새 문 화 와 새 생 명 을 이 루 어 가 며

이 겨 레 와 이 나라 의 크 나 큰 보 람
이 들 겨 하 고 사 랑하 는 우 리 의 조 국


뛰 어 나 는 인 재-들-이 다 모 여 들 어


더 욱 더 욱 응 성하 는 서 울 대 학 교
은 누리 에 빛 을 내 는 서 울 대 학 교

관악캠퍼스배치도



범 예

 : 완공시설

 : 계획시설

교육시설

- 01 - 04동 : 인문대
- 05 - 08동 : 사회대
- 09동 : 경영대, 행정대원
- 10동 : 법대
- 11, 12동 : 사대
- 13동 : 가정대, 환경대원, 심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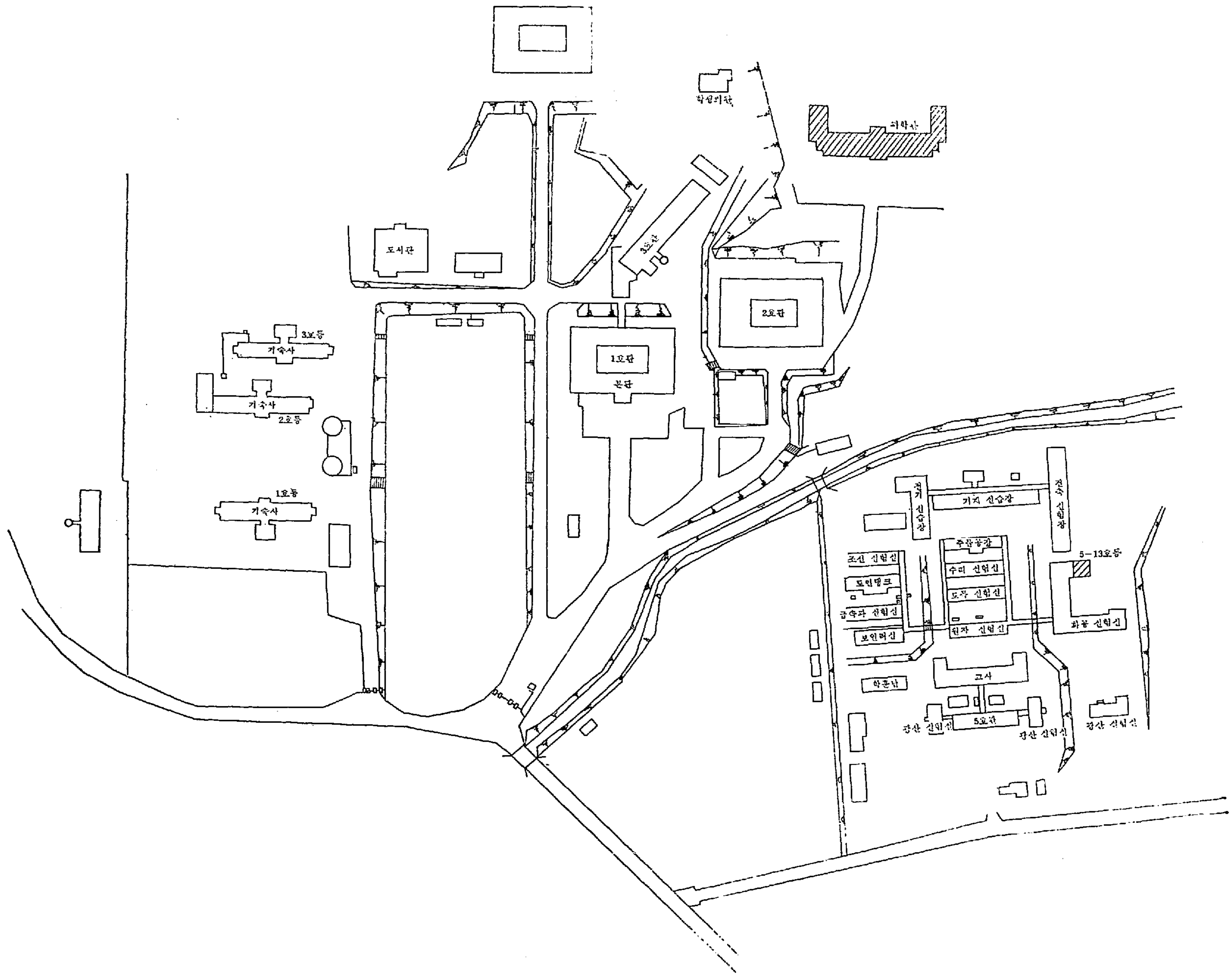
- 20동 : 자연대 생물관
- 21동 : 약대
- 22, 23동 : 자연대 화학관
- 24 - 27동 : 자연대 물리관
- 30 - 41동 : 공학과 전설계획도
- 50동 : 미대
- 51동 : 음대

지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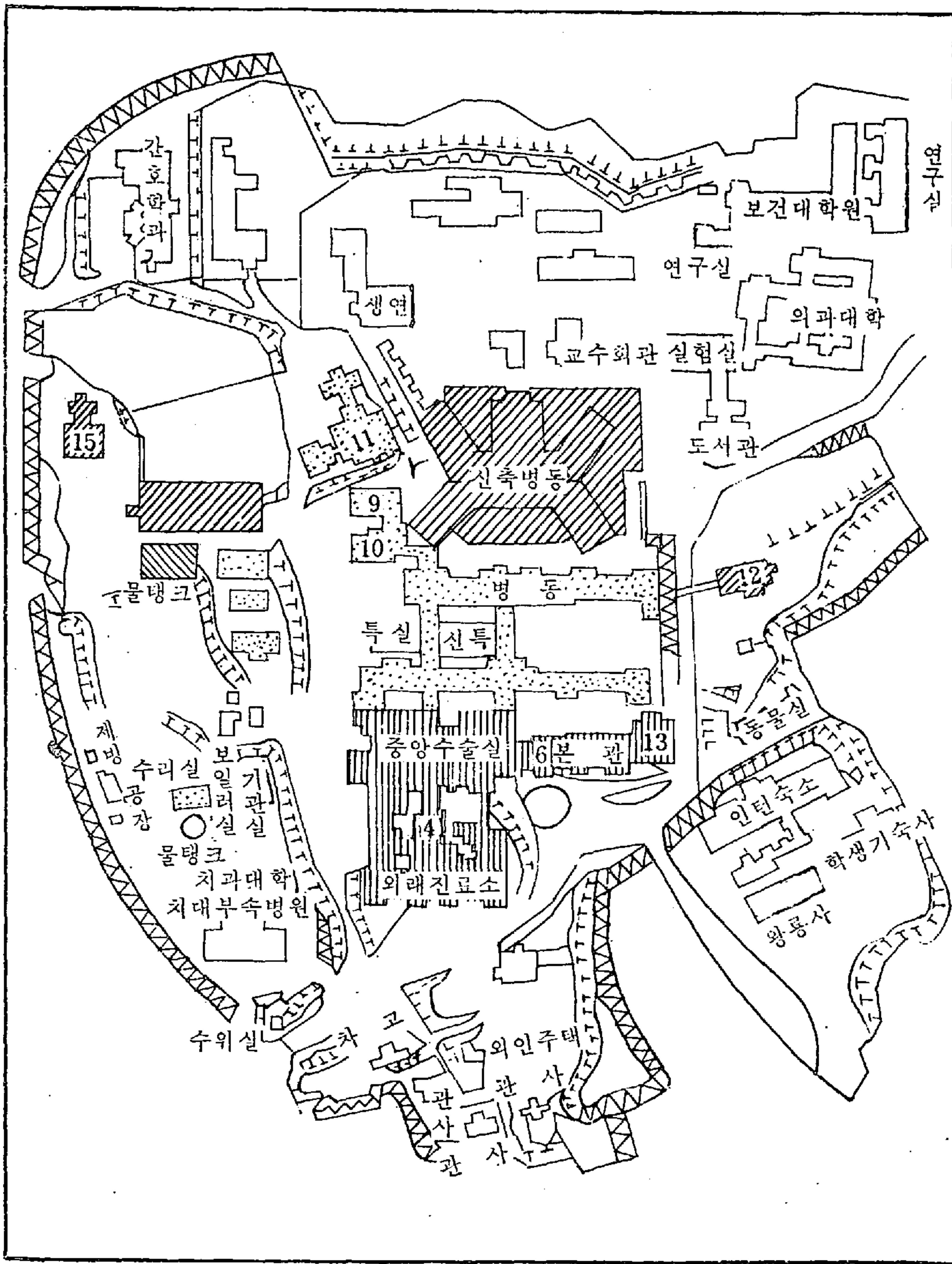
- 60동 : 대학교 본부
- 61동 : I. M. C. 관
- 62동 : 도서관
- 63동 : 학생회관

- 64동 : 온실 및 실험동물 사육장
- 65동 : 교수회관
- 66동 : 학군단
- 67동 : 간이체육관
- 68동 : 파워프런트
- 69동 : 종합운동장
- 80 - 85동 : 관악사 (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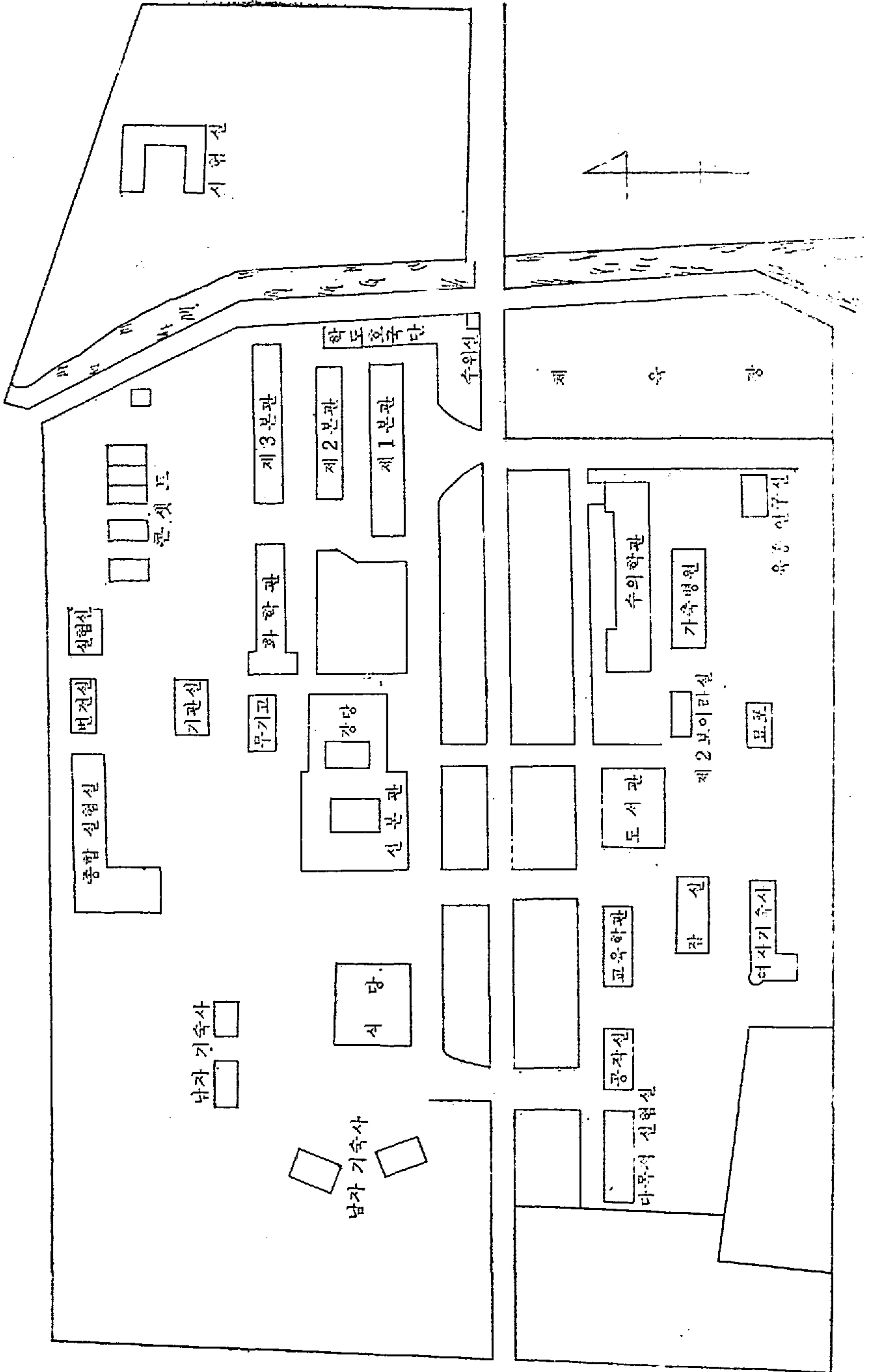
공학캠퍼스 배치도



의학캠퍼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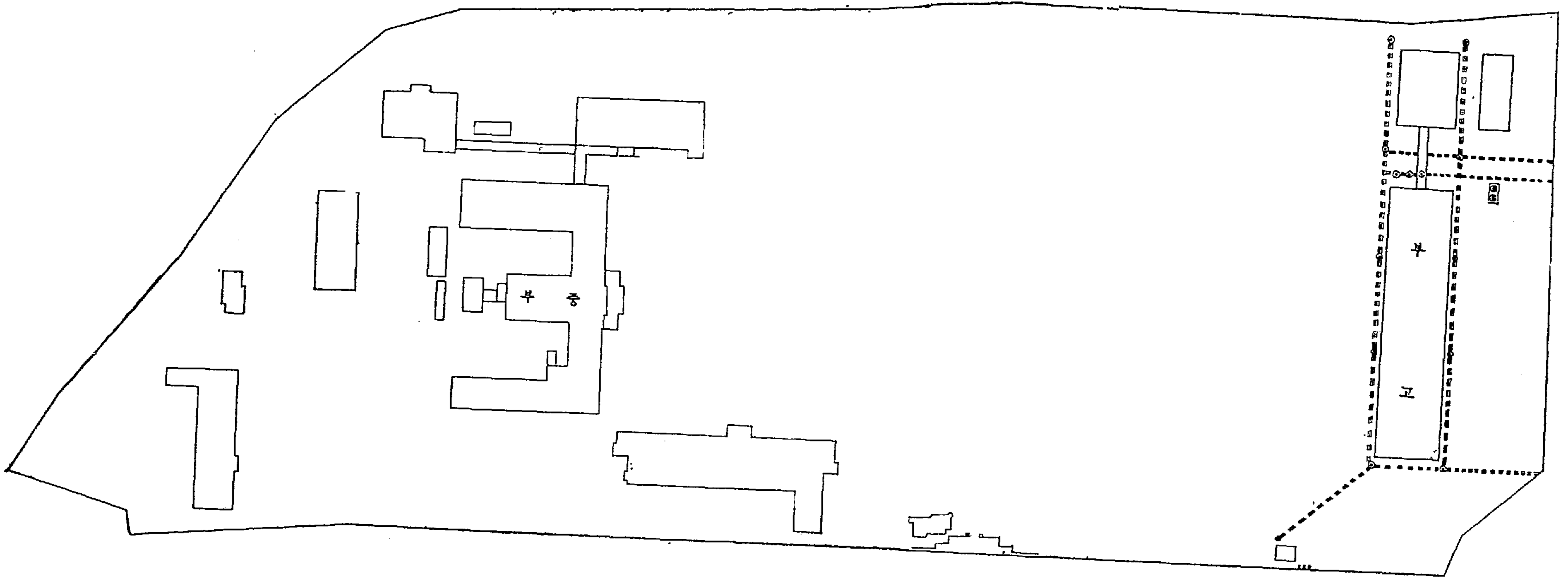


농학캠퍼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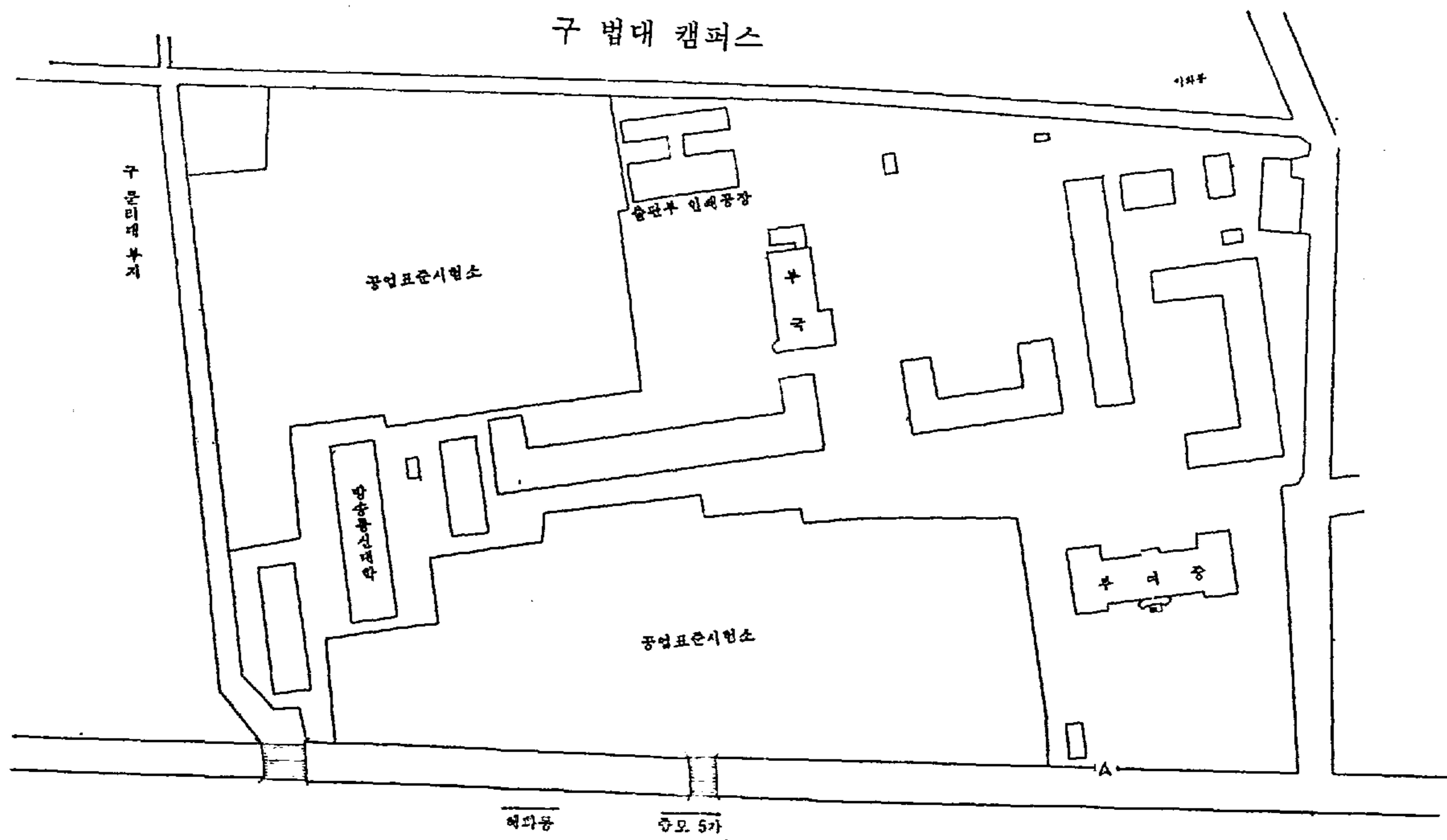


부속학교 배치도

구 상대 캠퍼스



구 법대 캠퍼스



1975년 12월 15일 인쇄

1976년 1월 1일 발행

서울대학교요람

발행 서울대학교

편집 서울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인쇄 사단법인 서울대학교출판부

앞으로 여러분이 當面하게 될 모든 問題는 그 어느것이고 새롭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며, 또 누구도 經驗해 보지 못한 難關이 隨伴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새로운 問題일수록 그 解決의 보람이 또한 크다함을 銘心하여, 어려운 일일수록 앞장서서 떠맡는 奉仕의 精神과 새로운 課題를 찾아내는 開拓의 精神을 堅持하여 주기를 當付하는 바입니다.

1975. 2. 26.

—第29回 卒業式 總長 式辭에서—